

2021년도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서

2021. 1.



# 2021년도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서

|                                   |     |
|-----------------------------------|-----|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 1   |
| 가. 비전 및 추진전략                      | 3   |
|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                    | 4   |
| 2.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 5   |
| 가. 사업 추진방향                        | 7   |
| 나. 운용계획 총괄표                       | 9   |
| 다. 운용계획 개요                        | 13  |
| 3.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19  |
| 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1  |
| 1) 일반지침                           | 21  |
| 2) 기금수입 지침                        | 23  |
| 3) 기금지출 지침                        | 27  |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 40  |
| 다.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                   | 54  |
| 1) 인건비                            | 54  |
| 2) 운영비                            | 64  |
| 3) 여비                             | 88  |
| 4) 업무추진비                          | 94  |
| 5) 직무수행경비                         | 99  |
| 6) 연구용역비                          | 105 |
| 7) 보전금                            | 110 |
| 8) 민간보조사업                         | 112 |
| 9) 민간위탁사업비                        | 134 |
| 10) 자치단체보조사업                      | 137 |
| 11) 건설비                           | 155 |
| 12) 자산취득비                         | 164 |

|                                       |     |
|---------------------------------------|-----|
| 4. 2021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행지침 .....        | 167 |
| 가. 일반지침 .....                         | 169 |
| 나. 비목별 지침 .....                       | 171 |
| 1) 일용임금 .....                         | 171 |
| 2) 일반수용비 .....                        | 175 |
| 3) 국내여비 .....                         | 186 |
| 4) 국외여비 .....                         | 189 |
| 5) 업무추진비 .....                        | 190 |
| 6) 일반연구비 .....                        | 193 |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침 ..... | 197 |
| 6.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현황 .....        | 207 |
| 7.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내역사업별 세목명세서 .....  | 213 |
| 8. 2021년도 수입 및 지출 각목명세서 .....         | 225 |



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가. 비전 및 추진전략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



# 가. 비전 및 추진전략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3대 전략목표 - 6대 전략과제- 16개 세부과제

**I.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II. 문화예술 가치의 확산**

**III.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 운영**

**예술의 지평 확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기관운영체제 혁신**

- ①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 ②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 ③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 ④ 문화예술 인력육성체제 혁신 및 일자리 창출

- ①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②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 ③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 ①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 ②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 ③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제 확립**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 ①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 ②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 ①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 ②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 ①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 ②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핵심가치**

|                               |                                      |                                       |
|-------------------------------|--------------------------------------|---------------------------------------|
| <b>도전과 변화</b>                 | <b>공감과 협력</b>                        | <b>공공채무성</b>                          |
| 담대한 시도와 창의적 방식으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 예술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

## 나.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요

### □ 기금의 설치(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 □ 연혁

- '72. 8.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 2337호)
- '73. 7.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 □ 기금의 조성재원(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 정부의 출연금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여 기부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 기금의 용도(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문화예술 교류
- 국제 문화예술 교류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2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 가. 사업 추진방향
- 나. 운용계획 총괄표
- 다. 운용계획 개요



## 가. 사업 추진방향

### □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생태계 조성

- (심의제도 고도화) 심의위원 후보단 체계화, 전담 심의위원제 안착, 공정심의평가관제 확대, 지역최소보장제 지속 운영, 비대면 심의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내용 강화(2단계) 및 지원 단체 내 성평등 행동강령 마련 및 지원사업 참여자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고용 안전망 강화) 공정보상체계 확립\*,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착 노력\*\*,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개선\*\*\*

\* 분야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문학분야 '20년 완료, 공연 및 시각 예술분야 '21년도 추진예정)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보험 가이드라인 제시, 상해 보험료 편성

#### ○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여건 마련

##### -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보조금 지원(편성)대상(대표자 사례비 등 인건비, 예술인 자녀(영유아) 돌봄비용) 및 자기부담금 의무편성 제외사업 확대

##### - 공모사업 지원신청 자격요건 완화

-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연령제한 폐지, 활동경력 자격완화(5년→3년)
- \*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 전시공간 '신생형' 신설로 활동경력 자격완화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연령제한 완화(만34세→만39세)

##### - 개인\* 창작활동 및 사전준비\*\* 단계 지원

\*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 비평지원 사업에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시각예술)전시사전연구, (공연예술)창작실험활동, 대본공모 등 지원규모 증액

##### - 문화예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수단원 지원인원 확대

('20년 283명→'21년 545명)

#### ○ 다양성 발굴과 실험적 시도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 창작단계별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도 지원(예술과기술융합지원)
- 창작지원 영역을 확장하여 다원예술 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사업 지원 강화(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 ○ 문화예술 가치의 재조명

- 공공의 관심사와 시대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공공예술 사업 추진
- 기부자와 예술가 간 후원매개활동 강화 등 예술후원 인식 제고 및 기부문화 확산

### ○ 온라인·비대면 접근성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휴대전화 앱(APP) 보급, 온라인·전화결제 가맹점 확대로 편하고 안전한 문화활동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기록원 소장자료 소개 및 활용 온라인 기획전시
- 새로운 환경 대응을 위한 비대면 교육과정 신규 개발(25개 과정)

##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

### ○ 현장 협력형 위원회 운영 고도화

- 현장 의제에 대응하여 일하는 소위원회 운영 강화와 위원회 운영 고도화  
\* 기능 중심 “상설 소위원회”, 의제 중심 “실무단(TF)” 논의→위원회 논의
- 지역 예술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정책 현안 발굴 등 위원회 중심의 예술정책 논의의 장 활성화

### ○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 사업별 직무분석 등을 통한 부서별 T/O 및 적정인력 산출 및 예술 현장과의 접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르별 예술행정전문가 양성
- 사회공헌 프로그램 집중개발 및 지속적 협력사업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기관 위상 제고

## 나. 운용계획 총괄표

### 1.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운용규모 | 2019년<br>결산 | 2020년 예산 |         | 2021년 계획 |         |         |
|--------|-------------|----------|---------|----------|---------|---------|
|        |             | 당초       | 수정      | 요구       | 정부안     | 확정      |
|        | 432,055     | 543,910  | 543,910 | 525,338  | 495,883 | 523,902 |

### 2. 수입 및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2021년 총 조달규모 |                | 2021년 총 운용규모 |                |
|--------------|----------------|--------------|----------------|
| ○ 자체수입       | 66,213         | ○ 사업비        | 301,494        |
|              |                | ○ 기금운영비      | 21,565         |
| ○ 정부내부수입     | 267,464        | ○ 정부내부지출     | 7,800          |
| ○ 여유자금회수     | 190,225        | ○ 여유자금운용     | 193,043        |
| <b>총계</b>    | <b>523,902</b> | <b>총계</b>    | <b>523,902</b> |

### 3. 적립금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 '16년 말  | '17년 말  | '18년 말  | '19년 말  | '20년 말<br>(수정) | '21년 말<br>(계획) |
|----------|---------|---------|---------|---------|----------------|----------------|
| 수입(A)    | 215,345 | 196,717 | 286,270 | 366,965 | 348,070        | 333,677        |
| 지출(B)    | 228,458 | 229,496 | 241,223 | 274,095 | 332,164        | 330,859        |
| 수지차(A-B) | △13,113 | △32,779 | 45,047  | 92,870  | 17,752         | 2,818          |

|       |        |        |        |         |         |         |
|-------|--------|--------|--------|---------|---------|---------|
| 기말적립금 | 81,351 | 54,554 | 92,046 | 160,404 | 167,253 | 170,071 |
|-------|--------|--------|--------|---------|---------|---------|

- \* 기말적립금은 원금기준(평가액 반영 시 감소)
- \* '20년말 금액은 예산현액 기준(평가손익 등 미반영)

#### 4.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 □ 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0년 당초<br>(A) | 2021년 계획<br>(B) | 증 감             |              |
|------------|-----------------|-----------------|-----------------|-----------------|--------------|
|            |                 |                 |                 | (B-A)           | %            |
| 수<br>입     | ○ 자체수입          | 66,079          | 66,213          | 134             | 0.2          |
|            | - 건물대여료         | 1,175           | 1,175           | -               | -            |
|            | - 기타재산수입        | 4,500           | 4,500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5,982          | 36,645          | 663             | 1.8          |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292           | 7,498           | 1,206           | 19.2         |
|            | - 기타영업외잡수입      | 18,130          | 16,395          | △1,735          | 9.6          |
|            | ○ 정부내부수입        | 293,324         | 267,464         | △ 25,860        | △ 8.8        |
|            | - 일반회계전입금       | 21,000          | 20,370          | △ 630           | △ 3.0        |
|            | - 기금전입금         | 272,324         | 247,094         | △ 25,230        | △ 9.3        |
|            | ○ 여유자금회수        | 184,507         | 190,225         | 5,718           | 3.1          |
| <b>합 계</b> |                 | <b>543,910</b>  | <b>523,902</b>  | <b>△ 20,008</b> | <b>△ 3.7</b> |
| 지<br>출     | ○ 사 업 비         | 267,795         | 301,494         | 33,699          | 12.6         |
|            | - 예술창작지원        | 45,548          | 48,186          | 2,638           | 5.8          |
|            | - 예술인력육성        | 14,540          | 21,672          | 7,132           | 49.1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19,000          | 24,000          | 5,000           | 26.3         |
|            | - 지역문화예술지원      | 10,457          | 9,957           | △ 500           | △ 4.8        |
|            | - 예술의관광자원화      | 11,070          | 8,862           | △ 2,208         | △ 19.9       |
|            |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23,877          | 21,694          | △ 2,183         | △ 9.1        |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143,303         | 167,123         | 23,820          | 16.6         |
|            | ○ 기금운영비         | 21,487          | 21,565          | 78              | 0.4          |
|            | - 인건비           | 11,978          | 12,124          | 146             | 1.2          |
|            | - 기타운영비         | 9,509           | 9,441           | △ 68            | △ 0.7        |
|            | ○ 정부내부지출        | 5,000           | 7,800           | 2,800           | 56.0         |
|            | ○ 여유자금운용        | 249,628         | 193,043         | △ 56,585        | △ 22.7       |

□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도         |                | 2021년도         |                |                | 증 감             |              |
|---------------------------|----------------|----------------|----------------|----------------|----------------|-----------------|--------------|
|                           | 당초(A)          | 수정             | 요구             | 정부안            | 확정(B)          | B-A             | %            |
| <b>총 계</b>                | <b>543,910</b> | <b>543,910</b> | <b>525,338</b> | <b>495,883</b> | <b>523,902</b> | <b>△ 20,008</b> | <b>△ 3.7</b> |
| <b>자체수입 소계</b>            | <b>66,079</b>  | <b>66,079</b>  | <b>63,123</b>  | <b>66,213</b>  | <b>66,213</b>  | <b>134</b>      | <b>0.2</b>   |
| ○ 관유물대여료                  | 1,175          | 1,175          | 1,175          | 1,175          | 1,175          | -               | -            |
| ▪ 건물대여료                   | 1,175          | 1,175          | 1,175          | 1,175          | 1,175          | -               | -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               | -            |
| ▪ 기타재산수입<br>(적립금이자수입)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5,982         | 35,982         | 33,807         | 36,645         | 36,645         | 663             | 1.8          |
| ▪ 민간출연금(기부금)              | 25,504         | 25,504         | 23,329         | 26,167         | 26,167         | 663             | 2.6          |
| ▪ 기타경상이전수입<br>(기금집행잔액반납금) | 10,478         | 10,478         | 10,478         | 10,478         | 10,478         | -               | -            |
| ○ 입장료수입                   | 6,244          | 6,244          | 6,244          | 6,244          | 6,244          | -               | -            |
| ▪ 입장료수입<br>(골프장운영이익금 등)   | 6,244          | 6,244          | 6,244          | 6,244          | 6,244          | -               | -            |
| ○ 잡수입                     | 18,178         | 18,178         | 17,397         | 17,649         | 17,649         | △ 529           | △ 2.9        |
| ▪ 기타잡수입<br>(간행물판매수입금 등)   | 48             | 48             | 1,002          | 1,254          | 1,254          | 1,206           | 2,512.5      |
| ▪ 기타영업외잡수입<br>(경륜경정수익금)   | 18,130         | 18,130         | 16,395         | 16,395         | 16,395         | △ 1,735         | △ 9.6        |
| <b>정부내부수입 소계</b>          | <b>293,324</b> | <b>293,324</b> | <b>271,990</b> | <b>239,445</b> | <b>267,464</b> | <b>△ 25,860</b> | <b>△ 8.8</b> |
| ○ 전입금                     | 293,324        | 293,324        | 271,990        | 239,445        | 267,464        | △ 25,860        | △ 8.8        |
| ▪ 일반회계전입금                 | 21,000         | 21,000         | 20,370         | 20,370         | 20,370         | △ 630           | △ 3.0        |
| ▪ 기금전입금                   | 272,324        | 272,324        | 251,620        | 219,075        | 247,094        | △ 25,230        | △ 9.3        |
| - 복권기금전입금                 | 122,324        | 122,324        | 154,620        | 122,075        | 150,094        | 27,770          | 22.7         |
| - 체육기금전입금                 | 100,000        | 100,000        | 97,000         | 97,000         | 97,000         | △ 3,000         | △ 3.0        |
| - 관광기금전입금                 | 50,000         | 50,000         | -              | -              | -              | △ 50,000        | △ 100.0      |
| <b>여유자금회수 소계</b>          | <b>184,507</b> | <b>184,507</b> | <b>190,225</b> | <b>190,225</b> | <b>190,225</b> | <b>5,718</b>    | <b>3.1</b>   |
| ○ 정부예금회수                  | 184,507        | 184,507        | 190,225        | 190,225        | 190,225        | 5,718           | 3.1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4,507        | 184,507        | 190,225        | 190,225        | 190,225        | 5,718           | 3.1          |

□ 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년도         |                | 2021년도         |                |                | 증 감            |             |
|-----------------|----------------|----------------|----------------|----------------|----------------|----------------|-------------|
|                 | 당초(A)          | 수정             | 요구             | 정부안            | 확정(B)          | B-A            | %           |
| <b>총 계</b>      | <b>543,910</b> | <b>543,910</b> | <b>525,338</b> | <b>495,883</b> | <b>523,902</b> | <b>△20,008</b> | <b>△3.7</b> |
| 사업비 소계          | 267,795        | 310,279        | 312,214        | 294,634        | 301,494        | 33,699         | 12.6        |
| ○ 예술창작역량강화      | 79,088         | 94,258         | 99,001         | 86,998         | 93,858         | 14,770         | 18.7        |
| ▪ 예술창작지원        | 45,548         | 60,718         | 49,496         | 46,786         | 48,186         | 2,638          | 5.8         |
| ▪ 예술인력육성        | 14,540         | 14,540         | 25,005         | 21,212         | 21,672         | 7,132          | 49.1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음자) | 19,000         | 19,000         | 24,500         | 19,000         | 24,000         | 5,000          | 26.3        |
| ○ 지역문화예술진흥      | 21,527         | 21,527         | 19,514         | 18,819         | 18,819         | △2,708         | △12.6       |
| ▪ 지역문화예술지원      | 10,457         | 10,457         | 9,957          | 9,957          | 9,957          | △500           | △4.8        |
| ▪ 예술의관광자원화      | 11,070         | 11,070         | 9,557          | 8,862          | 8,862          | △2,208         | △19.9       |
| ○ 예술향유기회확대      | 167,180        | 194,494        | 193,699        | 188,817        | 188,817        | 21,637         | 12.9        |
|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23,877         | 27,211         | 22,550         | 21,694         | 21,694         | △2,183         | △9.1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143,303        | 167,283        | 171,149        | 167,123        | 167,123        | 23,820         | 16.6        |
| ○ 기금운영비         | 21,487         | 21,366         | 21,742         | 21,565         | 21,565         | 78             | 0.4         |
| ▪ 인건비(문예)       | 11,978         | 11,978         | 11,844         | 12,124         | 12,124         | 146            | 1.2         |
| ▪ 기관운영비(문예)     | 7,866          | 7,745          | 7,561          | 7,223          | 7,223          | △643           | △8.2        |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80            | 580            | 557            | 556            | 556            | △24            | △4.1        |
| ▪ 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1,063          | 1,063          | 1,780          | 1,662          | 1,662          | 599            | 56.3        |
| ○ 기금간거래         | 5,000          | 10,006         | 4,850          | 7,800          | 7,800          | 2,800          | 56.0        |
| ▪ 복권기금전출(반환금)   | 5,000          | 10,006         | 4,850          | 7,800          | 7,800          | 2,800          | 56.0        |
| ○ 여유자금운용        | 249,628        | 202,259        | 186,532        | 171,884        | 193,043        | △56,585        | △22.7       |
| ▪ 통화금융기관예치      | 249,628        | 202,259        | 186,532        | 171,884        | 193,043        | △56,585        | △22.7       |

## 다. 운용계획 개요

1) 문예기금 수입총계 : '20년 543,910 → '21년 523,902백만원(△20,008 감)

□ 자체수입 : '20년 66,079 → '21년 66,213백만원(134 증)

○ 관유물대여료 : '20년 1,175 → '21년 1,175백만원(전년 동)

- (건물대여료)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 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임대수입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20년 4,500 → '21년 4,500백만원(전년 동)

- (기타이자수입)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기말적립금 추이 : '18년 920억원 ▶ '19년 1,604억원 ▶ '20년(추정) 1,782억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년 35,982 → '21년 36,645백만원(663 증)

- (민간출연금) '20년 25,504 → '21년 26,167백만원(663 증)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1항 2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에 따른 기부금 수입

\* 실명제 및 조건부기부금은 지출의 기부금사업과 연계편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 기부금 수입, 증가추세 반영 수입계획 증액

\* 기부금 추이 : '17년 48억원 ▶ '18년 81억원 ▶ '19년 122억원 ▶ '20년(추정) 98억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20년 10,478 → '21년 10,478백만원(전년 동)

-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 복권기금 반납금은 지출의 복권기금 전출(반환금)과 연계편성

- 입장료수입 : '20년 6,244 → '21년 6,244백만원(전년 동)
  - 예술위원회 소유의 “뉴서울CC” 운영 수익금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미술관 등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전시, 교육 등 기획프로그램 수입
- 잡수입 : '20년 18,178 → '21년 18,178백만원(전년 동)
  - (기타잡수입) '20년 48 → '21년 1,254백만원(전년 동)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일반회계 등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 (기타영업외잡수입) '20년 18,130 → '21년 16,395백만원(전년 동)
    - 2010년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24.5가 배분되어 전입
      - \* '15년 12,018, '16년 20,665, '17년 21,717, '18년 16,775, '19년 10,693, '20년 8,670

□ 정부내부수입 : '20년 293,324 → '21년 267,464백만원(△25,860 감)

- 일반회계전입금 : '20년 21,000 → '21년 20,370백만원(△630 감)
  - 문예기금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금
    -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68-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 기금전입금 : '20년 272,324 → '21년 247,094백만원(25,230 증)
  -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 복권기금 '20년 122,324 → '21년 150,094백만원(27,770 증)
      - \* 복권사업(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과 연계편성
    - 체육기금 '20년 100,000 → '21년 97,000백만원(△3,000 감)
    - 관광기금 '20년 50,000 → '21년 0원(순감)

□ 여유자금회수 : '20년 184,507 → '21년 190,225백만원(5,718 증)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21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2) 문예기금 지출총계 : '20년 543,910 → '21년 523,902백만원(△20,008 감)

□ 사업비 : '20년 267,795 → '21년 301,494백만원(33,699 증)

○ 예술창작역량강화 : '20년 79,088 → '21년 93,858백만원(14,770 증)

- 예술창작지원 : '20년 45,548 → '21년 48,186백만원(2,638 증)

· 문학창작육성 : 2,988 → 2,988백만원(전년 동)

· 시각예술창작육성 : 2,672 → 3,182백만원(510 증)

· 공연예술창작육성 : 30,145 → 29,036백만원(△1,109 감)

· 국제예술교류지원 : 6,743 → 6,230백만원(△513 감)

· 예술과기술융합지원 : 2,000 → 4,750백만원(2,750 증)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1,000 → 1,000백만원(전년 동)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1,000백만원(순증) \*신규사업

- 예술인력육성 : '20년 14,540 → '21년 21,672백만원(7,132 증)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3,000 → 3,000백만원(전년 동)

· 현장예술인력육성 : 11,540 → 18,672백만원(7,132 증)

- (복권)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20년 19,000 → '21년 24,000백만원  
(5,000 증)

○ 지역문화예술진흥 : '20년 21,572 → '21년 18,819백만원(△2,708 감)

- 지역문화예술지원 : '20년 10,457 → '21년 9,957백만원(△500 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6,187 → 6,187백만원(전년 동)

·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270 → 270백만원(전년 동)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4,000 → 3,500백만원(△500 감)

- 예술의관광자원화 : '20년 11,070 → '21년 8,862백만원(△2,208 감)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2,145 → 1,973백만원(△172 감)

·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5,284 → 4,806백만원(△478 감)

·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2,960 → 2,083백만원(△877 감)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681 → 0원(순감) \*사업종료

- 예술향유기회확대 : '20년 167,180 → '21년 188,817백만원(21,637 증)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20년 23,877 → '21년 21,694백만원(△2,183 감)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1,579 → 1,578백만원(△1 감)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19,980 → 17,805백만원(△2,175 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108 → 101백만원(△7 감)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 2,210 → 2,210백만원(전년 동)
  - 문화예술향유지원 : '20년 143,303 → '21년 167,123백만원(23,820 증)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103,324 → 126,094백만원(22,770 증)
    - 신나는예술여행 : 24,229 → 24,229백만원(전년 동)
    - 방방곡곡문화공감 : 15,750 → 16,800백만원(1,050 증)

□ 기금간거래 : '20년 5,000 → "21년 7,800백만원(2,800 증)

-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 5,000 → 7,800백만원(2,800 증)

□ 여유자금운용 : '20년 249,628 → '21년 193,043백만원(△56,585 증)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기금운영비 : '20년 21,487 → '21년 21,565백만원(78 증)

○ 인건비 : '20년 11,978 → '21년 12,124백만원(146 증)

- '21년도 처우개선 108백만원 증

\* 산출근거 : '20년 11,978백만원×0.9%(공통기준)

- '21년 인력증원(2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38백만원 증

\* 산출근거 : '21년 인력증원 2명×6개월×3.2백만원

○ 기관운영비 : '20년 7,866 → '21년 7,223백만원(△643 감)

- 보일러 등 노후시설 교체 완료소요 △270백만원 감

- 시설 보수공사 완료소요 △364백만원 감

- '19년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회수 △37백만원 감

-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통경비 △32백만원 감

-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관리용역비 54백만원 증

- 상용임금 처우개선 공통기준 반영 5백만원 증

- 정기증원에 따른 선택적 복리비 1백만원 증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0년 580 → '21년 556백만원(△24 감)

- 일반수용비 등 자체절감 △20백만원 감

-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통경비 △4백만원 감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0년 1,063 → '21년 1,662백만원(599 증)

- 일반수용비 등 자체절감 △30백만원

- 사업추진비 등 공통경비 △10만원 감

- 기록물관리 프로그램(SW) 구축 86백만원 증

- 예술도움사이트 고도화 및 앱 구축 200백만원 증

- 기록물관리 HW 및 솔루션 도입 343백만원 증



# 3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 다.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

### 제 정 목 적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1) 일반지침

#### 1. 기금운용의 기본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집행 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회 및 감사원 시정권고 이행

- 기금관리주체는 2021년도 기금 지출에 있어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 ‘I. 일반지침’ 준용

- 기금관리주체는 조기집행,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의 ‘I. 일반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4.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 등 준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5.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집행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 2) 기금수입 지침

### 1. 자체수입 증대 노력

- 각 기금관리주체는 새로운 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 기금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기금수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 재산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 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체납처분의 이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금운용기관 분산, 금융상품 다원화 등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기금 투자폴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운용 확대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사항(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적정유동성 등)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이 강한 대체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대체투자위원회 또는 투자심의위원회’(미설치시 자산운용위원회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대체투자 : 주식·채권을 제외한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SOC 등에 대한 투자
- 기금관리주체는 수입·지출 등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고,
    -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현금성 자금의 보유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중장기 운용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 사업성 대기자금도 MMF 등 단기 투자 상품 적극 운용
- 기금관리주체는 투자유가증권의 부실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차입 최소화

- 기금관리주체는 자체수입 증대 및 운용 효율화를 통해 국채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금 차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채발행 자금을 신규 또는 추가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여유자금 규모 등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차입규모가 증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여유자금 확대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채권발행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포함 한다)으로 충당하는 기금은 자금 소요시기, 시장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입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용자원리금 회수 관리 강화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자금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용자목적·대상자·금액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용자 대행기관 또는 용자 지원대상자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 용자금 회수조건,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부당사용 시 환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금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채권 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장기 미회수 채권<sup>1)</sup>에 대한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sup>2)</sup>에 위탁할 수 있다.
- 1)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대상)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 3) 기금지출 지침

#### Ⅲ-1. 기금지출 기본원칙

##### 1.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법령 준수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경우 국가재정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국회 부대의견 준수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3. 기금집행 상 전제조건 점검 및 중복집행 방지 등

- 민간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민간의 재원확보 여부가 해당기관의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 집행 전 동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중에 사업종료 등으로 발생한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집중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사업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지원 대상·기준·규모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국회부대의견제시 등으로 집행 전에 사전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과 관련된 사전 협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협의를 필요한 소요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5. 기금수입 부족에 따른 지출사업의 조정

- 기금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출사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 6. 예산집행지침 관련사항 준용

- 사업유형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경비의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지출사업의 이월

-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출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금액의 이월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 기금별 지출사업 집행에 있어 수입재원 없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지양한다.
- 이월된 지출금액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8.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환차손 대응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에서 재원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 Ⅲ-2. 경상경비

#### 1. 경상경비 절감집행 원칙

-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2. 업무위탁 수수료 초과 집행시 사전협의

- 기금업무위탁(자산운용관련 제외)과 관련된 수수료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 채권추심수수료, 위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 3. 물품구매시 법적 의무사항 준수

-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중소기업제품·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기관 소유 또는 임차주택의 관리비 집행

-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5.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금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을 적용받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은 복리후생 경비는 신설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정비하도록 한다.

#### 6.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용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지출할 수 있다.
- 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세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Ⅲ-3. 인건비

#### 1. 인건비 및 인건비성 보전경비 초과 집행시 사전협의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인건비(세부사업내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의 인건비를 포함)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인건비 항목과 별도로 통근보조비, 피복수당 등 기금운영비 또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월정액 형태의 인건비성 보전 경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실비 변상적 수당의 기본급 일괄전환 금지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휴가·연차유급휴직제도 등 운영

-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 휴직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기간 중 급여 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4. 인력증원, 성과급 등 관련 인건비 집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또는 집행) 지침」을 적용받거나 준용하는 기관은 인력증원, 정·현원차 및 경영평가 성과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도 내역으로 관리하고 이를 인건비 인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금운용계획에 사전에 반영된 범위내에서만 지급한다.

#### 5.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 연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 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 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Ⅲ-4. 사업비

#### 1. 보조사업(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기금에서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 ‘Ⅱ.사업유형별 지침 11. 민간보조사업 및 12.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반드시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보조대상, 보조율, 보조한도 등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보조대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여부, 보조대상, 보조율, 보조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규로 선정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 2. 용자사업

- 용자사업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실적 제고를 위해 용자절차를 간소화 하고 용자사업 대상자에게 일간지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사업의 용자방식 및 용자조건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용자조건은 대하금리, 대출금리, 용자취급수수료(용자추천기관에 대한 수수료 포함), 용자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 용자지원 대상(용자지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수혜자별 용자 지원한도 등을 포함한다.
- ※ 대하금리 : 기금에서 용자대행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대출금리 : 용자대행기관에서 개별자금 수요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 다만,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용자조건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용자·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연동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금리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용자기간과 만기가 유사한 국고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방식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①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②국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정금리로 운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경우, ③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한 재원의 조달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등
  - 기금관리주체는 신규 용자금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용자 지원대상자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대손을 포함한 관리비용과 취급기관의 적정이윤, 자금 수요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용자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 대행기관 등에 지급하는 용자 취급수수료를 최소 年 1회 이상 재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사업 운영규정 등에 용자사업의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부당집행 유형: 무자격자의 용자금 청구, 사업내용 허위 기재, 지원 목적외 사용, 미집행 잔액 미반납 등
  - 제재방안 및 기준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제출기한, 미집행 잔액 반납, 목적외 사용 및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 사용시 환수 및 참여 제한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용자금리 등 용자조건, 실집행, 회수현황 등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의 재정용자 관리시스템에 매 분기별 등록 하여야 한다.

### 3. 펀드출자사업

- 기금관리주체 등이 정책 목적을 위해 펀드(또는 조합) 출자·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펀드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연간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관리주체는 「펀드운용지침」에 따른 「연간펀드운용계획」의 수립 및 펀드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소관부처, 기금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예산·기금을 통해 정책 펀드출자자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펀드출자 주체’)

- 펀드운용지침에는 자금조성, 자금배분 및 운영기준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에는 자펀드에 대한 출자기준 등 포함

- 연간 펀드운용계획은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당해년도 출자 한도, 출자분야, 투자의무비율, 기준수익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자금조성에 있어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계획된 매칭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분야에 대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펀드운용과정에서 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 투자의무비율 :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펀드결성총액에서 의무적으로 특정분야에 투자해야할 금액의 비중

- 펀드출자주체는 펀드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용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펀드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모태펀드의 경우 자펀드의 선정 및 출자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해 연도에 출자하지 않은 자산은 각 펀드별 운용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출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정부가 출자한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 국고 회수 전 청산금을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4. 기금 지원기관의 신설 및 운영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으로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출자지원 제외)의 재정관련 내부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소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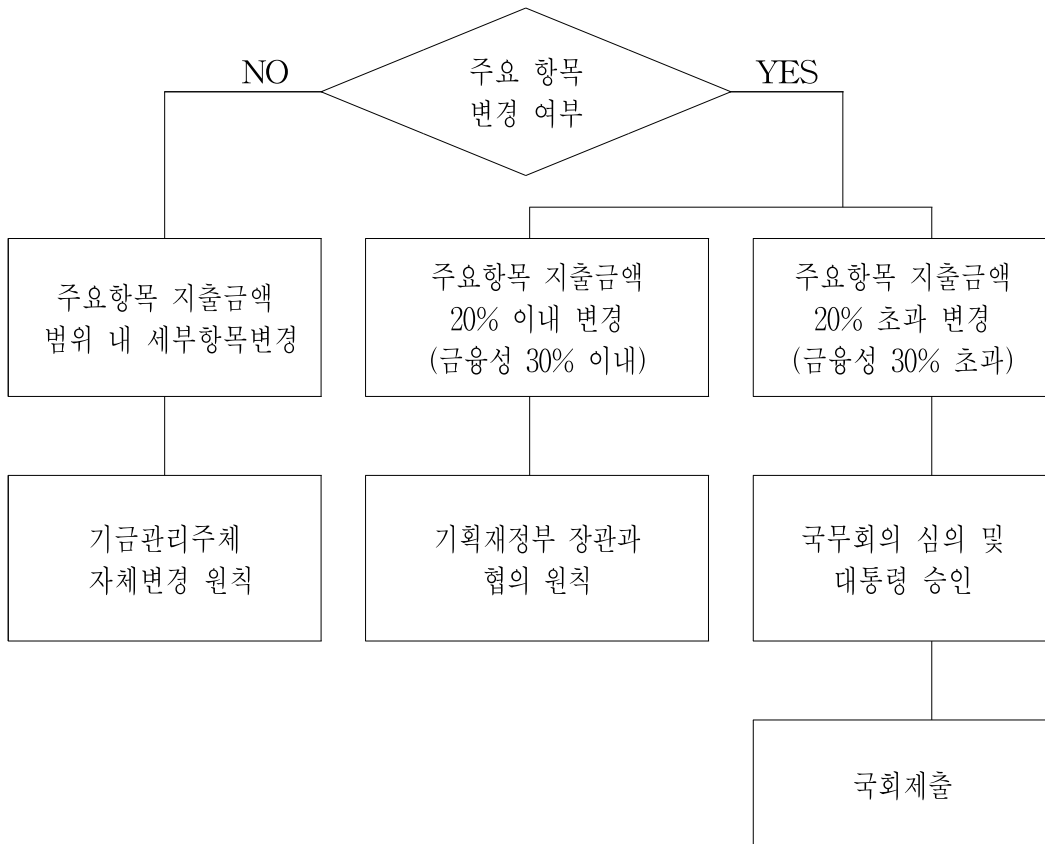
※ 재정관련 내부규정(예시) : 임직원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 《주요변경범위》

- ◇ 국회제출대상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 금융성 이외의 기금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 금융성 기금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시(단, 기금운영비는 20%)

### 1.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 주요항목 : 장(분야) · 관(부문) · 항(프로그램)  
 세부항목 :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 · 목

## 2.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 ① 기금운용계획 타당성 사전 검토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한 소요인지 여부
  -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사업의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

### ② 기금운용계획변경시 내용 관련 유의사항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 연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변경시 절차 관련 유의사항

-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주요항목 지출금액 20%(또는 30%) 이내 변경**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은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다음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① 기금운영비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② 늘어난 기금수입을 재원으로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의무적 경비항목 이외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③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의 재원으로 다른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다만,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간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 ④ 차입금 이자 등 의무적 지출과 용자성 지출의 축소분을 재원으로 의무적 지출이 아닌 다른 사업(경상·자본·용자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의무적 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급 의무가 부과된 지출(「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연금·보험법에 의한 각종 연금·보험지급,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과 국채 이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별표 3 예시】

- ⑤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설(세항, 세세항 및 세세항 내에서의 내역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세입부족 보전을 위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회계 또는 기금의 국채 발행 한도 분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타 기금 예탁금을 증액하는 경우

- ⑦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도 준용한다.

- 다만, 의무적 지출을 증액시키는 비목간 변경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⑧ 기타 각 기금별로 협의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 【별표2】 참조

#### 4.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내에서 세부항목 변경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세부항목을 변경할 경우 기금관리 주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3. 주요항목 지출금액 20%(또는 30%) 이내 변경’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항목 중 ④ ~ ⑤ 항과 ⑦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5. 의무적 지출항목의 20%(또는 30%) 초과 변경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항목의 20%(또는 3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의 변경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또는 3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① 복권 당첨금
- ② 영업시설 관련 경비
- ③ 기타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경비

## 7. 차입금(국채) 원리금 상환 지출항목의 변경

-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다목 및 제5호에 따라 차입금 원리금 및 국채원리금 상환 지출항목의 20%(또는 3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8.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개요, 사유, 산출내역과 【별표4】, 【별표5】의 양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원장·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 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 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 다부처 집행 기금의 경우 실제 사업수행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에 속하는 변경내역을 제출한다.

-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4호 나목, 5호 및 제6호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또는 30%)를 초과하여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변경된 금액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여야 한다.

## 별표 1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

### □ 선정기준

| 내역 사업 | 선정 요건 | 구체적 선정기준  |
|-------|-------|---|
| 신규사업  | 사전이행  | <p>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p> <p>① 사업 근거 법령의 제·개정, 권리의무관계·외국과의 계약체결·공모절차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한 사업</p> <p>②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p> <p>③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기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집행되는 사업</p> |
|       | 사업내용  | <p>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p> <p>④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p> <p>⑤ 재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p> <p>⑥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p> <p>⑦ 지방비 또는 민자 확보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업</p>  |
| 계속사업  | 사업변화  | <p>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p> <p>⑧ 사업여건 변화로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 부처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대규모 재정소요사업</p> <p>⑨ 사업여건 변화로 중요한 사업 내용이 바뀌는 등 검토가 필요한 사업</p>  |
|       | 효율집행  | <p>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p> <p>⑩ 회계연도 중 사업구조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p> <p>⑪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p>  |

## 별표 4 기금운용계획 변경 타당성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검토 내용   |
|-------------------|---|
|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되었는지 증명</li> </ul>  |
|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시급하여 금년에 바로 착수해야 하는지 증명 필요</li> <li>· 차년도로 사업을 연기가 곤란하다는 증명 필요</li> </ul> |
|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li> </ul>  |
|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변경 불가</li> <li>·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존중 필요</li> </ul>                                     |
| ⑤ 사업의 추진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주요정책회의, 국정과제 등에 사업추진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증명 필요</li> </ul>  |
|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자체, 민간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증명 필요</li> </ul>                                     |

## □ 자체 이용 · 전용권 위임범위

###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 2021년도 예산총칙 제10조

1. 2021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 내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나’항목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다’ ‘라’ ‘사’ ‘아’ ‘자’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다.

- 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 다.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 라.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 마.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 바.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 사.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 아.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 자. 반환금
- 차.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 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46조제2항
-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각호 내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아래 가~라 호는 각 호 상호간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마호는 상호간 자체전용 허용

#### 가. 인건비(100목)

- 1) 타 비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업무대체를 위해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4호 등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 및 신규 공무원이 임용전 수습으로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보수(110-01목)로 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하며, 증액사유 및 증감액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물건비(200목)

- 1) 타 비목에서 복리후생비(210-12목), 특수활동비(230목), 업무추진비(240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동일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230목)에서 특정업무경비(250-03목) 부서활동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가능)
- 2)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210-08목)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 이전지출(300목)

- 1)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 일반 출연금(350목),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해외자본이전(340-03목), 연구개발 건축비(360-03목),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 연구개발 활동비 등(360-05목)은 자체전용을 허용하고,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인건비(110목)로부터 자체전용을 허용
- 2)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라. 자산취득 및 운용(400목)

- 1) 건설비(420목), 지분취득비(490목)는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만, 공사비(420-03목), 감리비(420-04목)은 자체전용을 허용
- 2) 건설보상비(410목), 공사비(420-03목), 감리비(420-04목)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마.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 1) 상환지출(500목)
- 2) 전출금 등(600목)
- 3) 반환금및손실금(710-03목), 차기이월금(710-04목)

2.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관, 부문)의 경우, 제1항의 자체전용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항(단위 사업)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항(프로그램)내의 세항(단위 사업)은 제외한다(방위사업청만 별도로 시행)
3.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
4.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은 동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별첨>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 구분                 | 목 (25개)            | 자체전용대상      |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
|--------------------|--------------------|-------------|---|
| 100<br>(인건비)       | 110 (인건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 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 200<br>(물건비)       | 210 (운영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 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br>* 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                    | 220 (여비)           |             |   |
|                    | 230 (특수활동비)        |             |   |
|                    | 240 (업무추진비)        |             |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                    | 260 (연구용역비)        |             |   |
| 300<br>(이전지출)      | 310 (보전금)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 320목, 330목, 340목, 350목, 36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br>- 단, 320-09목(고용부담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전용 허용<br>- 340-03목(해외자본이전), 360-03목(연구개발건축비), 360-04목(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0-05목(연구개발활동비 등)은 자체전용 허용 |
|                    | 320 (민간이전)         |             |   |
|                    | 330 (자치단체이전) *     |             |   |
|                    | 340 (해외이전)         |             |   |
|                    | 350 (일반 출연금)       |             |   |
|                    | 360 (연구개발 출연금)     |             |   |
| 400<br>(자산취득 및 운용) | 410 (건설보상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 410목(건설보상비), 420-03목(공사비), 420-04목(감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                    | 420 (건설비)          |             |   |
|                    | 430 (유형자산)         |             |   |
|                    | 440 (무형자산)         |             |   |
|                    | 450 (융자금)          |             |   |
|                    | 460 (출자금 등)        |             |   |
|                    |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             |   |
|                    | 480 (예탁금)          |             |   |
|                    | 490 (지분취득비)        |             |   |
| 500<br>(상환지출)      | 510 (상환지출)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 420-01목(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실시설계비), 420-05목(시설부대비), 490목(지분취득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  |
| 600<br>(전출금 등)     | 610 (전출금 등)        |             |   |
| 700<br>(예비비 및 기타)  | 710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710-01목(예비비), 710-02목(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 다. 사업유형별·비목별 지침

### 1. 인건비

#### 1-1. 공무원 보수

##### 가. 적용범위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 나. 세부지침

###### (1) 인건비의 지급근거

가)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

###### (2)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 가)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

-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관리용역비

(210-15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등 위탁·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포함) 및 산재보험 등 고용부담금(320-09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 나) 타 비목에서 인건비로 전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 제·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영 효율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헌법기관의 별도정원은 예산편성에서 정한 직급 및 인원 외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예산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타

#### 가) 조직 및 인력의 확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구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위원회 및 그 하부조직,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추진단, 사무국, 준비단 등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파견

-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연봉액 지출비목

-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보수(110-01목)로 하고, 정원의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기타직보수(110-02목)로 한다.

#### 라) 초과근무수당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 초과근무 과다 발생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 초과근무를 부당수령한 직원의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하여 성과 연봉(성과상여금) 지급결정시 참고 및 징계조치

## 1-2. 기타직 보수

### 가. 적용범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

### 나. 일반지침

#### 가) 집행기준

-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3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결과 증원 또는 임기연장, 등급 상향조정 등 인건비 증액요인 발생시 기타직 보수(110-02목)의 자체충당 여부와 상관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 협의하여야 한다.

#### 나) 퇴직금 및 부담금 지급

- 기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지출

### 1-3. 상용임금 · 일용임금

#### 가.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상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일용임금)

#### 나. 일반지침

##### (1) 상용임금

##### 가) 집행기준

-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 인력증원, 별도 수당 신설, 단가인상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상용임금은 연도 중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별, 직종별 정·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정원계획 (기간제, 무기계약직 구분) 포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도중에 노사협의 등으로 간접고용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수,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및 부담금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을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일용임금

가) 집행기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용임금을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일용임금 근로자를 상용임금(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일용임금(110-04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수,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부문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 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산업디자인부문 노임 :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 다)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 집행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3)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 등

-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불필요한 초과근무 축소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 다. 분야별 세부지침

##### (1) 기타직 보수

##### 가) 위원회 상근직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 경력, 근무기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시된 연봉월액 상한 내에서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증원, 직급상향 등 인건비 증액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110-02) 자체충당 여부와 상관없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예산 협의하여야 한다.

(천원)

| 급 별 | 연봉월액 상한 |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
| 가 급 | 3,312.3 |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 나 급 | 2,957.5 |                             |
| 다 급 | 2,644.2 |                             |
| 라 급 | 2,304.6 |                             |
| 마 급 | 2,021.1 |                             |
| 바 급 | 1,822.5 |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 나) 전공의

○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보수

(천원)

| 종 별   | 연봉월액    | 진료특별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
| 인턴    | 2,098.4 | 봉급의 24%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일반직 9급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 레지던트1 | 2,326.9 |         |   |
| 레지던트2 | 2,430.6 |         |   |
| 레지던트3 | 2,535.6 |         |   |
| 레지던트4 | 2,638.6 |         |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 (2)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가) 자체 일용임금 고용기준 마련 및 예산 범위내 집행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나) 집행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 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연말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3) 청사관리요원

### 가) 집행시 유의사항

-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 등으로 청사관리 인원을 확보하거나 시설 장비유지비 또는 관리용역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공공기관 청년인턴

##### 가) 운영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 운영비(210목)

### 2-1. 일반수용비(210-01목)

가.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법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인쇄를 발주함에 있어 조판 작업 여부·난이도, CTP\*(Computer to Plate) 방식 도입 등 인쇄기술의 향상 부분을 확인하고 인쇄비의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인쇄용 필름 작업을 생략하고 직접 인쇄판을 만드는 방식

나. 팸플릿,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및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없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한 청사 현판, 현수막 교체용 예산집행은 금지한다.

마.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정부 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 참고)

사.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자. 정책·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필요시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나라 인터넷 PC영상회의’를 이용하고 보안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민간 플랫폼(Platform)도 이용 할 수 있다. (위원회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위원회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카.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한다.

## 2-2.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 가. 국내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나.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다. 각급 기관장은 사무용 전화를 업무의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에너지·물 등 절약 전문기업, 에너지·물 등 절약시설 설치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건축·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마. 우편요금은 우편요금할인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1조 등에 따라 전자문서 통지 등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바.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 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 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2-3. 피복비(210-03목)

-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청소 등) 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2-4. 급식비 및 구호및교정비(210-04목, 320-06목)

### 가. 지급대상자

-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의경,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등

### 나. 집행단가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 2-5. 특근매식비(210-05목)

### 가. 지급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로서, 일·숙직비(210-06목)를 지급받지 않은 자

나. 지급단가 및 집행방법

-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6. 일·숙직비(210-06목)

가.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비는 1일(日)당 30,000원, 숙직비는 1야(夜)당 30,000원 범위내에서 부처 자율로 결정한다.

- 주말·공휴일 일·숙직시에는 일직비는 1일(日)당 50,000원, 숙직비는 1야(夜)당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2-7. 임차료(210-07목)

가. 청·관사 임차 및 전세를 위한 보증금은 무형자산(440목)으로 집행하고, 임차료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청사를 임차하려는 기관은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접속하여 활용 가능한 유희청사가 있는지를 우선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2-8. 유류비(210-08목)

가. 적용범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

나. 차량 유류비 사용시 주의사항

-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시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충전소 포함)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충전소 포함)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http://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http://www.opinet.or.kr))의 유가를 함께 공개한다.

다.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 (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9.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가. 적용범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 단, 시설·장비의 가동을 위한 유류 구입비는 제외(2017년 예산부터 유류비로 편성)

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공사비(420-03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건축·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2-10. 학교운영비(210-10목)

### 가. 적용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 하는 운영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회계에 지원 하는 운영경비 중 국립부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경비(공무원 인건비 및 공사비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비

### 나. 세부지침

-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의 배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문체부장관 포함)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2-11. 복리후생비(210-12목)

### 가.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제2편 사업유형별 지침 「4. 맞춤형 복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직원 생일 소액경비

-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의 생일시 소액의 상품권, 케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다. 이주지원비

- 지급대상 기관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에 한한다.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기관(이전지역)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위원회 상근직, 지역·기능 인재인턴 등), 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

- 이전지역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기관 이전 이후 신규 채용자, 전입자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고용계약에도 불구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은 전액을 나머지 1명은 50%를 지급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 라목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9호 가목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지급한다. 다만, 대상자 중 세종시 또는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기관에서 파견되는 자는 제외한다.
- 군의무복무 중인 공익요원, 징병검사 전담의, 공익법무관 등은 제외한다.
- 이전일 이후 기관별로 2년 동안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전입, 파견 등에 따라 근무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별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전기관 소속 직원이 非이전기관에서 파견근무 후 복귀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이전기관이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非이전기관에서 이전기관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이전기관에서 이전기관으로 파견된 경우와 이전기관에서 이전지역의 非이전기관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이주지원비 지급기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이주지원비 지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은 맞춤형복지비, 동호회 지원경비 등 타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대상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12. 일반용역비(210-14목)

### 가.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도 집행할 수 있다

### 나. 일반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2-13. 관리용역비(210-15목)

### 가. 적용범위

-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나. 일반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단, 건축물 일반청소·보안 경비·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용역 계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2-14. 기타운영비(210-16목)

### 가. 비서실 및 과운영비

#### (1)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부기관장, 실·국장, 소속기관 기관장 등 비서실의 기본 운영경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2) 세부지침

- 비서실 운영을 위해 소요 되는 제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에서 정액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과운영비를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 과 운영비 지급단가

|       |       |       |      |
|-------|-------|-------|------|
| 과 인원수 | 20인이상 | 6인이상  | 5인이하 |
| 월 지급액 | 270천원 | 180천원 | 90천원 |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과 인원수에는 현원 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추가집행 할 수 있다.

#### 나. 시험관리비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면접수당 및 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다. 축·조의금 및 격려금

##### (1) 적용범위

-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
-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 세부지침

-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국장 명의로 지출 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실집행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법령상 근거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1.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비 예산

### 6-1. 적용범위

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각 중앙관서 교육훈련 관련예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는 군(軍)교육훈련기관을 포함

※ 군(軍) 교육훈련기관을 제외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인사혁신처 교육훈련과에서 지정([www.training.go.kr](http://www.training.go.kr) 참조)

### 6-2. 세부지침

가. 초빙강사료 지급범위 및 지급단가 산정

-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초빙강사료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지급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앙관서 자체교육 초빙강사료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자체교육 초빙강사료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교육훈련기관도 해당

-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 요원으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日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 소속부처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인원의 1/2이상을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각 중앙관서 직원교육비 집행

○ 각 중앙관서는 책정된 직원교육비(일반수용비로 편성)를 매년 작성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 2-2. 정보화 관련 예산

### 10-1. 적용범위

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10-2. 기본지침

가.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 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 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모니터링 강화

- 중앙관서의 장은 'ISP수립 공통가이드'\*(이하 ISP가이드)를 참조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 ISP가이드는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 등 ISP 수립시의 필수 항목 및 절차 규정

- ISP 산출물은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 이상 검토)\*\*,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다.

\* 정보화 투자소요(총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 중앙관서의 장은 내실 있는 ISP 수립을 위하여 사업발주 및 추진과정에서 ISP가이드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검토를 받고, 그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다. 정보화예산 집행의 효율화 노력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스템 운영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비용증가로 시스템 초기 구축비 대비 총소요비용이 과도한 사업 등 타당성 재검토 또는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당해 기관의 장에게 효율화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화계획 및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 10-3. 세부지침

#### 가. 장비의 도입

-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도입시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 초년도에 임차 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기 이전된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이전된 정보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하여 HW 및 시스템 SW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통합이 되도록 관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HW 및 시스템 SW 등의 구매·발주업무를 관리원에 위임하거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원에 정보시스템을 신규 설치·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원과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중앙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관련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중복 방지,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표준준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 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행에 적정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상반기 중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통신망의 사용

- 정보통신망(network)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보통신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상용망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기 타

-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 사업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공공데이터관리 지침」 및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예규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DB 구축비)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 3. 여 비(220목)

#### < 공 통 지 침 >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한다.
  -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점수(「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의미한다)” 또는 “현금”으로 본인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증빙자료 : e-사람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회의 등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여비를 절약하여 집행한다.
  - ※ 여비 규정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403)

## 2-1. 국내여비(220-01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 여비 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름
-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2. 국외업무여비·국외교육여비(220-02·220-03목)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220-02목)과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환율인상 등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체결 등)
  -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 해외연찬여비
  - 업무에 관한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여행하도록 한 경우의 국외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여비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을 따른다.
- 국회,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지급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을 준용한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발권수수료를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2~3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나목 중 통상교섭본부장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및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2급이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하 직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국외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하여 지급하되, 직급·여행일수·직전 3년 이내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로 지급한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 구 분       | 1인당 단가            |
|-----------|-------------------|
| 숙 박 비(1夜) | 주 빈 250<br>수행원 75 |
| 식 비(1日)   | 주 빈 50<br>수행원 30  |
| 지방시찰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40목)중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 4. 업무추진비(240목)

#####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4)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월 1회이상)으로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 자체지침에 반영한다.
- 각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4-1. 사업추진비(240-01목)

#####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 나. 세부지침

- 2개부처 이상이 공동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에 따른 연회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회 기준, US\$)

| 구 분       | 장 관   | 차 관   | 국장급이상 |
|-----------|-------|-------|-------|
| - 정 액 경 비 | 1,500 | 1,000 | 500   |
| - 연회비·선물비 | 3,000 | 2,000 | 500   |
| - 부 대 경 비 | 900   | 600   | -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2.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 가. 적용범위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외, 당정협외,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지급
    - 개인명외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 나. 세부지침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원소속기관은 업무수행 소요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경비(직급보조비 제외)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현금 지급할 수 없다.
- 외빈 초청 및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240-01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는 업무협의를, 간담회 등에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 민간 및 유관기관과 비용을 각자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토록 할 수 있다.

## 5. 직무수행경비(250목)

### 5-1. 교수보직경비(250-01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50-01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5-2. 직책수행경비(250-02목)

#### 가.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

#### 나. 지급기준

- <별첨>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에 따라 집행하되,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위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매월 중에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다. 세부지침

##### (1) 사용용도

-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급관련 주의사항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직책수행경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 ‘직제상 5급이 과장이 될 수 있는 직위’에 4급이 과장직위를 받은 경우, 해당 직급의 직책수행경비 중 가장 낮은 4급 복수직 단가(15만원)를 지급한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5급 및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 기관장은 직책수행경비를 일시금으로 월정액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5-3. 특정업무경비(250-03목)

#### 가. 적용범위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나. 세부지침

###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 특정업무경비는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3)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단,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예시: 일용직, 사무보조원, 직제상 특정업무수행 부서 소속임에도 특정업무 미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이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 〈 별첨 〉

### ○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천원)

| 유 형                        | 기준액 | 비 고          |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 750 | ※ 갑·을 구분 기준  |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조기관      | 700 | • 갑: 현원 6명이상 |
|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관장     | 650 | • 을: 현원 5명이하 |
|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 600 |              |
| •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을” | 550 |              |
| • 복수직 3급 “갑”               | 500 |              |
| • 복수직 3급 “을”               | 450 |              |
| • 4급 기관장                   | 400 |              |
| • 4급 보조기관 “갑”              | 350 |              |
| • 4급 보조기관 “을”              | 300 |              |
| • 4급 복수직                   | 150 |              |
| • 5급 기관장                   | 150 |              |
| • 5급 보조기관                  | 80  |              |
| • 6·7급 기관장                 | 80  |              |
| • 6·7급 보조기관                | 50  |              |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는 2021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현원 산정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현원 산정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장이 변경할 수 있다.

## 6. 연구용역비(260목)

### < 공통 지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 낙찰차액은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 사용 기준을 따른다.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 6-1. 일반연구비(260-01목)

####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임상연구용역 : 실소요경비
  - 기타 연구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6-2. 정책연구비(260-02목)

### 가. 적용범위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관련 경비

- 정부기관이 기관내 연구·조사 등의 목적으로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성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연구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는 제외

나. 세부지침

- 정책연구비의 운영 및 관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9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 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정책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동 규정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동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 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한다.
- 동 규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기관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6-1. 일반연구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 연구원은 직제상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이외에, 연구·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직 연구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 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과 본 지침의 각종 단가를 적용한다.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 7. 보전금(310목)

### < 공통 지침 >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8-1. 손실보상금(310-01목) · 배상금(310-02목)

가. 국가 또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사업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 국가 또는 공무원이 사업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배상금을 지급한다.

○ 국가가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은 배상금(310-02목)으로 집행하고, 국가가 소송수행 중 지급하는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등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한다.

#### 8-2. 신고포상금

가.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훈령,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나.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8-3. 예산성과금

- 가. 예산성과금은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최소 단위조직, 민간 제안자 등 포함)로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 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상금 목(310-03)으로 집행한다.

### 8-4.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 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 나. 기관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다.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령한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기관별,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된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 8. 민간보조사업

### 11-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 11-2. 세부지침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 (1) 보조금 지원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보조사업자 선정 사전공모절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연도 이전에 게시할 수 있다.

(4) 거짓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공모시에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한다.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환수실적 및 실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이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신기술·신서비스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시, 신산업·신기술 등의 창의성·과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 특히,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자부담 의무이행은 보조사업자의 자체재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등 포함)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다른 중앙부처·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자부담 의무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보조금 구분계리 및 이자발생 최소화

-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9) 보조금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산 보고서의 검증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적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20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이자 반납 및 제재부가금 징수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금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기간 및 분할납부 여부는 반환금액,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교부취소 시점에서 3년 내에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분할납부시 잔여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며, 분할납부에 따른 잔여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받아야 한다.
- 제재부가금의 분할징수에 대하여 보조금의 분할반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3)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시 고려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결정시 해당 보조사업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이전까지는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연기하거나, 직접 지원과 무관한 일부만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수령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1)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자부담 계획서 포함,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취득시 취득·등록세를 보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아래 첨부된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 구분                |                          | 내용연수            |
|-------------------|--------------------------|-----------------|
| 분류                | 대상                       |                 |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br>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 고가 동산<br>(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                   | 차량                       | 20년             |
|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br>+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및 필수기재사항은 ‘제4편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6) 보조사업 정보공시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17년 6월부터 적용한다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1천만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기준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동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는 사항

(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중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제13조,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보유정보를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 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 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18조)

##### (1) 신고 대상자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 (2) 신고대상 행위

-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부정수급심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포상금 산출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다.

**< 별첨 > 보조금 교부조건 (자치단체보조사업에도 참조)**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중앙관서에서는 보조금법, 예산및기금운용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9.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 9-1. 적용범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

### 9-2. 일반지침

- 민간위탁의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감독, 사무편람, 처리 상황의 감사 등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9-3. 세부지침

#### 가. 사업자 선정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한다.

#### 나. 위탁경비의 산정

-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 다.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라.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마. 위탁계약기간 결정 및 성과평가

- 위탁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성과평가결과는 향후 계약 시 활용한다.

9-4. 기타 조치사항

가. 수탁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다.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10. 자치단체보조사업

### 12-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나.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보조사업과 통합보조사업

### 12-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 (1) 보조금 교부시 점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첫 공모시에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의 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부담 의무이행은 자체재원으로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원여건 및 사업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공공기관 등과 위탁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이 자치단체 자부담분을 조달할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1. 민간보조사업” 지침상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재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재교부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절차를 예산배정 회계 연도 이전에 개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교부하여 민간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3)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당해연도에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한다.
- 다만, 전년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

- 지방이양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던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 중요재산의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진다.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0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아래 첨부된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

| 분 류               | 구 분                      |  | 내용연수          |
|-------------------|--------------------------|--|---------------|
|                   | 대 상                      |  |               |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br>또는 강구조건축물 |  | 50년           |
|                   | 그 외의 건축물                 |  | 35년           |
| 고가 동산<br>(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 30년           |
|                   | 차량                       |  | 20년           |
|                   | 그 외 기계류 등                |  | 15년           |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 \*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 처분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 필요

(6)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7)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강화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교부한 보조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재교부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회계연도내에 민간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 특히,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을 민간에 재교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 점검·모니터링

(8) 보조금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종이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중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3)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고 '20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 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4) 예산절감액 및 50만원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내 사업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신규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15) 보조금 전액 반환시 보조금과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16) 행정수요 유발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지방비 부담분 초과 우선 투자시 국비 보전

-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 및 SOC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연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 소 관 | 사 업 명    | 회 계        | 보조율                               |
|-----|----------|------------|-----------------------------------|
| 국토부 | 지방하천정비   | 일 반        | 50%                               |
| 행안부 | 재해위험지역정비 | 일 반<br>지 특 | 50%                               |
| 국토부 | 광역도로 건설  | 지 특        | 50%<br>(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 사업비는 25%) |
| 국토부 | 도시철도 건설  | 교 특        | 서울 40%, 지방 60%                    |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단, '15년 기준 계속사업은 90%)

(18)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 보조사업 정보공시는 2017년 6월부터 적용한다.
- \* 1천만원 이상의 판단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총액기준

-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동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법 27조의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 통합보조사업

##### (1) 세분화 및 사업명 임의 변경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2021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 (2) 자치단체별 지원규모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3) 추진계획 제출 및 수용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세부내역사업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통합보조사업별 구분계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운용실적 제출 및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용실적 평가 및 결과 통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 노력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일반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용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

(1) 신고 대상자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부정수급심의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샘플’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산출기준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른다.

## 11. 건설비(420목)

### 15-1. 적용범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15-2. 일반지침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만,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총사업비관리지침 제69조제2항)

### 15-3. 세부지침

####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20-02목)

##### (1) 사전협의를 필요한 신규 기본·실시설계사업

-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경우 등 세부내역의 특정화가 필요한 신규 기본·실시설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신규 기본·실시설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2) 실시설계 착수 시점

-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한다.
  - 다만, 총사업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된 사업물량(규모) 초과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당초 사업물량 초과 실시설계시 사전협의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4)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총사업비 관리절차와 조정기준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편성기간(6~8월)에 일괄하여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5)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

-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의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간 상호 융통은 동일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사비(420-03목)

(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관급자재 분리 설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123개)은 해당공사 설계시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설계하고,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 :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 대상제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2) 공사비 세목간·세부사업간 조정(철도사업의 자치단체이전·출연금 및 고속도로사업의 출자금 중 공사비 성격의 사업비 포함)

- 도로(산업단지 진입도로 포함)·철도·항만건설사업의 공사비 세목·세부사업은 당초 예산(국회확정 기준)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와 내역을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부사업 예산액의 50% 또는 50억원(고속도로 및 철도는 100억원)을 초과(누계기준)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다. 감리비(420-04목)

##### (1) 집행기준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라. 시설부대비(420-05목)

##### (1) 시설부대비 사용대상경비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1.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2) 예산 범위내 집행 및 초과 집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 시설부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 체재비 지급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체재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체재를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마.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1) 낙찰차액 처리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 감액)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항목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당해연도 종료월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2.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 포함)

## 바. 민간 先투자사업의 시행

### (1) 민간 先투자의 개념

○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한 것을 말한다.

(2) 민간 선투자 시행절차

- 민간시공사는 민간 선투자 대상규모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민간선투자사업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5월말까지 확정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도중 민간선투자 사업대상과 규모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민간선투자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인센티브 및 공공보증 이용

-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민간시공사는 민간선투자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 사. 민간투자 사업 토지보상비의 선투자

### (1) 개념

-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 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토지보상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조달하고 해당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2) 민자사업 토지선보상 시행절차

- 추후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자산취득비(430-01목)

### 16-1. 연간 집행계획 수립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6-2.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및 내용연수 준수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2년 12월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에 의거 연차별 디지털 TV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시 디지털 TV를 구매하여야 한다.
- 디지털 TV 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서화·예술작품을 자체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부미술은행이 정부미술품 취득업무를 수행한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각 호의 미술품은 직접 취득할 수 있다.

### 16-3. 기타 유의사항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 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렌트)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도 집행할 수 있다.



# 4

## 2021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행지침

가. 일반지침

나. 비목별 지침

### 유의사항

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 가. 일반지침

### 1) 지출 전 사전통제 준수

-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재무관리부와 감사의 사전합의(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준용) 및 기획조정부의 예산통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금)과 같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결재선 지정 방법 예시
  - 사무처장 이상 전결사항 : 기안 → 소속 부서장 <검토> → 재무관리부장 <병렬협조>(사전합의) + 기획조정부장 <병렬협조>(예산통제) → 경영전략본부장 <순차협조> → 소속 본부장 <검토> → [일상감사 해당사항] 일상감사 <감사지정>(사전합의) → 사무처장 <전결 또는 검토> → ……
  - 사무처장 미만 전결사항 : 기안 → 재무관리부장 <병렬협조>(사전합의) + 기획조정부장 <병렬협조>(예산통제) → [일상감사 해당사항] 일상감사 <감사지정>(사전합의) → 소속 부서장 <전결 또는 검토> → 소속 본부장 <전결>

#### ※ 근거규정

- \* **예산회계규정 제7조(사전합의)** ①계약의 체결, 지출 계획과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일체의 결재안은 사전에 회계책임자와 감사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때 위원장 결재 사항이 아닌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감사의 합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 ② 인력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9.>
  - ③ 연구 용역에 관한 집행 계획은 정책연구 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9.>
- \* **예산회계규정 제15조(예산통제)** ①기획조정부장은 예산의 수행을 통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사무 담당자를 분임 책임자로 둔다. <개정 2006.3.31.> <개정 2008.1.11.> <개정 2009.2.20.> <개정 2018.4.13.>
  - ②예산통제는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에 대하여 사전합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금액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량통제, 단가통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③모든 지출 계획은 사전에 예산통제 책임자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액 초과 지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 2) 사업내용 및 금액의 임의변경 금지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 3) 수입 연동 지출사업의 주기적 관리 추진

- 지출규모가 수입과 연동되어 편성되어 있는 다음의 '수입 연계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수입실적과 계획을 점검함으로써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기부금사업)
  - ②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 '수입 연동 지출사업'의 해당 기금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부장 및 재무관리부장과 사전협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출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 4) 조기집행 달성 노력

-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월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여 재정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도록 한다.

### 5) 대외 평가 및 감사 결과 권고사항의 적극 이행

- 국회·감사원·경영평가단·기금운용평가단의 감사와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과 시정·권고사항, 부대의견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 기금운영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중소기업제품·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서 기금 집행점검 및 예산낭비 신고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조정부장은 배정된 지출예산에 대한 집행을 유보시킬 수 있다.

### 7) 상위 지침 준수

-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 시행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계획 승인 알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나. 비목별 지침

### 1. 일용임금(110-04)

본 지침은 인재성장부-812(2021.01.19) "2021년 파트타이머 운용 지침 개정" 내용에 따름

#### 가. 파트타이머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요율

- 최저시급 : 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으며 예산 내 집행이 가능한 최저시급 설정\*(참고)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4대 보험요율 : 매해 각 공단에서 고시하는 요율 적용

#### \*(참고) 2021년 4대보험 요율

| 구 분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비 고                 |  |
|------------------|--------------------------|--------------------------|---------------------|--|
| 국민연금             | 4.5%                     | 4.5%                     | 동결                  |  |
| 건강보험<br>(장기요양보험) | 3.43%<br>(건강보험료의 11.52%) | 3.43%<br>(건강보험료의 11.52%) | 인<br>상              | 건강보험 6.67%→6.86%<br>장기요양 10.25%→11.52% |
| 고용보험             | 0.8%                     | 1.25%                    | 동결                  |  |
| 산재보험             | -                        | 0.803%                   | 인<br>하              | 0.833% → 0.803%                        |
|                  |                          | 0.763%                   | (신규) 근무처가 '종로' 인 경우 |  |

#### 나. 파트타이머 운용

- 파트타이머 구분
  -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미만하여 근로하는 자
  -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파트타이머 운용방침
  - 법정의무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등)
    - 파트타이머의 4대 보험 가입 관리 강화
    - 파트타이머의 근무시간 및 급여 관리 강화
  - 파트타이머 최대 근로기간 2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원칙
    -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로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인재성장부 사전논의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인재성장부 사전논의
- 파트타이머 운용 시 부서별 업무분장
  - (사용부서)채용계획, 근로계약 체결, 채용 결과보고, 근로자 근태관리, 급여 결의, 근로자 및 사용자 보험료 위원회 계좌로 이체, 월별 운용결과보고
    - \* 부서별 파트타이머 관리 및 실무 담당자 각 1인 지정 필요
  - (인재성장부)채용계획 검토, 채용결과 검토, 근로내용확인신고,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대 보험료 납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표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함

|                                  |
|----------------------------------|
| 1. 임금의 구성항목                      |
| 2. 임금의 계산방법                      |
| 3. 임금의 지급방법                      |
| 4. 휴게                            |
| 5. 휴일                            |
| 6. 휴가                            |
| 7.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
| 8. 계약기간                          |
| 9.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
| 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 11.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 위반 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계약 근로자 1인당 금액이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 파트타이머 4대 보험 가입기준(4대 보험료 산출은 별첨 “파트타이머 급여 산출 내역” 참조)

| 구분      | 가입기준             |                          |
|---------|------------------|--------------------------|
| 국민연금    | 근로기간이 1개월*       | 월 8일 이상 또는(or) 월 60시간 이상 |
| 건강보험    | 이면서(and)         | 월 8일 이상                  |
| 고용/산재보험 | 근로를 제공한 날이 1일 이상 |                          |

\* 1개월이란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31일)이 아닌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최종 근로제공일이 1개월의 기간이 되는 경우**에 해당함. 즉, 계약기간이 9월 20일부터 10월 19일인 경우 이 또한 1개월(이상)로 정의함.

| 기준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      |      |      |
| 1개월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X    | X    | ○    | ○    |
| 1개월 미만 | 월 60시간 이상 | X    | X    | ○    | ○    |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미만 | X*   | X*   | ○    | ○    |
|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    | ○    | ○    | ○    |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소정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발생)

| 구분   | 발생 요건   | 계산 방식                          | 위반시 처벌                          |
|------|---|--------------------------------|---------------------------------|
|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주 소정근로시간이<br>15시간 이상일 것   | (주당 소정근로시간/40시간)<br>x 시급 x 8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 ○ (소정근로일수)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금요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r>○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일에 따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의 의미하며,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한다. |                                |                                 |

- 초과근로수당

| 구분     | 발생 요건   | 계산 방식             | 위반시 처벌                          |
|--------|---|-------------------|---------------------------------|
| 초과근로수당 | 1일 및 1주 단시간 근로자와<br>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br>근로하였을 경우  | 초과근로시간 × 시급 × 5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br>- 1일 시업 및 종업 시각이 12:00~16:00이며, 특정일에 12:00~17:00에 근로시켰을 경우 16:00~17:00에 해당하는 1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br>○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br>- 월요일~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시업 및 종업시각이 12:00~16:00로 정한 경우 특정 주 목요일에 12:00~16:00로 근로시켰을 경우 4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br>○ 소정근로시간 변경 가능 여부<br>-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됨. 다만, 법정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br>[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추정될 것으로 보임<br/>                     ▲ 취업규칙 등으로 주간 또는 월간 근무표를 작성한 후 일부 근로자와 사이에 특정일에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br/>                     ▲ 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으면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br/>                     ▲ 특별한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횟수가 잦은 경우<br/>                     ▲ 법정 근로시간 내의 초과근로에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사례                 </div> ○ 사업장의 근로자집단별로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 및 특정주 또는 특정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br>-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도 총 소정근로시간 및 특정주 또는 특정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단위기간이 시작된 후 근무편성표를 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 시작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 |                   |                                 |

○ 야간근로수당

| 구분     | 발생 요건              | 계산 방식             | 위반시 처벌                       |
|--------|--------------------|-------------------|------------------------------|
| 야간근로수당 | 22:00~06:00 근무한 경우 | 야간근로시간 × 시급 × 50%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퇴직금(※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발생)

| 구분  | 발생 요건             | 계산 방식                         | 위반시 처벌                       |
|-----|-------------------|-------------------------------|------------------------------|
| 퇴직금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발생)

- 연차휴가

| 구분              | 발생 요건          | 발생 시기       | 발생일수                     | 사용기한            |
|-----------------|----------------|-------------|--------------------------|-----------------|
| 1년 미만 근로자       | 1달 개근 시에 1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달 후 | 1달 개근 때마다 1개씩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근로  | 입사일 기준 1년 후 | 15일(재직 기간 내 최대 26일 발생 可) |                 |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구분   | 발생 요건   | 계산 방식                        | 위반시 처벌                       |         |             |        |           |             |                         |    |                        |
|--|---|------------------------------|------------------------------|---------|-------------|--------|-----------|-------------|-------------------------|----|------------------------|
| 연차휴가수당   |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   | 연차수당<br>=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li> <li>○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 최대 일 수</li> </ul>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계속 근로기간</th> <th>최대 발생가능 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자</td> <td>최대 11개(A)</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최대 26개(B) = 15일 +(A)11일</td> </tr> <tr> <td>2년</td> <td>최대 41일 = 15일 + (B) 26일</td> </tr> </tbody> </table> |                              |                              | 계속 근로기간 | 최대 발생가능 일 수 | 1년 미만자 | 최대 11개(A) | 1년 이상 2년 미만 | 최대 26개(B) = 15일 +(A)11일 | 2년 | 최대 41일 = 15일 + (B) 26일 |
|  | 계속 근로기간   | 최대 발생가능 일 수                  |                              |         |             |        |           |             |                         |    |                        |
| 1년 미만자   | 최대 11개(A)   |                              |                              |         |             |        |           |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최대 26개(B) = 15일 +(A)11일   |                              |                              |         |             |        |           |             |                         |    |                        |
| 2년   | 최대 41일 = 15일 + (B) 26일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확인 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필요</li> <li>○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사일 다음 날 발생</li> <li>-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계속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는 날</li> </ul> </li> </ul> |   |                              |                              |         |             |        |           |             |                         |    |                        |

## 2. 일반수용비(210-01)

### ○ 보조사업 지원심의 사례비

본 지침은 공정심의부-1400(2020.11.04.)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따름

| 구분           | 신청건수 기준    | 심의료 단가                          | 비고   |
|--------------|------------|---------------------------------|--|
| ① 서류 심사      | 1 ~ 30건    | 300,000원                        | 전수검토제 운영 시<br>심의료 단가의 20% 내에서<br>추가지급 가능                           |
|              | 31 ~ 60건   | 500,000원                        |  |
|              | 61 ~ 100건  | 700,000원                        |  |
|              | 101 ~ 200건 | 800,000원                        |  |
|              | 201 ~ 300건 | 900,000원                        |  |
|              | 301 ~ 400건 | 1,000,000원                      |  |
|              | 401 ~ 500건 | 1,100,000원                      |  |
|              | 501건 이상    | 1,200,000원                      |  |
| ② 인터뷰 / PT심사 |            | 200,000원                        | 서류 심사 사례비에서 추가 지급<br>(*단, 서류 심사 없이 실연심사만<br>하는 경우는 1일 300,000원 한도) |
| ③ 실연심사       |            | 200,000원                        |  |
|              |            | (* 단, 건당 100,000원을<br>초과할 수 없음) |  |

- \* 총 심의료는 (①+②+③)의 합계액임
- \* 심의료 외 별도의 거마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여비규정」 별표 8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지급 가능(일비는 지급 불가)
  1. 회의개최장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심의위원이 심의 참여를 위해 이동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운임 지급 (교통비 지급 필요여부 및 이동구간에 대한 확인서 첨부 필요)
  2. 심의에 숙박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에 한하여 지급
- \* 응모작품 원고, 대본, 음악 등의 자료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료를 책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 필요
- \* 심의료 책정 시 행정심의 결격 건수는 서류심의 대상 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위 심의료 단가는 1일 상한 기준에 따른 단가로**, 심의 참여일수가 1일을 초과할 경우 심의건수, 물량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예산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 필요
- \* 심사총평을 작성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총평 작성 사례비 200,000원을 별도 지급할 수 있음

## 2021년도 ○○○○사업 ○차 지원심의 사례비 등 청구 영수증

- 제목 : 20○○년도 ○○○사업 ○○분야 ○차 지원심의  
 □ 일시 : 20○○년 ○○월 ○○일(요일) 00:00~00:00  
 □ 주관부서 : ○○○○○부

위 「20○○년도 ○○○사업 ○○분야 ○차 지원심의」에 참여 하였으며, 관련 건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 등은 관련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 합니다.

20○○년 ○○월 ○○일  
 청구인 명 ○ ○ ○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 이름, 연락처, 소속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br>5년간 보관 |
| 주소             | 원천징수 영수증 발송     |                          |
| 계좌정보           | 대금지급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관련 사례비 지급 및 세무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4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 주민등록번호         | 대금지급 및 세무신고     | 세무 신고 및 과세에 활용<br>5년간 보관 |

-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및 관련 서식 등은 원천징수 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례비 지급시 이를 근거로 주민번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 등 제반비용 청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급기준에 따라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된 비용으로 지급

- 사례비 :                      원  
 ■ 교통비 :                      원 (본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외구간 이동 운임만 지급)  
 - 이동구간 :  왕복  편도 / (출발 도시) \_\_\_\_\_ (도착 도시) \_\_\_\_\_  
 - 이동수단 :  철도  항공  버스  자차이용(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급기준에 따름)  
 ■ 숙박비 :                      원

| 총 지급액 | 고유식별정보<br>(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br>(또는 휴대폰번호) | 주 소<br>(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 계좌정보   | 청구확인<br>(서 명) |  |      |  |      |  |  |
|-------|--------------------|--------------------|-----------------------|--|---------------|--|------|--|------|--|--|
| 원     |                    |                    |                       |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은 행 명</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예금주명</td> <td></td> </tr> <tr> <td>계좌번호</td> <td></td> </tr> </table> | 은 행 명         |  | 예금주명 |  | 계좌번호 |  |  |
| 은 행 명 |                    |                    |                       |  |               |  |      |  |      |  |  |
| 예금주명  |                    |                    |                       |  |               |  |      |  |      |  |  |
| 계좌번호  |                    |                    |                       |  |               |  |      |  |      |  |  |

○ 위원회 회의 사례비

- 회의수당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회의<br>수당 | 전체<br>회의 | 의결회의      | 250,000원 |
|          |          | 보고 및 자문회의 | 150,000원 |
|          | 소위원회 회의  |           | 150,000원 |

- 교통보전수당

| 구 분            |           | 정액 지급단가   | 비 고      |  |
|----------------|-----------|---|----------|--|
| 교통<br>보전<br>수당 | 서울<br>개최시 | 서울·인천·경기  | -        |  |
|                |           | 대전·충청·강원  | 50,000원  |  |
|                |           | 대구·경북·전북  | 70,000원  |  |
|                |           | 부산·울산·경남  | 120,000원 |  |
|                |           | 광주·전남·나주  | 110,000원 |  |
|                |           | 제주  | 190,000원 |  |
|                | 나주<br>개최시 | 강원  | 90,000원  |  |
|                |           | 서울·인천·경기  | 110,000원 |  |
|                |           | 대전·충청   | 50,000원  |  |
|                |           | 전북·전남(광주 제외)  | 40,000원  |  |
|                |           | 부산·울산·대구  | 160,000원 |  |
|                |           | 제주  | 130,000원 |  |
|                |           | KTX 및 왕복항공료 기준<br>* KTX 직통편이 없는 경우 환승요금, 기타 대중운임 기준 |          |  |

- \* 위 교통보전수당의 정액 지급단가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영수증 증빙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 구분 중 '제1호 라'에 따름
- \* 자산운용위원회 등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회의 기구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 지급 기준 준용

○ 용역, 업무위탁 등 업체 선정 제안서평가 심사 사례비

| 구 분                       | 1시간 이하<br>또는 1건 심사 | 2건 이상 심사          |                   |                   |        |
|---------------------------|--------------------|-------------------|-------------------|-------------------|--------|
|                           |                    | 1시간 초과<br>~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br>~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br>~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 온라인 평가,<br>오프라인 서류 평가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오프라인 PT(입찰자<br>제안서 발표) 평가 | 15만원               | 25만원              | 35만원              | 45만원              | 55만원   |

- \* 실지급 금액은 심사 계획 수립시 예상한 소요시간이나 편성금액 기준 한도 내에서 심사 진행 결과 실제 소요된 시간(결과보고에 명시)을 토대로 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산출된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심사 사례비로 함

○ 자문회의 사례비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편집회의  |      | 150,000원 | 별도의 심의료 등이 지급되지 않는 회의에만 적용 |
| 특별좌담회 |      | 150,000원 |                            |
| 자문회의  | 심층자문 | 200,000원 |                            |
|       | 일반자문 | 150,000원 |                            |

-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다만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거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의 경우에는 기획조정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표·시행하는 별도의 단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전문분야 자문 사례비

| 등 급 | 단 위   | 단 가      | 등급 적용기준                                     |
|-----|-------|----------|---|
| A급  | 1건(회) | 500,000원 | 위험관리, 경영컨설팅 등 기관의 중요한 현안 사항과 대책에 대한 진단과 자문  |
| B급  | "     | 300,000원 | 법률, 회계, 세무, 노무 등 전문 직종 분야의 자문               |
| C급  | "     | 100,000원 | 'A'급 및 'B'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의 자문, 현장업무 종사자의 자문 |

< 적용의 예외 사항 >

- \* 지속·반복적 또는 장기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함
- \* 자문을 구하는 분야에 관하여 업계 표준의 지급기준이 공시되어 통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A급의 단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본 지침은 “여비규정 제26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에 따름

-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국내 여비 지급표와 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례비(수당)가 지급되는 경우 일비와 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교통비 지급 필요여부 및 이동구간에 대한 확인서 첨부 필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여비규정 별표7)

| 지급 구분 | 지급 대상자 |   |
|-------|--------|---|
| 제1호   | 가      | 해당사항 없음   |
|       | 나      | 해당사항 없음   |
|       | 다      | 해당사항 없음   |
|       | 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li> <li>■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li> <li>■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li> <li>■ 문예진흥기금사업 외부 심의위원</li> <li>■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li> </ul> |
| 제2호   |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및 대학(교) 조교수 및 전임강사</li> <li>■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중견 간부</li> <li>■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li> <li>■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li> </ul>                                       |
|       |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ul>   |

○ 번역료

본 지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요율표”에 따름

- 문서번역 요율 (\*부가세별도, 난이도, 양, 납기 등에 따라 적용)

[한국어→외국어]

| 구 분 | 언어              | 단가 기준           | 단 가     |
|-----|-----------------|-----------------|---------|
| 1그룹 | 영어              | 한국어 원문 1자(공백포함) | 최저 160원 |
| 2그룹 | 일본어, 중국어        | "               | 최저 100원 |
| 3그룹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               | 최저 180원 |
| 4그룹 |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 "               | 최저 200원 |

[외국어→한국어]

| 구 분 | 언어              | 단가 기준    | 단 가     |
|-----|-----------------|----------|---------|
| 1그룹 | 영어              | 영어 1단어   | 최저 180원 |
| 2그룹 | 일본어             | 일본어 1자   | 최저 100원 |
|     | 중국어             | 중국어 1자   | 최저 100원 |
| 3그룹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각 1단어    | 최저 200원 |
| 4그룹 | 러시아어            | 러시아어 1단어 | 최저 220원 |
|     | 아랍어, 마인어        | 각 1단어    | 최저 240원 |

- 영상·오디오 번역 요율 (\*부가세별도)

[한국어→외국어]

| 구 분 | 언어              | 단가        |
|-----|-----------------|-----------|
| 1그룹 | 영어              | 50,000원/분 |
| 2그룹 | 일본어, 중국어        | 45,000원/분 |
| 3그룹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55,000원/분 |
| 4그룹 |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 60,000원/분 |

[외국어→한국어]

| 구 분 | 언어              | 단가        | 비고                                |
|-----|-----------------|-----------|-----------------------------------|
| 1그룹 | 영어              | 40,000원/분 | 전사(transcription)<br>비용 10,000원/분 |
| 2그룹 | 일본어, 중국어        | 35,000원/분 |                                   |
| 3그룹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45,000원/분 |                                   |
| 4그룹 |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 50,000원/분 |                                   |

- ① 원문의 난이도, 분야, 시급성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② 긴급(당일) 번역의 경우 최대 50% 가산 / 급행 번역의 경우 최대 30% 가산할 수 있음
- ③ 도착어 원어민 감수 비용이 포함된 요율

○ 통역료

- 언어별 통역 요율 \*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본 지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역요율표”에 따름

| 구 분   |              | 단가 기준 및 금액 |          |   |
|---|--------------|------------|----------|---|
|   |              | 1시간까지      | 6시간까지    | 6시간 초과시   |
| 영어, 아랍어, 독일어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500,000원   | 8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아랍어 : 150,000원/시간</li> <li>▪ 독일어 : 100,000원/시간</li> </ul> |
|   | 졸업 후 3년까지 경력 | 600,000원   | 900,000원 |   |
| 일본어, 중국어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600,000원   | 700,000원 | 100,000원/시간   |
|   | 졸업 후 3년까지 경력 | 700,000원   | 800,000원 |   |
|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역료 (마인어는 동시통역 불가) |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 600,000원   | 800,000원 | 100,000원/시간   |
|   | 졸업 후 3년까지 경력 | 700,000원   | 900,000원 |   |

- \* 위 기준을 참고하여 회의의 성격, 경력, 난이도, 예산상황 등 고려하여 책정
- \* 전문 통역사(통역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원격지 통역을 위하여 통역자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규정」 별표 8에 따른 운임, 숙박비 지급 가능(일비, 식비는 지급 불가)
- \* 필요시 사전에 기획조정부장과 협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역요율표 상의 ‘이동시간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안내통역료

| 구 분          |       | 단 가          |                |
|--------------|-------|--------------|----------------|
|              |       | 4시간 까지       | 4시간 초과시        |
| 해외 기관방문 (출장) | 기관 교류 | USD 200\$ 이내 | USD 50\$ 이내/시간 |
|              | 실무 협의 | USD 300\$ 이내 | USD 75\$ 이내/시간 |
| 외국 인사 국내 초청  |       | 300,000원 이내  | 50,000원 이내/시간  |

- \* 해외 출장 시 단순 가이드 성격의 안내통역 경비 집행은 최대한 지양하고 기관 간 교류 협력 등 업무 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통역자를 사용하되 공식일정을 기준으로 1일 최고 USD 4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특수 목적을 띤 중요 사업 출장 시 영어를 상용어로 하지 않는 국가로서 현지통역 가능인의 희소가치로 인해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1일 최고 USD 45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 안내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안내 사례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없음

○ 조사분석 사례비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일반    | A급 | 45,000원 | A4 1장 기준(30행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 · 2.5cm, 좌우여백 2cm) |
|       | B급 | 40,000원 |   |
|       | C급 | 35,000원 |   |
| 특별 기획 |    | 적정가 적용  | 재무관리부와 사전협의   |

< 적용 대상 >

- 조사·연구분석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수료로서, 용역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기적인 조사 분석 업무에 적용
- 원고료·자문료 등 사례비 미지급 시 편성 가능

< 등급 적용기준 >

- A급 :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제시
- B급 :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 C급 : 단순 자료 조사 및 정리

○ 집필고료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국문  | 일반    | 8,000원  | 200자 원고지 1장 기준  |
|     | 특별/취재 | 10,000원 |   |
| 외국어 |       | 50,000원 | A4 1장 기준(30행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 · 2.5cm, 좌우여백 2cm) |

○ 교정료 및 윤문 감수료

| 구분    | 단가 기준 |  | 단 가    |
|-------|-------|--|--------|
| 교정    | 국문    | 국판(A5), 신국판, 크라운판, 46배 판(B5)           | 800원   |
|       |       | 국배 판(A4)                               | 1,000원 |
|       | 외국어   | 국판(A5), 신국판, 크라운판, 46배 판(B5)           | 1,600원 |
|       |       | 국배 판(A4)                               | 2,000원 |
| 윤문 감수 | 국문    | 국판(A5), 신국판, 크라운판, 46배 판(B5), 국배 판(A4) | 2,000원 |
|       | 외국어   | 국판(A5), 신국판, 크라운판, 46배 판(B5), 국배 판(A4) | 4,000원 |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 · 2.5cm, 좌우여백 2cm의 각 1면 기준

\* 교정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인정

○ 세미나·심포지엄 등 사례비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주제발표자,<br>사회자 | A급 | 5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비 지급 시 원고료 이중 편성은 불가</li> <li>▪ 원격지 거주자의 초청이 필요한 경우 「여비 규정」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운임, 숙박비 별도 지급 가능(일비, 식비는 지급 불가)</li> </ul> |
|               | B급 | 400,000원 |  |
|               | C급 | 300,000원 |  |
| 지정토론자         | A급 | 250,000원 |  |
|               | B급 | 200,000원 |  |
|               | C급 | 150,000원 |  |
| 회의 내용 정리·기록   |    | 2,000원/장 | 200자 원고지 1장 기준   |

< 등급 적용기준 >

▪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경력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
-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댓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의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

○ 강좌·강사료

| 구 분   |    | 단 위 | 지 급 단 가     |                |
|-------|----|-----|-------------|----------------|
| 특별강의  | A급 | 1시간 | 600,000원 이내 | 초과시간당 300,000원 |
|       | B급 | "   | 400,000원 이내 | 초과시간당 200,000원 |
| 일반강의  | A급 | 1시간 | 300,000원 이내 | 초과시간당 150,000원 |
|       | B급 | "   | 200,000원 이내 | 초과시간당 100,000원 |
|       | C급 | "   | 100,000원    | 초과시간당 100,000원 |
| 현장 지도 |    | "   | 70,000원     | 초과시간당 70,000원  |
| 실습 보조 |    | "   | 50,000원     | 초과시간당 50,000원  |

< 시간 적용기준 >

- 1시간 이하 : 1시간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시간

\* 특정인이 정기 또는 다수 시간을 강의할 경우, 별도 계획 및 기준에 의거 책정

< 등급 적용기준 >

- 특별강의
  - A급 : 해당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
  - B급
    - 전·현직 대학교 총장, 부총장, 학장, 장·차관
    - 저명 문화예술인, 인간문화재
    - 대기업 CEO
- 일반강의 : 「세미나·심포지엄 등 사례비」의 적용기준과 동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댓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의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속기 사례비

| 구 분        | 단 가                 | 비 고                               |
|------------|---------------------|-----------------------------------|
| 1시간 미만     | 200,000원            | 속기사 자격증(국가 및 협회 자격증)<br>2급 이상 소지자 |
| 1시간        | 350,000원            |                                   |
| 1시간 초과~2시간 | 600,000원            |                                   |
| 2시간 초과     | 초과 1시간당 200,000원 이하 |                                   |

○ 영상 촬영·제작비

| 구 분        | 단 가                 | 비 고  |
|------------|---------------------|--|
| 1시간 미만     | 3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 1대, 1인 촬영 기준</li> <li>▪ 자체수행 또는 지원사업에 영상물 제작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 홍보 등 전문 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는 전문업체와의 계약에 의함</li> </ul> |
| 1시간        | 400,000원            |  |
| 1시간 초과~2시간 | 700,000원            |  |
| 2시간 초과     | 초과 1시간당 200,000원 이하 |  |

○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사례비

| 구분      |                 | 단가       |
|---------|-----------------|----------|
| 서울 개최 시 | 서울·경기·인천 거주자    | 50,000원  |
|         | 그 외 지역 거주자      | 100,000원 |
| 나주 개최 시 | 광주·전북·전남 지역 거주자 | 50,000원  |
|         | 그 외 지역 거주자      | 100,000원 |

### 3. 국내여비(220-01)

본 지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비규정” 및 “2021년 출장시행지침”에 따름

#### ○ 여비 지급 기준

- 주 근무지 외 지역으로 이동, 복귀 시에는 출장지~주 근무지 간 이동 비용에 한하여 여비 지급
- (철도·선박·항공·버스 이용) 일반실·2등급·이코노미석 실비 지급

|                 |                                   |
|-----------------|-----------------------------------|
| <b>버스 이용</b>    | 해당 탑승구간의 KTX 일반실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      |
| <b>항공편 이용</b>   | 제주 외 국내선 탑승 시 KTX 일반실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 |
| <b>철도 특실 이용</b> | <u>탑승구간</u> 의 일반실 기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 <b>마일리지 사용</b>  | 마일리지 사용분 여비 <b>지급 불가</b>          |

- (자차 이용) 이용 목적에 따라 여비 지급

|                         |  |
|-------------------------|--|
| <b>출장자 편의에 따른 자차 이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교통비</b> : 해당 구간의 철도 또는 버스운임 정액 지급</li> <li>② <b>증빙서류</b> : <u>출장 당일에 이용한</u> 통행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서류 혹은 기타 출장을 입증할 자료 등</li> </ul>   |
| <b>업무상 사유에 따른 자차 이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교통비</b> : 거리산출 후 연료비는 정액, 기타비용은 실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 : 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를 산출한 후 연료에 따른 단가를 곱하여 산출(이동거리×*단가)한 금액 정액 지<br/>(* 휘발유차량 : 200원, 경유차량 : 180원, LPG차량 : 130원)<br/>(**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경우 LPG차량 단가 적용)</li> </ul> </li> <li>· 기타 : 통행료, 주차비, 도선료 등 영수증 표시 금액 실비 지급</li> <li>② <b>증빙서류</b> : <u>출장 당일에 이용한 증빙자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 : 포털사이트 거리산출 1부 및 통행영수증,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서류 혹은 기타 출장을 입증할 자료 등</li> <li>· 기타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도선료 등 기타 집행증빙 영수증</li> </ul> </li> <li>③ <b>업무상 사유 기재 필수</b></li> </ul> |

- (숙박비) 출장지가 아닌 곳에서의 숙박 인정 불가(단, 숙박이 여의치 않은 지역일 경우, 결재문서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하여 숙박)

#### ○ 업무용 차량 이용

- (일비 지급) 관용차량, 렌트카, 택시 이용 시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여비규정」 제14조 ③에 따름)
- (차량 임차) 업무용 차량 임차는 여비가 아닌 임차료로 예산 집행(임차료 없을 시 일반수용비)하되 사전 기안하여 관련근거 확보 필수(차량임차 시 연료비를 포함하여 임차료로 예산 집행 권장)  
(\* 렌트카 이용에 따른 연료비(차종 무관), 통행료, 주차비, 도선료 등은 실비 지급)

- (업무용 택시) 산간오지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한 곳에서 부득이 택시를 타야 할 경우, 사전 기안하여 관련 근거 확보 필수(여비로 집행 불가)  
(\*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되 복명서와 영수증 첨부하여 결의)

**○ 집행증빙영수증**

- (교통비) 출장일 이후 출력한 영수증만 인정
- (숙박비) 숙박업소가 숙박 당일 직접 발행한 영수증 또는 숙박내역서(바우처, 인보이스, 예약확인서 등)
- 사전 예약 및 결제로 인해 결제일과 이용일이 상이한 영수증 또는 결제대행사(카카오페이 NHN사이버결제주식회사 등) 매출전표로 증빙 시 이용일 확인 가능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수

**○ 국내여비 항목별 단가**

| 구분  | 지급내용  | 비 고   |
|-----|---|---|
| 일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원/1일<br/>* 서울지역 및 위원회 운영시설 출장</li> <li>○ 20,000원/1일<br/>* 서울 외 지역 및 위원회 운영시설 외 출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소재 기관 시설(예술가의집,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등)의 연속적인 출장 시 여행일수에 관계없이 일비 10,000원만 지급(단,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제외)</li> <li>* 서로 다른 기관 시설로 이동하며 연속 출장 시에도 여행일수와 관계없이 일비 10,000원 지급(단,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제외)</li> <li>* 수도권 소재 기관 시설 소재지(동송동, 예술의 전당) 연속 출장 시에도 여행일수에 관계없이 일비 10,000원 지급</li> <li>○ 수도권 소재 시설에서 나주 본관으로 출장 시 여행일수 관계없이 일비 10,000원만 지급</li> <li>○ 나주 본관에서 나주 및 광주 지역으로 출장은 일비 10,000원 지급(나주혁신도시 내 출장은 일비 미지급)</li> </ul> |
| 식비  | 미지급   | 전년 동  |
| 운임  | 실비지급  | 전년 동  |
| 숙박비 | 실비지급<br>(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1박)   | 출장지가 아닌 지역에서 숙박 불가<br>(단, 숙박이 여의치 않은 지역일 경우, 출장명령 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받은 후 숙박)  |

**○ 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위한 출장**

- 타 기관 개최 교통 또는 숙박 편의를 제공 받는 경우, 출장 지역에 상관없이 1일당 일비 1만원 지급(기관 내부 개최 건 참여 시에는 일비 지급 불가)

**○ 출장자 편의에 따른 사전이동 및 사후복귀**

- 출장자 편의에 따른 사전/사후이동 일정은 출장일에 포함하지 않으며, 일비 추가 불가
- 출장업무로 인한 이동은 당일이동이 원칙이되, 출장자 편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전일 또는 익일에 이동할 수 있음

\* 단, 출장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나주 간 셔틀버스 운행으로 일요일 복귀 교통비 지급 불가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차이동 및 셔틀버스 운행시간 이후 이동에 한해서 교통비 지급

- 공휴일을 포함한 전전일, 익익일 이동 가능

(\* 일요일·개인휴가에 따른 전전일, 익익일 이동 불가)

#### ○ 출장종료 후 심야시간 복귀자에 대한 익일 출근시간 조정

- 출장일정으로 인한 복귀시간이 심야시간(22시 이후)일 경우 익일 출근시간 11시로 조정 가능(\* 개인 유연근무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시간은 11시로 동일)

- 부서 별로 익일 출근시간 조정 내용을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분기 별로 인재성장부에 제출, 추후 복무감사 등 대비를 위해 출장명령·복명서에 시간대별 출장일정 명확하게 기재 및 심야복귀 증빙자료 필수 첨부 요망

- 공식적인 업무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심야시간 복귀의 경우에 한하며, 개인일정 및 차표 매진 등에 따른 복귀 지연은 불인정

#### 4. 국외여비(220-02)

##### ○ 국외여비 지급 기준

- (교통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등 현지 교통비
- (숙박비, 식비, 일비) 「여비규정」 별표3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
- (준비금) 여행자보험료, 단수여권 및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국외출장 사전 준비 비용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타 예산과목 집행 지양)  
(\*\* 단, 로밍비용은 공공요금및제세로 집행)

##### ○ 국외출장 전 국내이동

- 국외출장명령서 외 국내출장명령서 별도 상신
- 공항 이동을 위한 출장일 전후의 단순 이동 일정에 대해서는 일비 지급하지 않음

## 5. 업무추진비(240)

### < 공통지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및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 (4) 업무를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불가피한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 및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법인카드 관리 지침」에 따른다.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2개 부서 이상이 공동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에 따른 연회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서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 지원 경비 지급한도

(1국 1회 기준, 단위 : US \$)

| 구 분            | 기관 교류                             | 업무 협의 | 참관·시찰 |
|----------------|-----------------------------------|-------|-------|
| ▪ 연회비(宴會費)·선물비 | 1,000                             | 500   | 200   |
| ▪ 부대경비         | 1일 100\$, 최장 10일 범위 내 사전협의를 통해 계상 |       |       |

- 행사참가비를 별도로 납부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 동시에 여러 국가 또는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지는 제외).
-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주관부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서별 부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대경비는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식비, 일비 이외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부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식 업무일정이 있는 날(최장 10일)에 대하여 1일당 USD 10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업무협이나 유관기관 간담회비 명목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세미나 및 기타 해외행사의 단순 참가 시에는 별도의 부대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

○ 회의진행비

- 내·외부 참석자 1인 당 5,000원 이내 / 최대 10만원 이하

- \*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간담회비 외 회의진행비 별도 편성·집행 불가

○ 간담회비

| 구 분   |      | 단 가      | 비 고     |
|-------|------|----------|---------|
| 국내 개최 | VIP  | 30,000원  | 단체장급 인사 |
|       | 주요인사 | 25,000원  |         |
|       | 일반인사 | 20,000원  |         |
| 해외 개최 | VIP  | USD41~50 | 단체장급 인사 |
|       | 일반인사 | USD25~40 |         |

## 6. 일반연구비(260-01)

본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름

### 가. 적용대상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정책연구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비목별 단가 계상
- 지침 적용 예외 정책연구용역
  - 매년 정기적·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사업개편, 평가,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용역
  -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용역
- 정책연구용역 운용 시 부서별 업무분장
  - (정책혁신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가 후보군 관리, 정책연구용역 품질관리, 비용지급, 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 (연구용역 수요부서) 연구관리전담자 지정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관리 (과정 및 결과물 평가, 연구비 정산, 활용·확산)
    - 연구관리 전담자의 역할 :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절차 추진
  - (재무관리부)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계약체결

### 나. 비목별 지침

- 인건비('21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기준)
  -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구분    | 정의  | 월 임금         |
|-------|---|--------------|
| 책임연구원 | ·정책연구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br>·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월 3,245,879원 |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월 2,488,897원 |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조교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월 1,663,743원 |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월 1,247,850원 |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경비

- 계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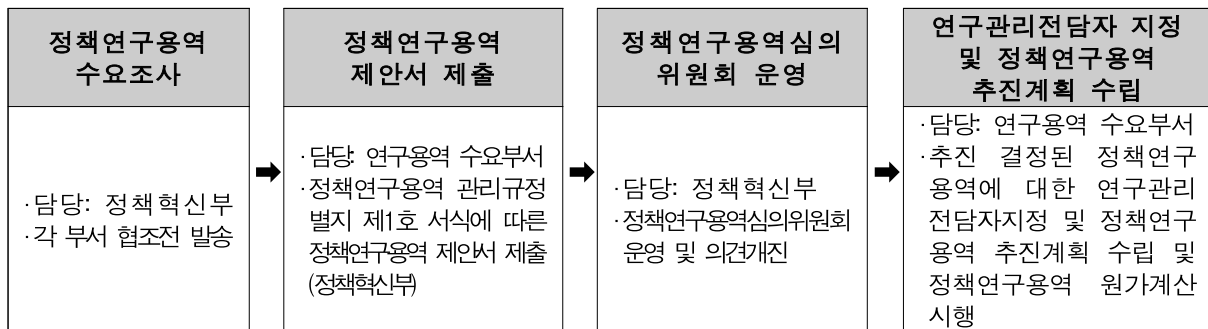
| 비목    |      | 기준   |
|-------|------|--|
| 여비    | 국내여비 |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 초과 불가<br>·책임연구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기준표) 제1호 등급 기준 지급<br>·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기준표) 제2호 등급 기준 지급 |
|       |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 4 기준 지급  |
| 유인물비  |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 전산처리비 |      |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 회의비   |      |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br>·참석자의 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
| 임차료   |      | ·연구내용에 따라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 교통통신비 |      | ·정책연구용역의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일반관리비 및 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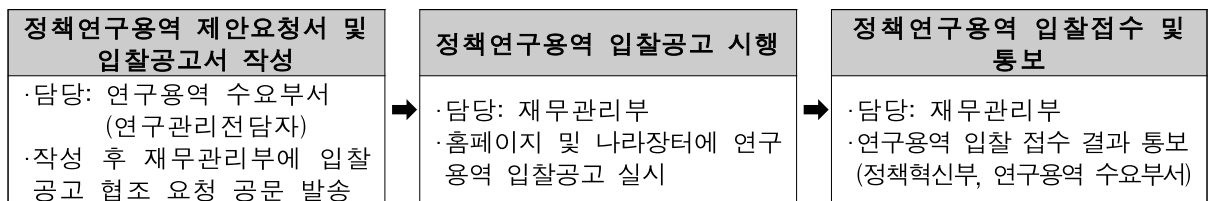
-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6으로 계상
-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해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상

<참고> 정책연구용역 운영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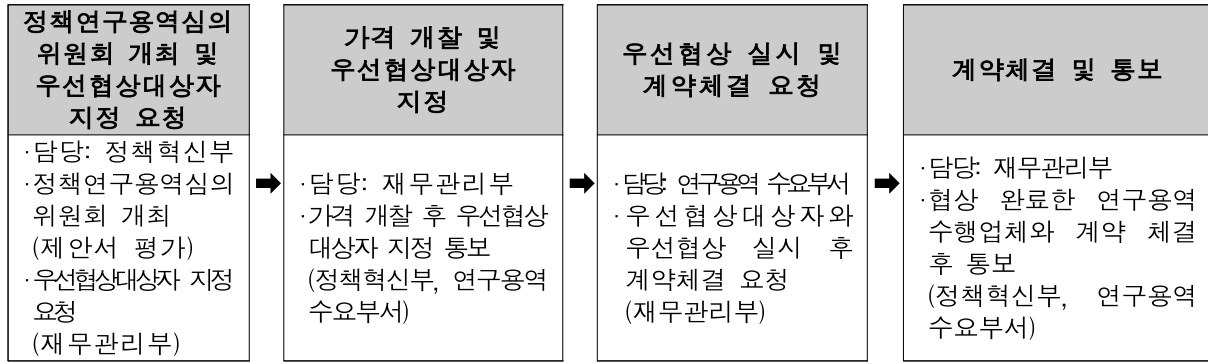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 수요조사



○ 정책연구용역 입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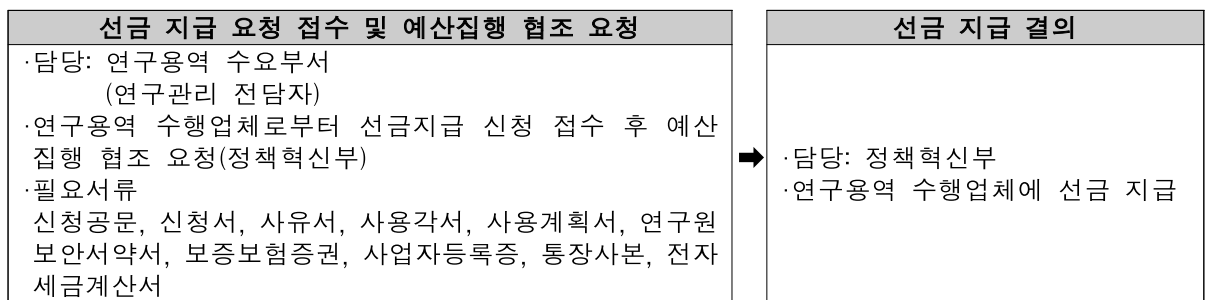


○ 정책연구용역 수행 업체 선정 및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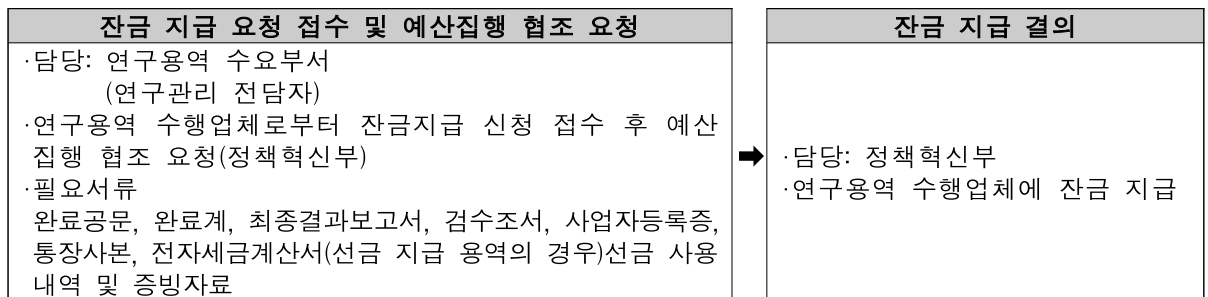


○ 연구용역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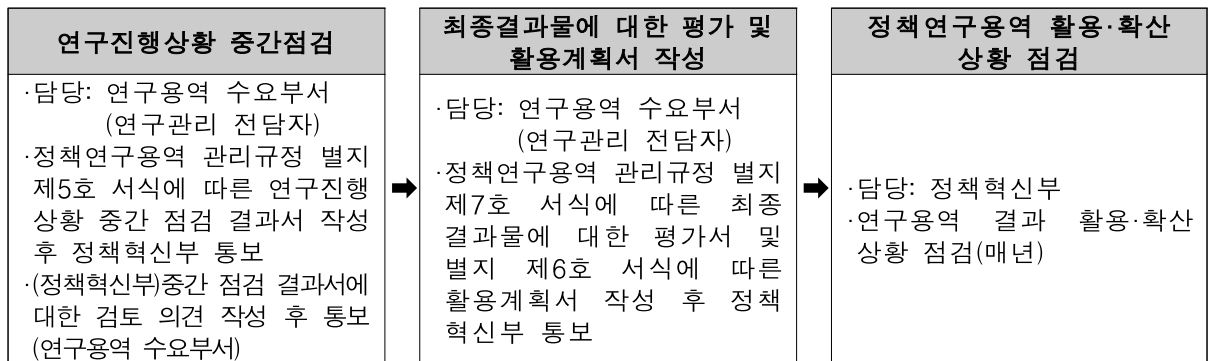
- 선금 지급 시



- 잔금 지급 시



○ 정책연구용역 품질관리, 활용·확산 추진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침



## 가. 항목의 구분 (국가재정법 제67조 제3항)

수입계획 : 성질별 구분 / 관, 항, 목

지출계획 :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 주요항목 :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

○ 세부항목 :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목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 항목 구분표(2021년)

| 주요항목                    |                       |   | 세부항목                      |                        |                           |
|-------------------------|-----------------------|---|---------------------------|------------------------|---------------------------|
| 장<br>(분야)               | 관<br>(부문)             | 항<br>(프로그램)                             | 세항<br>(단위사업)              | 세세항<br>(세부사업)          | 목                         |
| 문화<br>및<br>관광<br>(060)  | 문화예술<br>(061)         | 예술의<br>창작역량 및<br>사회적 가치<br>제고<br>(1700) | 예술창작역량강화<br>(1761)        | 예술창작지원<br>(300)        | 인건비(110) ~<br>용자금(450)    |
|                         |                       |   |                           | 예술인력육성<br>(301)        |                           |
|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br>(305) |                           |
|                         |                       |   | 지역문화예술진흥<br>(1764)        | 지역문화예술지원<br>(300)      | 운영비(210) ~<br>자치단체이전(330) |
|                         |                       |   |                           | 예술의관광자원화<br>(301)      |                           |
|                         |                       |   | 예술향유기회확대<br>(1765)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br>(300)    | 인건비(110) ~<br>유형자산(430)   |
|                         | 문화예술향유지원<br>(301)     |   |                           |                        |                           |
|                         | 기금간거래<br>(8900)       | 복권기금반환금<br>(8999)                       | 복권기금 진출(반환금)<br>(840)     | 전출금등(610)              |                           |
|                         | 문화 및<br>관광일반<br>(065) | 기금운영비<br>(7200)                         | 문화예술진흥기금<br>운영비<br>(7276) | 인건비<br>(100)           | 인건비(110) ~<br>유형자산(430)   |
|                         |                       |   |                           | 기관운영비(문예)<br>(200)     |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br>(201)     |                       |   |                           |                        |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br>(500) |                       |   |                           |                        |                           |
| 여유자금운용<br>(9700)        | 통화금융기관예치<br>(9701)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br>통화금융기관으로의<br>예치금(9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br>매입(470)     |                        |                           |

## 나. 제출대상의 구분 (국가재정법 제70조 제2항, 제3항)

### □ 국회제출 대상

-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0% 초과 변경
  - \* 문예기금은 금융성 외의 기금에 해당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 <국회제출 대상 변경 절차>

- ① 내부검토
  - 변경내용 시행 3개월 전까지 기획조정부에 검토 요청(시한 촉박 변경 불가)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별표 4 타당성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② 사전협의(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 ③ 내부결재(위원장 결재, 변경 사유·개요·각목명세서 변동 내역 필수 기재)
- ④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⑤ 내부 협조건 통보(수신 : 기획조정부장)
  - \* 여러 부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변경 소요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부검토 단계에서 협조건을 받아 기획조정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⑥ 변경 협의요청 공문 발송(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조정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⑦ 국회 제출 및 심의·의결 → 변경 승인
- ⑧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통보 및 시행
- 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내 변경내용 입력
- ⑩ 변경명세서 공문 발송(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 □ 국회제출 비대상

-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변경
-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변경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초과 변경이라도 국회제출 비대상인 경우
  -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등

## 다. 국회제출 비대상 변경 절차

###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변경

#### ○ 협의 대상 항목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 변경의 경우
  - 기금운영비
  -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1700)
  -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의 재원으로 다른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다만,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간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한다.
-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의 경우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설(세항, 세세항 및 세세항 내에서의 내역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 융자성 지출의 축소분을 재원으로 의무적 지출이 아닌 다른 사업(경상·자본·융자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위 사항 외에는 기금관리주체 자체변경 원칙

#### <기재부 협의변경 절차>

##### ① 내부검토

- 변경내용 시행 3개월 전까지 기획조정부에 검토 요청(시한 촉박 변경 불가)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별표 4 타당성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② 사전협의(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 ③ 내부결재(위원장 결재, 변경 사유·개요·각목명세서 변동 내역 필수 기재)

##### ④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⑤ 내부 협조건 통보(수신 : 기획조정부장)

- \* 여러 부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변경 소요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부검토 단계에서 협조건을 받아 기획조정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⑥ 변경 협의요청 공문 발송(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조정 → 변경 승인

##### ⑦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통보 및 시행

##### ⑧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내 변경내용 입력

##### ⑨ 변경명세서 공문 발송(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 □ 자체 변경

### ○ 자체 변경 가능 범위

-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각 호 내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아래 가)~라) 호는 상호간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마)호는 상호간 자체전용 허용

#### 가) 인건비(100목)

- 타 비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나) 물건비(200목)

- 타 비목에서 복리후생비(210-12목), 특수활동비(230목), 업무추진비(240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210-08목)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다) 이전지출(300목)

-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 일반 출연금(350목),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해외자본이전(340-03목), 연구개발 건축비(360-03목),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 연구개발 활동비 등(360-05목)은 자체전용을 허용하고, 고용부담금(320-09목)은 인건비(110목)로 부터의 자체전용을 허용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 라) 자산취득(400목)

- 건설비(420목), 지분취득비(490목)는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만, 공사비(420-03목), 감리비(420-04목)은 자체전용을 허용
- 건설보상비(410목), 공사비(420-03목), 감리비(420-04목)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마)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 상환지출(500목), 전출금 등(600목), 반환금및손실금(710-03목), 차기이월금(710-04목)

- 2021년도 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있는 사항은 동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

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자체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체전용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 <자체 변경 절차>

#### < 비목(세목) 지출금액 변경의 경우 >

- ① 내부검토
  - 변경내용 시행 2개월 전까지 기획조정부에 검토 요청(시한 촉박 변경 불가)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별표 4 타당성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② 내부결재(위원장 결재, 변경 사유·개요·각목명세서 내역 필수 기재) → 변경 승인
-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협조전 통보(수신 : 기획조정부장)
  - \* 여러 부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변경 소요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부검토 단계에서 협조전을 받아 기획조정부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행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내 변경내용 입력
- ⑤ 변경명세서 공문 발송(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 < 비목(세목) 지출금액 무변경의 경우 >

##### ※ 적용대상

- 세세항(세부사업)내에서 내역사업 간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세부사업의 각 비목 금액에 대한 변경 없이 비목 내에서 내역사업 간에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민간보조, 지자체보조)에 대하여는 지원심의 및 결정 등 지원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 완료 후 내역사업 간 전용 가능

- ① 내부검토
  - 변경내용 시행 1개월 전까지 기획조정부에 검토 요청(시한 촉박 변경 불가)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의 별표 4 타당성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② 내부결재(위원장 결재, 변경 사유·개요·각목명세서 내역 필수 기재) → 변경 승인
- 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협조전 통보(수신 : 기획조정부장)
-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행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내 변경내용 입력

※ 비목별 자체 변경 가능 여부 현황표

| 구 분           | 목(23개) |                | 자체전용대상   | 자체전용제외<br>(기획재정부 협의)   |
|---------------|--------|----------------|--|--|
| 100<br>(인건비)  | 110    | (인건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 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li> </ul>   |
| 200<br>(물건비)  | 210    | (운영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li> <li>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li> </ul> |
|               | 220    | (여비)           |  |  |
|               | 230    | (특수활동비)        |  |  |
|               | 240    | (업무추진비)        |  |  |
|               | 250    | (직무수행경비)       |  |  |
|               | 260    | (연구용역비)        |  |  |
| 300<br>(이전지출) | 310    | (보전금)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0목, 330목, 340목, 35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li> <li>-단, 320-03목(연금지급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전용 허용, 340-03목(해외자본이전)은 자체전용 허용</li> </ul>           |
|               | 320    | (민간이전)         |  |  |
|               | 330    | (자치단체이전)       |  |  |
|               | 340    | (해외이전)         |  |  |
|               | 350    | (출연금)          |  |  |
|               | 360    | (연구개발출연금)      |  |  |
| 400<br>(자산취득) | 410    | (건설보상비)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20-01목(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실시설계비), 420-05목(시설부대비), 490목(지분취득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li> </ul>   |
|               | 420    | (건설비)          |  |  |
|               | 430    | (유형자산)         |  |  |
|               | 440    | (무형자산)         |  |  |
|               | 450    | (융자금)          |  |  |
|               | 460    | (출자금 등)        |  |  |
|               | 4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  |  |
|               | 480    | (예탁금)          |  |  |
|               | 490    | (지분취득비)        |  |  |
|               |        |                |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  |
|               |        |                | * 410목(건설보상비), 420-03목(공사비), 420-04목(감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500<br>(상환지출)     | 510 | (상환지출)     |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10-01목(예비비), 710-02목(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li> </ul> |
| 600<br>(전출금 등)    | 610 | (전출금 등)    |             |   |
| 700<br>(예비비 및 기타) | 710 | (예비비 및 기타) |             |   |



6

2021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예산 현황



## 가.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2020년 당초<br>(A) | 2021년 계획<br>(B) | 증 감            |             |
|---------------------------------|---------------------------------|-----------------|-----------------|----------------|-------------|
|                                 |                                 |                 |                 | (B-A)          | %           |
| 수<br>입                          | <input type="checkbox"/> 자체수입   | 66,079          | 66,213          | 134            | 0.2         |
|                                 | ○ 건물대여료                         | 1,175           | 1,175           | -              | -           |
|                                 | ○ 기타재산수입                        | 4,500           | 4,500           |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5,982          | 36,645          | 663            | 1.8         |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292           | 7,498           | 1,206          | 19.2        |
|                                 | ○ 기타영업외잡수입                      | 18,130          | 16,395          | △1,735         | 9.6         |
|                                 | <input type="checkbox"/> 정부내부수입 | 293,324         | 267,464         | △25,860        | △8.8        |
|                                 | ○ 일반회계전입금                       | 21,000          | 20,370          | △630           | △3.0        |
|                                 | ○ 기금전입금                         | 272,324         | 247,094         | △25,230        | △9.3        |
|                                 |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회수 | 184,507         | 190,225         | 5,718          | 3.1         |
| <b>합 계</b>                      |                                 | <b>543,910</b>  | <b>523,902</b>  | <b>△20,008</b> | <b>△3.7</b> |
| 지<br>출                          | <input type="checkbox"/> 사 업 비  | 267,795         | 301,494         | 33,699         | 12.6        |
|                                 | ○ 예술창작지원                        | 45,548          | 48,186          | 2,638          | 5.8         |
|                                 | ○ 예술인력육성                        | 14,540          | 21,672          | 7,132          | 49.1        |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19,000          | 24,000          | 5,000          | 26.3        |
|                                 | ○ 지역문화예술지원                      | 10,457          | 9,957           | △500           | △4.8        |
|                                 | ○ 예술의관광자원화                      | 11,070          | 8,862           | △2,208         | △19.9       |
|                                 |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23,877          | 21,694          | △2,183         | △9.1        |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143,303         | 167,123         | 23,820         | 16.6        |
|                                 |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영비  | 21,487          | 21,565          | 78             | 0.4         |
|                                 | ○ 인건비                           | 11,978          | 12,124          | 146            | 1.2         |
| ○ 기타운영비                         | 9,509                           | 9,441           | △68             | △0.7           |             |
| <input type="checkbox"/> 정부내부지출 | 5,000                           | 7,800           | 2,800           | 56.0           |             |
|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운동 | 249,628                         | 193,043         | △56,585         | △22.7          |             |

## 나.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 2021년          |                |                | 증 감            |             |
|---------------------------|----------------|----------------|----------------|----------------|----------------|----------------|-------------|
|                           | 당초(A)          | 수정             | 부처안            | 정부안            | 확정(B)          | (B-A)          | %           |
| <b>총 계</b>                | <b>543,910</b> | <b>543,910</b> | <b>525,338</b> | <b>495,883</b> | <b>523,902</b> | <b>△20,008</b> | <b>△3.7</b> |
| □ 자체수입                    | 66,079         | 66,079         | 63,123         | 66,213         | 66,213         | 134            | 0.2         |
| ○ 관유물대여료                  | 1,175          | 1,175          | 1,175          | 1,175          | 1,175          | -              | -           |
| - 건물대여료                   | 1,175          | 1,175          | 1,175          | 1,175          | 1,175          | -              | -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              | -           |
| - 기타재산수입<br>(적립금이자수입)     | 4,500          | 4,500          | 4,500          | 4,500          | 4,500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35,982         | 35,982         | 33,807         | 36,645         | 36,645         | 663            | 1.8         |
| - 민간출연금(기부금)              | 25,504         | 25,504         | 23,329         | 26,167         | 26,167         | 663            | 2.6         |
| - 기타경상이전수입<br>(기금집행잔액반납금) | 10,478         | 10,478         | 10,478         | 10,478         | 10,478         | -              | -           |
| ○ 입장료수입                   | 6,244          | 6,244          | 6,244          | 6,244          | 6,244          | -              | -           |
| - 입장료수입<br>(골프장운영이익금 등)   | 6,244          | 6,244          | 6,244          | 6,244          | 6,244          | -              | -           |
| ○ 잡수입                     | 18,178         | 18,178         | 17,397         | 17,649         | 17,649         | △529           | △2.9        |
| - 기타잡수입<br>(간행물판매수입금 등)   | 48             | 48             | 1,002          | 1,254          | 1,254          | 1,206          | 2,512.5     |
| - 기타영업외잡수입<br>(경륜경정수익금)   | 18,130         | 18,130         | 16,395         | 16,395         | 16,395         | △1,735         | △9.6        |
| □ 정부내부수입                  | 293,324        | 293,324        | 271,990        | 239,445        | 267,464        | △25,860        | △8.8        |
| ○ 전입금                     | 293,324        | 293,324        | 271,990        | 239,445        | 267,464        | △25,860        | △8.8        |
| - 일반회계전입금                 | 21,000         | 21,000         | 20,370         | 20,370         | 20,370         | △630           | △3.0        |
| - 기금전입금                   | 272,324        | 272,324        | 251,620        | 219,075        | 247,094        | △25,230        | △9.3        |
| · 복권기금전입금                 | 122,324        | 122,324        | 154,620        | 122,075        | 150,094        | 27,770         | 22.7        |
| · 체육기금전입금                 | 100,000        | 100,000        | 97,000         | 97,000         | 97,000         | △3,000         | △3.0        |
| · 관광기금전입금                 | 50,000         | 50,000         | -              | -              | -              | △50,000        | △100.0      |
| □ 여유자금회수                  | 184,507        | 184,507        | 190,225        | 190,225        | 190,225        | 5,718          | 3.1         |
| ○ 정부예금회수                  | 184,507        | 184,507        | 190,225        | 190,225        | 190,225        | 5,718          | 3.1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84,507        | 184,507        | 190,225        | 190,225        | 190,225        | 5,718          | 3.1         |

## 다.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0년          |                | 2021년          |                |                | 증 감            |             |
|---------------------------------------|----------------|----------------|----------------|----------------|----------------|----------------|-------------|
|                                       | 당초(A)          | 수정             | 부처안            | 정부안            | 확정(B)          | (B-A)          | %           |
| <b>총 계</b>                            | <b>543,910</b> | <b>543,910</b> | <b>525,338</b> | <b>495,883</b> | <b>523,902</b> | <b>△20,008</b> | <b>△3.7</b> |
|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 267,795        | 310,279        | 312,214        | 294,634        | 301,494        | 33,699         | 12.6        |
| <input type="checkbox"/> 예술창작역량강화     | 79,088         | 94,258         | 99,001         | 86,998         | 93,858         | 14,770         | 18.7        |
| - 예술창작지원                              | 45,548         | 60,718         | 49,496         | 46,786         | 48,186         | 2,638          | 5.8         |
| - 예술인력육성                              | 14,540         | 14,540         | 25,005         | 21,212         | 21,672         | 7,132          | 49.1        |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19,000         | 19,000         | 24,500         | 19,000         | 24,000         | 5,000          | 26.3        |
|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예술진흥     | 21,527         | 21,527         | 19,514         | 18,819         | 18,819         | △2,708         | △12.6       |
| - 지역문화예술지원                            | 10,457         | 10,457         | 9,957          | 9,957          | 9,957          | △500           | △4.8        |
| - 예술의관광자원화                            | 11,070         | 11,070         | 9,557          | 8,862          | 8,862          | △2,208         | △19.9       |
| <input type="checkbox"/> 예술향유기회확대     | 167,180        | 194,494        | 193,699        | 188,817        | 188,817        | 21,637         | 12.9        |
|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23,877         | 27,211         | 22,550         | 21,694         | 21,694         | △2,183         | △9.1        |
| - 문화예술향유지원                            | 143,303        | 167,283        | 171,149        | 167,123        | 167,123        | 23,820         | 16.6        |
|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영비        | 21,487         | 21,366         | 21,742         | 21,565         | 21,565         | 78             | 0.4         |
| <input type="checkbox"/> 인건비          | 11,978         | 11,978         | 11,844         | 12,124         | 12,124         | 146            | 1.2         |
| <input type="checkbox"/> 기관운영비        | 7,866          | 7,745          | 7,561          | 7,223          | 7,223          | △643           | △8.2        |
| <input type="checkbox"/>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80            | 580            | 557            | 556            | 556            | △24            | △4.1        |
| <input type="checkbox"/> 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1,063          | 1,063          | 1,780          | 1,662          | 1,662          | 599            | 56.3        |
| <input type="checkbox"/> 정부내부지출       | 5,000          | 10,006         | 4,850          | 7,800          | 7,800          | 2,800          | 56.0        |
| <input type="checkbox"/> 복권기금전출(반환금)  | 5,000          | 10,006         | 4,850          | 7,800          | 7,800          | 2,800          | 56.0        |
|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운용       | 249,628        | 202,259        | 186,532        | 171,884        | 193,043        | △56,585        | △22.7       |
| <input type="checkbox"/> 통화금융기관예치     | 249,628        | 202,259        | 186,532        | 171,884        | 193,043        | △56,585        | △22.7       |



7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내역사업별 세목명세서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39       |       |     | (회계)문화예술진흥기금                 |        |         | 523,902,000,000 |
| 060      |       |     | (장,분야)문화및관광                  |        |         | 523,902,000,000 |
| 061      |       |     | (관,부문)문화예술                   |        |         | 309,294,000,000 |
| 061      | 1700  |     | (항,프로그램)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         | 301,494,000,000 |
| 061      | 1761  |     | (세항,단위사업)예술창작역량강화            |        |         | 93,858,000,000  |
| 061      | 1761  | 300 | (세세항,세부사업)예술창작지원             |        |         | 48,186,000,000  |
| 061      | 1761  | 300 | 1-1.문학창작육성                   |        |         | 2,988,000,000   |
| 061      | 1761  | 300 | 1-1-1.문학창작산실                 |        |         | 2,050,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창작산실                     | 210-01 | 일반수용비   | 160,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창작산실                     | 310-03 | 포상금     | 800,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창작산실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90,000,000   |
| 061      | 1761  | 300 | 1-1-2.문학주간운영                 |        |         | 337,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주간운영                     | 110-03 | 상용임금    | 36,96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주간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290,68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주간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4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주간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2,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주간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6,960,000       |
| 061      | 1761  | 300 | 1-1-3.문학광장운영                 |        |         | 601,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110-03 | 상용임금    | 36,96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110-04 | 일용임금    | 4,05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537,63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2,4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4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2,6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310-03 | 포상금     | 10,000,000      |
| 061      | 1761  | 300 | ○ 문학광장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6,960,000       |
| 061      | 1761  | 300 | 1-2.시각예술창작육성                 |        |         | 3,182,000,000   |
| 061      | 1761  | 300 | 1-2-1.시각예술창작산실               |        |         | 1,915,000,000   |
| 061      | 1761  | 300 | ○ 시각예술창작산실                   | 210-01 | 일반수용비   | 100,000,000     |
| 061      | 1761  | 300 | ○ 시각예술창작산실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815,000,000   |
| 061      | 1761  | 300 | 1-2-2.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267,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210-01 | 일반수용비   | 93,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6,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210-05 | 특근매식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12,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240-01 | 사업추진비   | 2,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420-03 | 공사비     | 19,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430-01 | 자산취득비   | 40,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110-03 | 상용임금    | 73,92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10-01 | 일반수용비   | 578,122,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2,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10-12 | 복리후생비   | 8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20-01 | 국내여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20-02 | 국외업무여비  | 7,421,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240-01 | 사업추진비   | 5,777,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1  | 300 | ○ 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320-09 | 고용부담금   | 14,222,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110-03 | 상용임금    | 36,960,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347,900,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7,500,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400,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인사미술공간 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6,978,000      |
| 061      | 1761  | 300 | 1-3.공연예술창작육성                  |        |         | 29,036,000,000 |
| 061      | 1761  | 300 | 1-3-1.공연예술창작산실                |        |         | 9,853,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110-03 | 상용임금    | 295,68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10-01 | 일반수용비   | 814,16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2,9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10-07 | 임차료     | 4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10-12 | 복리후생비   | 3,2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10-14 | 일반용역비   | 65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20-01 | 국내여비    | 14,2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40-01 | 사업추진비   | 3,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260-01 | 일반연구비   | 4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                    | 320-09 | 고용부담금   | 55,86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단계별제작지원)           | 310-03 | 포상금     | 40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단계별제작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99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0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44,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허왕후창작오페라)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0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창작산실(아르코창작음악제)          | 320-01 | 민간경상보조  | 400,000,000    |
| 061      | 1761  | 300 | 1-3-2.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6,959,000,000  |
| 061      | 1761  | 300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공모)             | 320-01 | 민간경상보조  | 6,159,000,000  |
| 061      | 1761  | 300 | ○ 대구국제음악제(지정)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00,000,000    |
| 061      | 1761  | 300 | ○ 서울국제무용콩쿠르(지정)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00,000,000    |
| 061      | 1761  | 300 | 1-3-3.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         | 2,500,0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110-03 | 상용임금    | 73,92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160,0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210-12 | 복리후생비   | 8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220-01 | 국내여비    | 2,0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248,000,000  |
| 061      | 1761  | 300 |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 320-09 | 고용부담금   | 14,280,000     |
| 061      | 1761  | 300 | 1-3-4.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 술극장) |        |         | 4,234,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 술극장)     | 110-03 | 상용임금    | 443,968,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 술극장)     | 210-01 | 일반수용비   | 2,381,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31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10-05 | 특근매식비   | 2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922,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10-12 | 복리후생비   | 4,8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20-01 | 국내여비    | 7,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20-02 | 국외업무여비  | 1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240-01 | 사업추진비   | 13,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320-09 | 고용부담금   | 83,232,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 학로예<br>술극장)     | 430-01 | 자산취득비   | 39,000,000    |
| 061      | 1761  | 300 | 1-3-5.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 5,490,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237,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220-01 | 국내여비    | 2,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250,000,000 |
| 061      | 1761  | 300 | 1-4.국제예술교류지원                     |        |         | 6,230,000,000 |
| 061      | 1761  | 300 | 1-4-1.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         | 900,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325,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75,000,000   |
| 061      | 1761  | 300 | 1-4-2.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5,130,000,000 |
| 061      | 1761  | 300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000,000,000 |
| 061      | 1761  | 300 | ○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77,000,000    |
| 061      | 1761  | 300 | ○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23,000,000   |
| 061      | 1761  | 300 | ○ 해외문화기관협력                       | 210-01 | 일반수용비   | 162,754,000   |
| 061      | 1761  | 300 | ○ 해외문화기관협력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004,000     |
| 061      | 1761  | 300 | ○ 해외문화기관협력                       | 220-01 | 국내여비    | 9,000,000     |
| 061      | 1761  | 300 | ○ 해외문화기관협력                       | 220-02 | 국외업무여비  | 113,977,000   |
| 061      | 1761  | 300 | ○ 해외문화기관협력                       | 240-01 | 사업추진비   | 14,000,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462,850,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7,007,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210-07 | 임차료     | 1,206,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220-02 | 국외업무여비  | 21,202,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7,000,000     |
| 061      | 1761  | 300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 320-01 | 민간경상보조  | 600,000,000   |
| 061      | 1761  | 300 |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210-01 | 일반수용비   | 17,000,000    |
| 061      | 1761  | 300 |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320-01 | 민간경상보조  | 613,000,000   |
| 061      | 1761  | 300 | ○ ARKO국제심포지엄 개최(구.국제문<br>학포럼 개최)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   |
| 061      | 1761  | 300 | ○ 어반브레이크아트아시아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1        | 300        | ○ 인천-아시아 아트쇼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    |
| 061        | 1761        | 300        | ○ 코리아웨딩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00,000,000    |
| 061        | 1761        | 300        | 1-4-3.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00,000,000    |
| 061        | 1761        | 300        | 1-5.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 |        |         | 4,750,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1,998,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   | 220-01 | 국내여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 확산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750,000,000  |
| 061        | 1761        | 300        | 1-6.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         | 1,000,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39,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960,000,000    |
| 061        | 1761        | 300        | 1-7.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         | 1,000,000,000  |
| 061        | 1761        | 300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38,000,000     |
| 061        | 1761        | 300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220-01 | 국내여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1        | 300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960,000,000    |
| <b>061</b> | <b>1761</b> | <b>301</b> | <b>(세세항,세부사업)예술인력육성</b>       |        |         | 21,672,000,000 |
| 061        | 1761        | 301        | 2-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3,000,000,000  |
| 061        | 1761        | 301        | 2-1-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         | 1,575,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110-03 | 상용임금    | 175,98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10-01 | 일반수용비   | 249,6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3,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10-04 | 급식비     | 4,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10-07 | 임차료     | 30,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10-12 | 복리후생비   | 2,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20-02 | 국외업무여비  | 3,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240-01 | 사업추진비   | 2,5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310-03 | 포상금     | 64,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8,000,000  |
| 061        | 1761        | 301        |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320-09 | 고용부담금   | 32,920,000     |
| 061        | 1761        | 301        | 2-1-2. 전통예술기획자양성 프로젝트         | 320-01 | 민간경상보조  | 90,000,000     |
| 061        | 1761        | 301        | 2-1-3. 창작뮤지컬아카데미              | 320-02 | 민간위탁사업비 | 742,000,000    |
| 061        | 1761        | 301        | 2-1-4. 무대예술전문교육               |        |         | 593,0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110-03 | 상용임금    | 105,588,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110-04 | 일용임금    | 3,6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10-01 | 일반수용비   | 418,6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6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10-04 | 급식비     | 25,2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10-12 | 복리후생비   | 1,2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20-01 | 국내여비    | 5,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20-02 | 국외업무여비  | 6,0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240-01 | 사업추진비   | 7,000,000      |
| 061      | 1761  | 301 | ○ 무대예술전문교육                       | 320-09 | 고용부담금   | 20,212,000     |
| 061      | 1761  | 301 | 2-2. 현장예술인력육성                    |        |         | 18,672,000,000 |
| 061      | 1761  | 301 | 2-1-1.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         | 10,412,000,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110-03 | 상용임금    | 105,588,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276,750,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210-12 | 복리후생비   | 1,200,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220-01 | 국내여비    | 2,000,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7,000,000 |
| 061      | 1761  | 301 | ○ 문화예술기관련수단원지원                   | 320-09 | 고용부담금   | 19,462,000     |
| 061      | 1761  | 301 | 2-1-2.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3,000,000,000  |
| 061      | 1761  | 301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110-03 | 상용임금    | 140,784,000    |
| 061      | 1761  | 301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130,720,000    |
| 061      | 1761  | 301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210-12 | 복리후생비   | 1,600,000      |
| 061      | 1761  | 301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700,000,000  |
| 061      | 1761  | 301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320-09 | 고용부담금   | 26,896,000     |
| 061      | 1761  | 301 | 2-1-3.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760,000,000  |
| 061      | 1761  | 301 | 2-1-4.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0  |
| 061      | 1761  | 301 | 2-1-5.비대면예술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        |         | 1,000,000,000  |
| 061      | 1761  | 301 | ○ 비대면예술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 210-01 | 일반수용비   | 400,000,000    |
| 061      | 1761  | 301 | ○ 비대면예술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 320-01 | 민간경상보조  | 600,000,000    |
| 061      | 1761  | 301 | 2-1-6.예술기록물수집개발활용                |        |         | 700,00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기록물수집개발활용                    | 210-01 | 일반수용비   | 700,000,000    |
| 061      | 1761  | 301 | 2-1-7.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구.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        |         | 500,0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110-03 | 상용임금    | 70,392,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45,18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75,0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03 | 피복비     | 1,5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08 | 유류비     | 21,0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105,0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8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13,128,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420-03 | 공사비     | 153,000,000    |
| 061      | 1761  | 301 |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430-01 | 자산취득비   | 15,000,000     |
| 061      | 1761  | 301 | 2-1-8.예술가의집운영                    |        |         | 300,00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110-03 | 상용임금    | 105,739,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138,85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90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25,00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1,200,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2,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20,311,000      |
| 061        | 1761        | 301        | ○ 예술가의집운영                            | 430-01 | 자산취득비    | 6,000,000       |
| <b>061</b> | <b>1761</b> | <b>305</b> | <b>(세세항,세부사업)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b>       |        |          | 24,000,000,000  |
| 061        | 1761        | 305        | 3-1. (복권)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          | 24,000,000,000  |
| 061        | 1761        | 305        | ○ (복권)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0   |
| 061        | 1761        | 305        | ○ (복권)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450-04 | 기타민간용자금  | 23,000,000,000  |
| 061        | 1764        |            | (세항,단위사업)지역문화예술진흥                    |        |          | 18,819,000,000  |
| <b>061</b> | <b>1764</b> | <b>300</b> | <b>(세세항,세부사업)지역문화예술지원</b>            |        |          | 9,957,000,000   |
| 061        | 1764        | 300        | 4-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6,187,000,000   |
| 061        | 1764        | 3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210-01 | 일반수용비    | 48,000,000      |
| 061        | 1764        | 3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220-01 | 국내여비     | 8,000,000       |
| 061        | 1764        | 3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240-01 | 사업추진비    | 4,000,000       |
| 061        | 1764        | 3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6,127,000,000   |
| 061        | 1764        | 300        | 4-2.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          | 270,000,000     |
| 061        | 1764        | 300        |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및평가                    | 210-14 | 일반용역비    | 100,000,000     |
| 061        | 1764        | 300        | ○ 지역문화협의체운영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70,000,000     |
| 061        | 1764        | 300        | 4-3.아르코공공예술사업                        |        |          | 3,500,000,000   |
| 061        | 1764        | 300        |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10-01 | 일반수용비    | 98,000,000      |
| 061        | 1764        | 300        |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20-01 | 국내여비     | 1,000,000       |
| 061        | 1764        | 300        |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40-01 | 사업추진비    | 1,000,000       |
| 061        | 1764        | 300        | ○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320-02 | 민간위탁사업비  | 3,400,000,000   |
| <b>061</b> | <b>1764</b> | <b>301</b> | <b>(세세항,세부사업)예술의관광자원화</b>            |        |          | 8,862,000,000   |
| 061        | 1764        | 301        | 5-1.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          | 1,973,000,000   |
| 061        | 1764        | 301        | ○ 경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32,000,000   |
| 061        | 1764        | 301        | ○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                        | 320-01 | 민간경상보조   | 470,000,000     |
| 061        | 1764        | 301        | ○ 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                       | 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471,000,000     |
| 061        | 1764        | 301        | 5-2.전통공연예술활성화                        |        |          | 4,806,000,000   |
| 061        | 1764        | 301        | 5-2-1.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11,000,000   |
| 061        | 1764        | 301        | 5-2-2.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104,000,000   |
| 061        | 1764        | 301        | 5-2-3.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323,000,000   |
| 061        | 1764        | 301        | ○ 한국민속예술축제                           | 320-01 | 민간경상보조   | 493,000,000     |
| 061        | 1764        | 301        | ○ 한국민속예술축제                           | 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172,000,000     |
| 061        | 1764        | 301        | ○ 전국풍물상설공연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20,000,000     |
| 061        | 1764        | 301        | ○ 전통예술복원및재현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21,000,000     |
| 061        | 1764        | 301        | ○ 전통연희활성화                            | 320-01 | 민간경상보조   | 741,000,000     |
| 061        | 1764        | 301        | ○ 신진국악실험무대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76,000,000     |
| 061        | 1764        | 301        | 5-2-4.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구. 전통예술계기성행사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68,000,000     |
| 061        | 1764        | 301        | 5-3.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          | 2,083,000,000   |
| 061        | 1764        | 301        | ○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70,000,000     |
| 061        | 1764        | 301        | ○ 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56,000,000     |
| 061        | 1764        | 301        | ○ 서울아트마켓운영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644,000,000     |
| 061        | 1764        | 301        | ○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93,000,000     |
| 061        | 1764        | 301        | ○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및해외진출지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520,000,000     |
| 061        | 1765        |            | (세항,단위사업)예술항유기회확대                    |        |          | 188,817,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5  | 300 | (세세항,세부사업)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        |         | 21,694,000,000 |
| 061      | 1765  | 300 | 6-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1,578,000,000  |
| 061      | 1765  | 300 | 6-1-1.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757,000,000    |
| 061      | 1765  | 300 | ○ 문예연감및예술통계간행물발간               | 210-01 | 일반수용비   | 280,000,000    |
| 061      | 1765  | 300 | ○ 문예연감및예술통계간행물발간               | 240-01 | 사업추진비   | 6,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110-03 | 상용임금    | 36,96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210-01 | 일반수용비   | 206,6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210-12 | 복리후생비   | 4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240-01 | 사업추진비   | 6,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320-09 | 고용부담금   | 7,04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정보컨설팅 서비스                  | 210-01 | 일반수용비   | 206,56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정보컨설팅 서비스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7,440,000      |
| 061      | 1765  | 300 | 6-1-2.예술지원정책지원                 |        |         | 821,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10-01 | 일반수용비   | 89,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10-07 | 임차료     | 5,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20-01 | 국내여비    | 8,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20-02 | 국외업무여비  | 25,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40-01 | 사업추진비   | 2,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260-01 | 일반연구비   | 258,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 260-01 | 일반연구비   | 100,000,000    |
| 061      | 1765  | 300 | ○ 공연예술실태조사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03,000,000    |
| 061      | 1765  | 300 | ○ 정책사업모니터링및평가(대한민국 공연예술제지원 평가) | 210-01 | 일반수용비   | 130,000,000    |
| 061      | 1765  | 300 | 6-2.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17,805,000,000 |
| 061      | 1765  | 300 | 6-2-1.기부금사업                    |        |         | 11,847,000,000 |
| 061      | 1765  | 300 | ○ 조건부기부금사업                     | 310-04 | 기타보전금   | 11,847,000,000 |
| 061      | 1765  | 300 | 6-2-2.예술나무운동                   |        |         | 1,958,0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110-03 | 상용임금    | 147,84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10-01 | 일반수용비   | 577,4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10-12 | 복리후생비   | 1,6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20-01 | 국내여비    | 8,0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40-01 | 사업추진비   | 5,0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320-09 | 고용부담금   | 28,074,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 210-01 | 일반수용비   | 100,0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00,000,000    |
| 061      | 1765  | 300 | ○ 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관 인증             | 210-01 | 일반수용비   | 40,000,000     |
| 061      | 1765  | 300 | ○ 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관 인증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50,000,000    |
| 061      | 1765  | 300 | ○ 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관 인증             | 320-02 | 민간위탁사업비 | 80,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요원제도운영                     | 110-03 | 상용임금    | 73,92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요원제도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131,41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요원제도운영                     | 210-12 | 복리후생비   | 8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요원제도운영                     | 320-09 | 고용부담금   | 13,956,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양성                 | 320-02 | 민간위탁사업비 | 400,000,000    |
| 061      | 1765  | 300 | 6-2-3.민간후원활성화지원                |        |         | 4,000,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기업과예술의 만남활성화) | 320-01 | 민간경상보조   | 3,900,000,000   |
| 061        | 1765        | 300        | ○ 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로인사합시다)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00,000,000     |
| 061        | 1765        | 300        | 6-3.원로문예인복지지원             | 310-04 | 기타보전금    | 101,000,000     |
| 061        | 1765        | 300        | 6-4.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          | 2,210,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110-03 | 상용임금     | 442,058,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10-01 | 일반수용비    | 519,265,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0,199,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10-07 | 임차료      | 594,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300,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10-12 | 복리후생비    | 7,6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40-01 | 사업추진비    | 4,00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260-01 | 일반연구비    | 172,340,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320-09 | 고용부담금    | 83,237,000      |
| 061        | 1765        | 300        |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아르코예술기록원)   | 430-01 | 자산취득비    | 77,301,000      |
| <b>061</b> | <b>1765</b> | <b>301</b> | <b>(세세항,세부사업)문화예술향유지원</b> |        |          | 167,123,000,000 |
| 061        | 1765        | 301        | 7-1.(복권)통합문화이용권           |        |          | 126,094,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110-03 | 상용임금     | 210,12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110-04 | 일용임금     | 9,18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210-01 | 일반수용비    | 1,900,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210-12 | 복리후생비    | 5,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220-01 | 국내여비     | 18,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240-01 | 사업추진비    | 8,0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320-09 | 고용부담금    | 42,700,000      |
| 061        | 1765        | 301        | ○ (복권)통합문화이용권             | 330-01 | 자치단체경상보조 | 123,900,000,000 |
| 061        | 1765        | 301        | 7-2. 신나는예술여행              |        |          | 24,229,0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110-03 | 상용임금     | 396,403,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110-04 | 일용임금     | 3,0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210-01 | 일반수용비    | 555,417,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210-12 | 복리후생비    | 1,8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220-01 | 국내여비     | 19,0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240-01 | 사업추진비    | 14,0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320-01 | 민간경상보조   | 23,204,000,000  |
| 061        | 1765        | 301        | ○ 신나는예술여행                 | 320-09 | 고용부담금    | 35,380,000      |
| 061        | 1765        | 301        | 7-3 .방방곡곡문화공감             | 320-01 | 민간경상보조   | 16,800,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1      | 8900  |     | (항, 프로그램)기금간거래                  |        |         | 7,800,000,000   |
| 061      | 8999  |     | (세항, 단위사업)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        |         | 7,800,000,000   |
| 061      | 8999  | 840 | (세세항, 세부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반환 |        |         | 7,800,000,000   |
| 061      | 8999  | 840 | ○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 610-03 | 기금전출금   | 7,800,000,000   |
| 065      |       |     | (관, 부문)문화및관광일반                  |        |         | 214,608,000,000 |
| 065      | 7200  |     | (항, 프로그램)기금운영비                  |        |         | 21,565,000,000  |
| 065      | 7276  |     | (세항, 단위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        |         | 21,565,000,000  |
| 065      | 7276  | 100 | (세세항, 세부사업)인건비                  |        |         | 12,124,000,000  |
| 065      | 7276  | 100 | ○ 인건비                           | 110-01 | 보수      | 11,970,445,000  |
| 065      | 7276  | 100 | ○ 인건비                           | 110-05 | 연가보상비   | 153,555,000     |
| 065      | 7276  | 200 | (세세항, 세부사업)기관운영비                |        |         | 7,223,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110-03 | 상용임금    | 1,006,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110-04 | 일용임금    | 7,6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1 | 일반수용비   | 1,224,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864,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3 | 피복비     | 7,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5 | 특근매식비   | 4,82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7 | 임차료     | 161,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8 | 유류비     | 87,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09 | 시설장비유지비 | 275,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12 | 복리후생비   | 415,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15 | 관리용역비   | 1,538,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10-16 | 기타운영비   | 12,0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20-01 | 국내여비    | 37,661,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20-02 | 국외업무여비  | 39,35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40-01 | 사업추진비   | 46,549,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40-02 | 관서업무추진비 | 106,92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250-02 | 직책수행경비  | 151,2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320-09 | 고용부담금   | 188,900,000     |
| 065      | 7276  | 200 | ○ 기관운영비                         | 430-01 | 자산취득비   | 51,000,000      |
| 065      | 7276  | 201 | (세세항, 세부사업)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         | 556,000,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110-04 | 일용임금    | 9,400,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10-01 | 일반수용비   | 475,829,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1,200,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10-05 | 특근매식비   | 3,750,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20-01 | 국내여비    | 53,539,000      |
| 065      | 7276  | 201 |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240-01 | 사업추진비   | 12,282,000      |
| 065      | 7276  | 500 | (세세항, 세부사업)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         | 1,662,000,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110-03 | 상용임금    | 218,708,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10-01 | 일반수용비   | 84,650,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10-02 | 공공요금및제세 | 33,115,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10-07 | 임차료     | 73,200,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10-15 | 관리용역비   | 317,000,000     |

| 회계, 장, 관 | 항, 세항 | 세세항 | 내역                                   | 목-세목   | 세목명       | 원화              |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40-01 | 사업추진비     | 900,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260-01 | 일반연구비     | 324,000,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320-09 | 고용부담금     | 41,292,000      |
| 065      | 7276  | 500 |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430-01 | 자산취득비     | 569,135,000     |
| 065      | 9700  |     | (항, 프로그램)여유자금운용                      |        |           | 193,043,000,000 |
| 065      | 9701  |     | (세항, 단위사업)통화금융기관예치(문예기금)             |        |           | 193,043,000,000 |
| 065      | 9701  | 970 | (세세항, 세부사업)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br>통화금융기관으로 예치 |        |           | 193,043,000,000 |
| 065      | 9701  | 970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470-02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193,043,000,000 |

8

2021년도 수입 및 지출  
각목명세서



# 수 입 각 목 명 세 서

[단위 : 천원, 1\$]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39190] | 523,902,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
| [11]    | 5,675,000   | 재산수입                                    |
| [51]    | 1,175,000   | 관유물대여료                                  |
| [512]   | 1,175,000   | 건물대여료                                   |
|         | 1,175,000   | 1. 건물대여료<br>1,175,000,000원=             |
| [54]    | 4,500,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 [545]   | 4,500,000   | 기타재산수입                                  |
|         | 4,500,000   | 1.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br>4,500,000,000원=      |
| [12]    | 36,645,000  | 경상이전수입                                  |
| [59]    | 36,645,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
| [594]   | 26,167,000  | 민간출연금                                   |
|         | 11,847,000  | 1. 민간기부금<br>11,847,000,000원=            |
|         | 14,320,000  | 2. 건축물미술작품설치 대체 기부금<br>14,320,000,000원= |
| [596]   | 10,478,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
|         | 5,628,000   | 1. 지원사업 포기 반납금<br>5,628,000,000원 =      |
|         | 4,850,000   | 2. 복권기금사업 포기 반납금<br>4,850,000,000원 =    |
| [13]    | 7,498,00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 [64]    | 6,244,000   | 입장료수입                                   |
| [641]   | 6,244,000   | 입장료수입                                   |
|         | 6,000,000   | 1. 뉴서울골프장 운영 잉여금<br>6,000,000,000원=     |
|         | 200,000     |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기획사업 수입<br>200,000,000원=  |
|         | 25,000      | 3. 아르코예술기록원 기획사업 수입<br>25,000,000원=     |

☞13-64-64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입장료수입-입장료수입

[단위 : 천원, 1\$]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9,000      | 4.아르코미술관 등 기획사업 수입<br>19,000,000원=   |
| [69]  | 1,254,000   | 잡수입  |
| [691] | 1,254,000   | 기타잡수입  |
|       | 1,254,000   | 1.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기부금 운용수익, 연습공간 대관수익,<br>부가세환급, 소송비용환급 등<br>1,002,000,000원+252,000,000원= |
| [14]  | 16,395,000  | 수입대체경비수입   |
| [69]  | 16,395,000  | 잡수입  |
| [697] | 16,395,000  | 기타영업외잡수익   |
|       | 16,395,000  | 1.경륜경정수익 전입금<br>16,395,000,000원=   |
| [31]  | 190,225,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
| [85]  | 190,225,000 | 정부예금회수   |
| [852] | 190,225,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190,225,000 |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br>190,225,000,000=   |
| [40]  | 267,464,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91]  | 267,464,000 | 전입금  |
| [911] | 20,370,000  | 일반회계전입금  |
|       | 20,370,000  | 1. 일반회계 전입금<br>20,370,000,000원=  |
| [913] | 247,094,000 | 기금전입금  |
|       | 150,094,000 | 1.복권기금전입금<br>24,000,000,000원+126,094,000,000원=                                       |
|       | 97,000,000  | 2.체육기금전입금<br>97,000,000,000원=  |

☞40-91-91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전입금-기금전입금

# 지 출 각 목 명 세 서

[단위 : 천원, 1\$]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39190]  | 523,902,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
| [060]    | 523,902,000 | 문화및관광  |
| [061]    | 309,294,000 | 문화예술   |
| [1700]   | 301,494,000 |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
| [1761]   | 93,858,000  | 예술창작역량강화   |
| [300]    | 48,186,000  | 예술창작 지원  |
| [110]    | 1,002,418   | 인건비  |
| [110-03] | 998,368     | 상용임금   |
|          | 73,920      | 1.문학창작육성   |
|          | 36,960      | 가.문학주간운영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1명*12개월=                                  |
|          | 36,960      | 나.문학광장운영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1명*12개월=                                  |
|          | 110,880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110,88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73,920      | 1)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2명*12개월=                            |
|          | 36,960      | 2)인사미술공간운영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1명*12개월=                                |
|          | 813,568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295,68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8명*12개월=                                |
|          | 73,920      | 나.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합) - 사업운영인력 보수<br>3,080,000원*2명*12개월= |
|          | 443,968     | 다.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교로예술극장)  |
|          | 406,560     | 1)공연사업관리운영 인력 보수<br>3,080,000원*11명*12개월=                                     |
|          | 37,408      | 2)공연장안전관리 인력 보수<br>3,117,000원*1명*12개월+4,000원=                                |
| [110-04] | 4,050       | 일용임금   |
|          |             |  |

☞ : 061-1700-1761-300-110 : 문화예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창작역량강화-예술창작 지원-인건비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50      | 가.문학광장운영 - 일용직 보수<br>45,000원*90일=                        |
| [210]    | 10,824,913 | 운영비  |
| [210-01] | 8,819,096  | 일반수용비  |
|          | 988,310    | 1.문학창작육성   |
|          | 160,000    | 가.문학창작산실   |
|          | 60,000     | 1) 문예지발간지원   |
|          | 8,000      | 가)지원심의 사례비<br>1,000,000원*8명=                             |
|          | 2,000      | 나)심의자료 제작비<br>2,000,000원*1식=                             |
|          | 50,000     | 다)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용역)<br>5,000,000원*10개월=                    |
|          | 100,000    | 2) 아르코창작기금   |
|          | 40,000     | 가)지원심의회회 추진<br>20,000,000원*2회=                           |
|          | 60,000     | 나)선정작가 홍보 및 문학콘텐츠 제작보급<br>5,000,000원*12개월=               |
|          | 290,680    | 나.문학주간운영   |
|          | 30,000     | 1)전국문학연계행사운영<br>15,000,000원*2건=                          |
|          | 2,680      | 2)홍보물 제작<br>2,680,000원*1식=                               |
|          | 8,000      | 3)조직위원회 사례비<br>200,000원*10명*4회=                          |
|          | 250,000    | 4)문학주간 행사운영 주관처(용역)<br>250,000,000원*1개 주관처=              |
|          | 537,630    | 다.문학광장운영   |
|          | 78,000     | 1)청소년문학영재 발굴 및 육성  |
|          | 37,700     | 가)글틴 및 청소년 시상제도 운영<br>(3,000,000원*12개월)+(1,700,000원*1식)= |
|          | 25,000     | 나)청소년문학영재육성프로그램<br>500,000원*50명=                         |
|          | 11,300     | 다)글틴프로그램 운영<br>11,300,000원*1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 라)작품집 및 홍보물 제작비         |
|    | 4,000     | 4,000,000원*1식=          |
|    |           | 2)사이버문학광장운영             |
|    | 402,030   | 33,502,500원*12개월=       |
|    |           | 3)사이버문학광장 시스템 관리운영(용역)  |
|    | 57,600    | 4,800,000원*12개월=        |
|    | 1,119,022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 가.시각예술창작산실              |
|    | 100,000   |                         |
|    |           | 1)전시지원 사업 멘토링 지원        |
|    | 2,800     | 200,000원*2회*7건=         |
|    |           | 2)공간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    | 17,200    | 17,200,000원*1식=         |
|    |           | 3)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    | 60,000    | 60,000,000원*1식=         |
|    |           | 4)사업관련 설명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 |
|    | 20,000    | 20,000,000원*1식=         |
|    | 1,019,022 | 나.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 1)아르코미술관 운영관리           |
|    | 93,000    |                         |
|    |           | 가)미술관 운영자문 위원회 운영       |
|    | 3,000     | 200,000원*5인*3회=         |
|    |           | 나)미술관 자문 및 평가(전시, 교육)   |
|    | 6,000     | 200,000원*5인*6회=         |
|    |           | 다)시설 유지 관리 비용           |
|    | 72,000    | 6,000,000원*12개월=        |
|    |           | 라)사무실 운영비(소모품, 컵비 등)    |
|    | 7,000     | 7,000,000원*1식=          |
|    |           | 마)홈페이지 유지 비용            |
|    | 5,000     | 5,000,000원*1식=          |
|    | 578,122   | 2)아르코미술관 기획프로그램         |
|    |           | 가)전시프로그램                |
|    | 410,000   |                         |
|    |           | 1>전시 프로그램 운영            |
|    | 300,000   | 100,000,000원*3회=        |
|    |           | 2>전시장 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     |
|    | 100,000   | 80,000원*250일*5명=        |
|    |           | 3>설문분석비                 |
|    | 5,000     | 5,000,000원*1식=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 4>전시 운영 물품 구입          |
|    | 5,000     | 5,000,000원*1식=         |
|    | 105,122   | 나)교육 프로그램 추진           |
|    |           | 1>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75,000    | 25,000,000원*3개과정=      |
|    |           | 2>인턴교육 지원비             |
|    | 24,000    | 2,000,000원*6개월*2명=     |
|    |           | 3>설문분석비                |
|    | 5,000     | 5,000,000원*1식=         |
|    |           | 4>인턴교육 운영비             |
|    | 1,122     | 1,219,000원*1식-97,000원= |
|    |           | 다)아카이브 운영              |
|    | 30,000    | 2,500,000원*12개월=       |
|    |           | 라)홍보 운영                |
|    | 33,000    | 3,300,000원*10회=        |
|    | 347,900   | 3)인사미술공간               |
|    | 85,400    | 가)인사미술공간 운영            |
|    |           | 1>시설운영관리               |
|    | 38,400    | 3,200,000원*12개월=       |
|    |           | 2>임차료                  |
|    | 42,000    | 3,500,000원*12개월=       |
|    |           | 3>시설 유지보수              |
|    | 5,000     | 5,000,000원*1식=         |
|    |           | 나)인사미술공간 홍보            |
|    | 10,900    | 1,090,000원*10회=        |
|    | 219,600   | 다)기획 프로그램              |
|    |           | 1>기획 프로그램 운영           |
|    | 210,000   | 26,250,000원*8회=        |
|    |           | 2>코디네이터                |
|    | 9,600     | 80,000원*1인*30일*4회=     |
|    | 32,000    | 라)교육 프로그램              |
|    |           | 1>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지원비       |
|    | 12,000    | 2,000,000원*6개월*1명=     |
|    |           | 2>교육프로그램 운영            |
|    | 20,000    | 5,000,000원*4회=         |
|    | 3,592,160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814,16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운영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814,160   | 1)공연예술창작산실 관객개발 및 사업운영                    |
|    |           | 가)심의위원사례비                                 |
|    | 210,000   | 1,000,000원*5인*7회*6개분야=                    |
|    |           | 나)평가및자문위원사례비                              |
|    | 48,000    | 200,000원*5인*8회*6개분야=                      |
|    |           | 다)심의자료제작및소모품                              |
|    | 4,160     | 520,000원*8회=                              |
|    |           | 라)선정단체 설명회, 워크숍, 합평회                      |
|    | 52,000    | 6,500,000원*8회=                            |
|    |           | 마)유통 및 관객개발 프로모션 운영비(용역)                  |
|    | 500,000   | 250,000,000원*2식=                          |
|    | 160,000   | 나.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 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 특성화극장 통폐합) |
|    | 64,000    | 1)심의 및 사업운영비                              |
|    |           | 가)심의위원사례비                                 |
|    | 40,000    | 500,000원*5명*4개분야*4회=                      |
|    |           | 나)자문위원사례비                                 |
|    | 4,000     | 200,000원*5인*4개분야=                         |
|    |           | 다)심의자료제작 및 심의소모품, 정보화기기 대여 수수료 등          |
|    | 10,000    | 5,000,000원*2회=                            |
|    |           | 라)선정단체 설명회, 워크숍                           |
|    | 10,000    | 5,000,000원*2회=                            |
|    |           | 2)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    | 76,000    | 70,000,000원*1식+6,000,000원=                |
|    |           | 3)사업홍보                                    |
|    | 20,000    | 2,000,000원*10개월=                          |
|    | 2,381,000 | 다.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교로예술극장)                  |
|    | 715,640   | 1)자체 및 기획사업 프로그램                          |
|    |           | 가)봄작가 겨울무대 공연                             |
|    | 120,000   | 40,000,000원*3개프로젝트=                       |
|    |           | 나)아르코 파트너                                 |
|    | 515,640   | 128,910,000원*4개프로젝트=                      |
|    |           | 다)예술 체험 프로그램                              |
|    | 80,000    | 80,000,000원*1개프로젝트=                       |
|    | 379,010   | 2)공연장서비스 지원                               |
|    | 23,800    | 가)기획 및 대관공연 지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6,800   | 1>심의회의 운영<br>5,600,000원*3회=                    |
|    | 5,000    | 2>극장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200,000원*5명*5회=             |
|    | 2,000    | 3>공연장 서비스 모니터링<br>200,000원*5명*2회=              |
|    | 355,210  | 나)관객서비스 지원                                     |
|    | 348,576  | 1>관객안내 보조인력 운영<br>(11,527원*27명*4시간*280일)-480원= |
|    | 6,634    | 2>운영 소모품 구입<br>663,400원*10개월=                  |
|    | 214,350  | 3)고객커뮤니케이션                                     |
|    | 26,400   | 가)월간핸드북 발생                                     |
|    | 24,000   | 1>제작비<br>2,000,000원*12개월=                      |
|    | 2,400    | 2>배포 대행수수료<br>200,000원*12개월=                   |
|    | 159,950  | 나)프로그램 홍보                                      |
|    | 4,200    | 1>프로그램 편집디자인 소프트웨어 임대<br>175,000원*2개*12개월=     |
|    | 60,000   | 2>온라인 홍보비<br>5,000,000원*12개월=                  |
|    | 95,750   | 3>오프라인 홍보비<br>(2,660,000*3건*12개월)-10,000원=     |
|    | 10,000   | 다)관객 소통 활성화<br>5,000,000원*2식=                  |
|    | 18,000   | 라)극장 멤버십 활성화<br>10,000,000원*1식+8,000,000원=     |
|    | 75,000   | 4)스마트서비스시스템 운영                                 |
|    | 48,300   | 가)시스템 유지보수<br>4,025,000원*12개월=                 |
|    | 8,400    | 나)홈페이지 IDC서버 사용료<br>700,000원*12개월=             |
|    | 7,100    | 다)시스템 운영비<br>(591,000원*12개월)+8,000원=           |
|    | 11,200   | 라)티켓시스템 관리 운영<br>(933,000원*12개월)+4,000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997,000   | 5)아르코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사업<br>997,000,000원*1식=       |
|    | 237,000   | 라.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 75,000    | 1)사업개선 프로그램 추진 및 국내외벤치마킹 연구<br>25,000,000원*3회=   |
|    | 90,000    | 2)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br>90,000,000원*1식=             |
|    | 72,000    | 3)사업 통합 홍보마케팅<br>6,000,000원*12개월=                |
|    | 1,044,604 | 4. 국제예술교류지원                                      |
|    | 325,000   | 가.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
|    | 63,000    | 1)작가키트 제작비<br>4,500,000원*14건=                    |
|    | 246,000   | 2)해외레지던스협력기관 프로그램 참가비<br>12,300,000원*20건=        |
|    | 16,000    | 3)악기 운송비, 작품 제작<br>1,600,000원*10건=               |
|    | 719,604   | 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77,000    | 1)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
|    | 9,600     | 가)심의위원사례비<br>800,000원*6인*2회=                     |
|    | 3,200     | 나)자문위원사례비<br>200,000원*4인*4회=                     |
|    | 2,000     | 다)사업설명회(2회), 선정단체 워크숍(2회)<br>500,000원*4회=        |
|    | 60,000    | 라)결과공유회(1회)<br>60,000,000원*1회=                   |
|    | 2,200     | 마)사업 모니터링 운영비<br>2,200,000원*1식=                  |
|    | 162,754   | 2) 해외문화기관협력                                      |
|    | 45,000    | 가)IFACCA 회원국 회비 납부<br>45,000,000원*1회=            |
|    | 6,000     | 나)IFACCA 보드미팅 등 국제회의 전문 통역료<br>1,500,000원*1명*4회= |
|    | 3,000     | 다)IFACCA 회의 자료 번역료<br>500,000원*6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0    | 라)협력행사 및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br>2,000,000원*2회=         |
|    | 4,000    | 마)영문 홈페이지 번역료<br>2,000,000원*2회=                 |
|    | 4,200    | 바)해외대표단 및 해외초빙전문가 통역가이드 수수료<br>420,000원*5일*2회=  |
|    | 17,500   | 사)해외대표단 및 해외초빙전문가 국내 체제비<br>175,000원*10일*10명=   |
|    | 13,000   | 아)해외대표단 및 해외초빙전문가 국내이동 교통비<br>130,000원*10일*10명= |
|    | 2,000    | 자)해외대표단 및 해외초빙전문가 문화예술관람비<br>100,000원*10명*2회=   |
|    | 4,000    | 차)기념품 구입 및 제작<br>200,000원*20개=                  |
|    | 60,054   | 카)국제교류 전문가 사례비 등<br>2,000,000원*30회+54,000원=     |
|    | 462,850  | 3)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    | 9,800    | 가)사례비(심의위원, 후보자 등)<br>200,000원*7명*7회=           |
|    | 49,980   | 나)전시장조성공사 및 개보수 공사비<br>49,980,000원*1식=          |
|    | 100,000  | 다)증개축비용<br>100,000,000원*1식=                     |
|    | 58,320   | 라)한국관 공간매니저 사례비<br>4,860,000원*1명*12개월=          |
|    | 134,750  | 마)한국관 안내요원 사례비<br>2,750유로*1,400원*5명*7개월=        |
|    | 28,000   | 바)한국관 전도금<br>10,000유로*1,400*2회=                 |
|    | 2,000    | 사)자료 번역비<br>200,000원*10회=                       |
|    | 80,000   | 아)용역비용(홍보, 초청행사)<br>40,000,000원*2식=             |
|    | 17,000   | 4)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    | 4,800    | 가)심의 및 자문 사례비<br>400,000원*6인*2회=                |
|    | 12,200   | 나)사업설명회(1회), 선정단체 워크숍(1회)<br>6,100,000원*2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998,000 | 5.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
|          | 1,498,000 | 가.융합활성화기반조성  |
|          | 300,000   | 1)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스튜디오 운영<br>15,000,000원*20건=     |
|          | 500,000   | 2) 아트엔테크 페어 및 컨퍼런스 개최 용역<br>250,000,000원*2식=       |
|          | 600,000   | 3) 아트엔테크 페스티벌<br>300,000,000원*2식=                  |
|          | 98,000    | 4) 사업 확산 및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제작 용역<br>98,000,000원*1식=    |
|          | 500,000   | 나. 첨단융복합 지역거점 육성 및 창작모델 발굴<br>100,000,000원*5건=     |
|          | 39,000    | 6.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구.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          | 5,000     | 가. 심의위원 사례비<br>500,000원*5인*2회=                     |
|          | 34,000    | 나. 사업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br>34,000,000원*1식=             |
|          | 38,000    | 7.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          | 20,000    | 가.심의위원 사례비<br>500,000원*5인*8회=                      |
|          | 6,000     | 나.사업설명회 및 선정단체 워크숍<br>3,000,000원*2회=               |
|          | 12,000    | 다.사업설명회, 홍보 등 기타운영비<br>1,000,000원*12개월=            |
| [210-02] | 348,811   | 공공요금및제세  |
|          | 2,400     | 1.문학창작육성   |
|          | 2,400     | 가.문학광장운영 우편발송비<br>240,000원*10개월=                   |
|          | 25,500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25,5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6,000    | 1)아르코미술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br>(1,333,000원*12개월)+4,000원= |
|          | 2,000     | 2)아르코미술관 기획프로그램 국내외 우편발송<br>400,000원*5회=           |
|          | 7,500     | 3)인사미술공간 운영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6,000    | 가)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br>500,000원*12개월=                       |
|          | 1,500    | 나)국내외 우편발송<br>150,000원*10개월=                             |
|          | 312,900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2,9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국내 우편발송비 등<br>290,000원*10개월=                  |
|          | 310,000  | 나.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지원)                                 |
|          | 304,400  | 1)수도광열비(전기/수도/가스)  |
|          | 246,400  | 가)대학로예술극장 공과금<br>(20,533,000원*12개월)+4,000원=              |
|          | 58,000   | 나)아르코예술극장 공과금<br>(4,833,000원*12개월)+4,000원=               |
|          | 5,600    | 2)세금과공과  |
|          | 3,600    | 가)재산할사업 소득세 / 법인균등할 주민세<br>3,600,000원*1회=                |
|          | 2,000    | 나)자동차세 , 환경부담금 등<br>500,000원*4회=                         |
|          | 8,011    | 4.국제예술교류지원   |
|          | 8,011    | 가.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1,004    | 1)해외문화기관협력 -여행자보험료 및 비자발급 수수료 등<br>50,000원*5명*4회+4,000원= |
|          | 7,007    | 2)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          | 6,000    | 가)한국관 전력, 수도료(전시용 포함)<br>500,000원*12개월=                  |
|          | 700      | 나)현지자료 발송비<br>350,000원*2회=                               |
|          | 307      | 다)출장자 여행자 보험료<br>30,700원*10명=                            |
| [210-05] | 21,000   | 특근매식비  |
|          | 1,000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 1,0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000    | 1)아르코미술관 운영관리 - 전시근무자 특근매식비<br>8,000원*4명*30일+40,000원=    |
|          | 20,0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0,000   | 가.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공연근무자 특근매식비<br>8,000원*20명*125일= |
| [210-07] | 41,206   | 임차료  |
|          | 40,000   | 1.공연예술창작육성   |
|          | 40,0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공연장 및 워크숍 등 시설장비 임차)<br>10,000,000원*4식=       |
|          | 1,206    | 2.국제예술교류지원   |
|          | 1,206    | 가.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1,206    | 1)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          | 206      | 가)한국관 부지 임대료<br>206,000원*1회=                             |
|          | 1,000    | 나)개막행사 음향장비 임차료<br>1,000,000원*1회=                        |
| [210-09] | 934,000  | 시설장비유지비  |
|          | 12,000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 12,0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2,000   | 1)아르코미술관 운영관리(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br>4,000,000원*3식=    |
|          | 922,0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 922,000  | 가.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지원)                                 |
|          | 68,000   | 1)정보화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
|          | 2,000    | 가)전화선점검 및 증설/이전<br>500,000원*4회=                          |
|          | 15,600   | 나)전산기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br>1,300,000원*12개월=                    |
|          | 36,000   | 다)극장 시설보안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관리<br>3,000,000원*12개월=              |
|          | 6,600    | 라)pc네트워크 유지관리<br>550,000원*12개월=                          |
|          | 3,000    | 마)pc보안관제 사용 수수료<br>250,000원*12개월=                        |
|          | 4,800    | 바)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개선<br>4,800,000원*1식=                       |
|          | 125,000  | 2)건물/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2,000   | 가)소독 및 방충<br>1,000,000원*12개월=                |
|    | 36,000   | 나)극장/주차장 승강기 유지보수비<br>1,500,000원*2개*12개월=    |
|    | 4,000    | 다)냉난방기 전환 및 세관<br>4,000,000원*1회=             |
|    | 15,000   | 라)건물/가스/전기/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진단<br>1,250,000원*12회= |
|    | 4,000    | 마)소방점검 유지보수<br>(333,000원*12개월)+4,000원=       |
|    | 13,200   | 바)화장실 방향제 유지보수<br>1,100,000원*12개월=           |
|    | 8,220    | 사)정수기 렌탈료<br>685,000원*12개월=                  |
|    | 20,000   | 아)아르코 및 대학로 건물안전진단<br>10,000,000원*2식=        |
|    | 10,000   | 자)화재예방 경보시스템 설치<br>10,000,000원*1식=           |
|    | 2,000    | 차)불용물품 폐기 비용<br>1,000,000원*2회=               |
|    | 580      | 카)업무용 차량 유지보수비<br>580,000원*1회=               |
|    | 170,000  | 3)공연장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    | 69,600   | 가)무대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br>5,800,000원*2곳*6회=      |
|    | 12,600   | 나)음향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br>4,200,000원*3회=         |
|    | 34,800   | 다)조명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br>5,800,000원*6회=         |
|    | 10,000   | 라)분무가습기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br>1,250,000원*8개소=     |
|    | 43,000   | 마)정기무대안전진단<br>21,500,000원*2개소=               |
|    | 380,000  | 4)공연장 무대시설 개보수                               |
|    | 115,000  | 가)무대운영시스템 및 시설 개선<br>115,000,000원*1식=        |
|    | 180,000  | 나)조명시스템 및 시설 개선<br>180,000,000원*1식=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85,000   | 다)음향시스템 및 시설 개선<br>85,000,000원*1식=              |
|          | 179,000  | 5)공연장 안내 및 시설 개보수                               |
|          | 137,000  | 가)시설물 긴급보수 및 개선<br>137,000,000원*1식=             |
|          | 10,000   | 나)공연장 로비 안내표지 등<br>10,000,000원*1식=              |
|          | 32,000   | 다)공연장 안내원 근무복 제작 및 세탁 등<br>320,000원*50명*2식=     |
| [210-12] | 10,800   | 복리후생비   |
|          | 800      | 1.문학창작육성  |
|          | 400      | 가.문학주간운영<br>400,000원*1명=                        |
|          | 400      | 나.문학광장운영<br>400,000원*1명=                        |
|          | 1,200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1,2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800      | 1)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br>400,000원*2명=                  |
|          | 400      | 2)인사미술공간운영<br>400,000원*1명=                      |
|          | 8,800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3,2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br>400,000원*8명=                      |
|          | 800      | 나.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합)       |
|          | 4,800    | 다.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교로예술극장)<br>400,000원*12명=        |
| [210-14] | 650,000  | 일반용역비   |
|          | 650,000  | 1.공연예술창작육성                                      |
|          | 650,0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          | 120,000  | 1)공연실황 중계 및 홍보영상, 사진기록물 제작<br>120,000,000원*1식=  |
|          | 350,000  | 2)우수작품 통합홍보마케팅(광고, 홍보, 캠페인)<br>350,000,000원*1식=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50,000   | 3)우수작품 관객평가단, 모니터링 운영 등<br>50,000,000원*1식=                                 |
|          | 130,000  | 4)결과발표회 운영<br>130,000,000원*1식=   |
| [220]    | 189,800  | 여비   |
| [220-01] | 37,200   | 국내여비   |
|          | 1,000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 1,0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000    | 1)아르코미술관 기획프로그램 - 전시작가 작업실 방문<br>출장 여비<br>250,000원*4회=                     |
|          | 25,2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 14,2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현장평가 심사 여비<br>100,000원*8명*18회-200,000원=                       |
|          | 2,000    | 나.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폐합) - 현장평가 심사 여비<br>100,000원*5명*4회= |
|          | 7,000    | 다.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교로예술극장) - 프로그램<br>조사 및 회의 참석 여비<br>100,000원*5명*14회=        |
|          | 2,000    | 라.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현장평가 심사 여비<br>100,000원*2명*10회=                             |
|          | 9,000    | 3. 국제예술교류지원  |
|          | 9,000    | 가.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해외문화기관협력사업 진행<br>출장비<br>100,000원*3명*30회=                    |
|          | 1,000    | 4.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 현장평가<br>및 조사 여비<br>100,000원*5명*2회=            |
|          | 1,000    | 5.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현장평가 및 조사 여비<br>100,000원*5명*2회=                            |
| [220-02] | 152,600  | 국외업무여비   |
|          | 7,421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 7,421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7,421    | 1)아르코미술관 기획프로그램 - 미술관 해외 조사연구 및<br>국제 교류<br>3,710,500원*2명=                 |
|          | 10,0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0,000   | 가.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지원) - 자체 및 기획프로그램 및 해외공간 조사 및 수집 여비<br>5,000,000원*2명= |
|          | 135,179  | 3. 국제예술교류지원   |
|          | 135,179  | 가. 한국예술세계화  |
|          | 113,977  | 1) 해외문화기관협력 - 해외기관 교류 방문단 여비<br>2,280,000원*5명*10회-23,000원=                  |
|          | 21,202   | 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개막식 관련 여비<br>3,000,000원*7명+202,000원=                    |
| [240]    | 55,377   | 업무추진비   |
| [240-01] | 55,377   | 사업추진비   |
|          | 4,600    | 1. 문학창작육성   |
|          | 2,000    | 가. 문학주간운영 - 행사운영 간담회비 등<br>20,000원*10명*10회=                                 |
|          | 2,600    | 나. 문학광장운영 - 사업운영 간담회비 등<br>20,000원*10명*13회=                                 |
|          | 8,777    | 2. 시각예술창작육성   |
|          | 8,777    | 나.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2,000    | 1) 아르코미술관운영관리 - 간담회비 등<br>20,000원*5명*20회=                                   |
|          | 5,777    | 2) 아르코미술관 기획프로그램 - 전시 및 교육사업 등<br>업무추진비<br>1,000,000원*5명*11회+277,000원=      |
|          | 1,000    | 3) 인사미술공간 운영 - 업무 자문 등 간담회비<br>20,000원*5인*10회=                              |
|          | 18,000   | 3. 공연예술창작육성   |
|          | 3,000    | 가. 공연예술창작산실 - 심의운영 및 업무협의 등 간담회비<br>20,000원*5회*30회=                         |
|          | 1,000    | 나.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 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폐합) 회의진행비<br>20,000원*5명*10회=       |
|          | 13,000   | 다. 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지원)   |
|          | 10,000   | 1) 업무협의 진행비 및 간담회비<br>500,000원*20회=   |
|          | 3,000    | 2) 40주년 기념사업 진행 행사운영 및 간담회비<br>300,000원*10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 라.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심의운영 및 간담회 진행경비               |
|          | 1,000      | 250,000원*4회=                                  |
|          | 21,000     | 4. 국제예술교류지원                                   |
|          | 21,000     | 가.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 1)해외문화기관협력 - 업무협약 및 간담회 진행경비                  |
|          | 14,000     | 200,000원*7명*10회=                              |
|          |            | 2)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업무협약 및 간담회 진행경비            |
|          | 7,000      | 200,000원*7명*5회=                               |
|          |            | 5.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 업무협약 및 자문회의 진행경비 |
|          | 1,000      | 20,000원*10명*5회=                               |
|          |            | 6.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구.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          | 1,000      | 250,000원*4회=                                  |
|          |            | 7.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 업무협약 및 각종 회의 진행경비             |
|          | 1,000      | 20,000원*10명*5회=                               |
| [260]    | 40,000     | 연구용역비   |
| [260-01] | 40,000     | 일반연구비   |
|          | 40,000     | 1.공연예술창작육성                                    |
|          |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창작산실 사업개선 조사연구                   |
|          | 40,000     | 40,000,000원*1식=                               |
| [310]    | 1,210,000  | 보전금   |
| [310-03] | 1,210,000  | 포상금   |
|          | 810,000    | 1.문학창작육성                                      |
|          | 800,000    | 가.문학창작산실                                      |
|          |            | 1)아르코창작기금                                     |
|          | 800,000    | 10,000,000명*80명=                              |
|          | 10,000     | 나.문학광장운영                                      |
|          |            | 1)청소년문학영재발굴및시상                                |
|          | 10,000     | 1,000,000원*10명=                               |
|          | 400,0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 400,0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          |            | 1) 단계별 제작지원 대본공모                              |
|          | 400,000    | 20,000,000원*20건=                              |
| [320]    | 34,765,492 | 민간이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320-01] | 34,577,000 | 민간경상보조                                       |
|          | 1,090,000  | 1.문학창작육성                                     |
|          | 1,090,000  | 가.문학창작산실                                     |
|          | 740,000    | 1)문예지발간지원<br>14,800,000원*50건=                |
|          | 100,000    | 2)문학비평및연구지원<br>5,000,000원*20건=               |
|          | 250,000    | 3)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br>50,000,000원*5개소=             |
|          | 1,815,000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1,815,000  | 가.시각예술창작산실                                   |
|          | 25,000     | 1)시각예술전시지원(사전연구)<br>5,000,000원*5건=           |
|          | 420,000    | 2)시각예술전시지원(우수전시)<br>60,000,000원*7건=          |
|          | 1,300,000  | 3)시각예술공간지원<br>43,333,333원*30건=               |
|          | 70,000     | 4)시각예술비평지원<br>10,000,000원*7건=                |
|          | 21,991,000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7,534,00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                                   |
|          | 5,990,000  | 1) 단계별 제작지원                                  |
|          | 600,000    | 가)과정지원-창작실험활동<br>20,000,000원*30편=            |
|          | 3,560,000  | 나)제작지원-올해의신작<br>71,200,000원*50편=             |
|          | 1,830,000  | 다)재공연·유통지원-올해의레퍼토리<br>45,750,000원*40편=       |
|          | 300,000    | 2)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br>10,000,000원*30건=          |
|          | 544,000    | 3)창작유지컬해외유통지원                                |
|          | 300,000    | 가)해외진출준비 및 공동제작지원<br>30,000,000원*10편=        |
|          | 244,000    | 나)해외유통플랫폼지원<br>364,000,000원*1식-120,000,000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000   | 4)아르코창작음악제<br>400,000,000원*1건=   |
|    | 300,000   | 5)허황후창작오페라<br>300,000,000원*1건=   |
|    | 6,959,000 | 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6,159,000 | 1)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공모)<br>100,967,000원*61건+13,000원=   |
|    | 300,000   | 2)대구국제음악제<br>300,000,000원*1건=  |
|    | 500,000   | 3)서울국제무용콩쿠르<br>500,000,000원*1건=  |
|    | 2,248,000 | 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 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합) (5,000,000원*249건+3,000,000원)+(100,000,000원*10건)= |
|    | 5,250,000 | 라.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br>(103,000,000원*51건)-3,000,000원=   |
|    | 5,011,000 | 4. 국제예술교류지원  |
|    | 575,000   | 가.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br>11,500,000원*50건=   |
|    | 4,236,000 | 나.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2,000,000 | 1)한국예술국제교류 - 기초예술 국제교류프로젝트 지원<br>20,000,000원*100건=   |
|    | 523,000   | 2)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br>10,460,000원*50건=  |
|    | 600,000   | 3)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전시 지원<br>600,000,000원*1식=   |
|    | 613,000   | 4)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지원<br>24,520,000원*25건=  |
|    | 100,000   | 5)ARKO국제심포지엄 개최(구. 국제문학포럼 개최)<br>100,000,000원*1식=  |
|    | 100,000   | 6)어반브레이크아트아시아<br>100,000,000원*1식=  |
|    | 100,000   | 7)인천-아시아 아트쇼<br>100,000,000원*1식=   |
|    | 200,000   | 8)코리아웨딩<br>200,000,000원*1식=  |
|    | 200,000   | 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br>50,000,000원*4건=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750,000 | 6.예술과기술융합지원(구.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br>(39,300,000원*70건)-1,000,000원=                |
|          | 960,000   | 7.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br>10,000,000원*96건=   |
|          | 960,000   | 8.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br>30,000,000원*32건=  |
| [320-09] | 188,492   | 고용부담금  |
|          | 13,920    | 1.문학창작육성   |
|          | 6,960     | 가.문학주간운영<br>36,960,000원*18.88%-18,000원=                                    |
|          | 6,960     | 나.문학광장운영<br>36,960,000원*18.88%-18,000원=                                    |
|          | 21,200    | 2.시각예술창작육성   |
|          | 21,2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4,222    | 1)아르코미술관기획프로그램<br>73,920,000원*18.88%+266,000원=                             |
|          | 6,978     | 2)인사미술공간운영<br>36,960,000원*18.88%=  |
|          | 153,372   | 3.공연예술창작육성   |
|          | 55,860    | 가.공연예술창작산실<br>295,680,000원*18.88%+36,000원=                                 |
|          | 14,280    | 나.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구.공연장대관료지원+공연예술<br>특성화극장 통합합)<br>73,920,000원*18.88%+324,000원= |
|          | 83,232    | 다.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br>443,968,000원*18.88%-589,158원=                    |
| [420]    | 19,000    | 건설비  |
| [420-03] | 19,000    | 공사비  |
|          | 19,000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 19,0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19,000    | 1)아르코미술관 운영관리 - 미술관 노후 시설개선<br>19,000,000원*1식=                             |
| [430]    | 79,000    | 유형자산   |
| [430-01] | 79,000    | 자산취득비  |
|          | 40,000    | 1.시각예술창작육성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00     | 가.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
|          | 40,000     | 1)아르코미술관 운영관리 - 전시 및 시설 물품 구입<br>10,000,000원*4식= |
|          | 39,000     | 2.공연예술창작육성                                       |
|          | 39,000     | 가.공연예술공간지원(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지원)                         |
|          | 29,000     | 1)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
|          | 10,000     | 가)업무용 데스크탑 PC 구입<br>1,000,000원*10대=              |
|          | 17,000     | 나)업무용 SW(백신, MS OFFICE 등) 구입<br>17,000,000원*1식=  |
|          | 1,000      | 다)레이저프린터 구입<br>1,000,000원*1대=                    |
|          | 1,000      | 라)업무용 노트북 구입<br>1,000,000원*1대=                   |
|          | 10,000     | 2)기타 업무용 기기 구입                                   |
|          | 5,000      | 가)업무용 가구 구입<br>5,000,000원*1식=                    |
|          | 5,000      | 나)문화공간 운영 기기 구입<br>5,000,000원*1식=                |
| [301]    | 21,672,000 | 예술인력 육성  |
| [110]    | 707,671    | 인건비  |
| [110-03] | 704,071    | 상용임금   |
|          | 281,568    | 1.차세대예술가육성                                       |
|          | 175,980    | 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5명*12개월=    |
|          | 105,588    | 나.무대예술전문교육                                       |
|          | 70,392     | 1)사업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2명*12개월=               |
|          | 35,196     | 2)사업운영인력(온라인과정) 보수<br>2,933,000원*1명*12개월=        |
|          | 422,503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105,588    | 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3명*12개월= |
|          | 140,784    | 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4명*12개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70,392    | 라.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시설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2명*12개월=     |
|          | 105,739   | 마. 예술가의집운영 사업운영인력 보수<br>2,933,000원*3명*12개월+151,000원= |
| [110-04] | 3,600     | 일용임금   |
|          | 3,600     | 1.차세대예술가육성   |
|          | 3,600     | 가. 무대예술전문교육 - 일용직 보수<br>45,000원*80일=                 |
| [210]    | 2,658,900 | 운영비  |
| [210-01] | 2,359,700 | 일반수용비  |
|          | 668,2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249,600   | 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          | 50,000    | 1)심의 운영비(심의 사례비, 물품구입비 등)<br>6,250,000원*4개분야*2회=     |
|          | 20,000    | 2)과정 운영비(그룹멘토링, 워크숍 사례비 등)<br>5,000,000원*4개분야=       |
|          | 5,000     | 3)행사비(사업설명회, 오리엔테이션 등)<br>2,500,000원*2회=             |
|          | 70,000    | 4)홍보비(매체광고, 영상사진기록(용역))<br>1,750,000*40건=            |
|          | 96,000    | 5)네트워킹프로그램 운영비(용역)<br>24,000,000원*4개프로그램=            |
|          | 8,600     | 6)중간, 최종발표 운영비<br>2,150,000원*4개분야=                   |
|          | 418,600   | 나. 무대예술전문교육  |
|          | 53,000    | 1)교육운영용역비(교재, 현수막, 케이터링 등)<br>2,650,000원*20회=        |
|          | 18,000    | 2)온라인홍보대행용역비<br>1,500,000원*12개월=                     |
|          | 7,000     | 3)소모품구입비<br>350,000원*20회=                            |
|          | 75,000    | 4)실습기기 임차비<br>5,000,000원*15회=                        |
|          | 2,000     | 5)교육기획자문사례비<br>100,000원*10명*2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31,400   | 6)강사사례비(주강사,보조강사,크루)<br>(((150,000원*12시간)+(100,000원*8시간))*20회)+(70,000원*20시간*2인*20회)+(130,000원*3회*3인*20회)= |
|    | 20,000    | 7)무대기술LAB 사업운영(전문서 번역 출간, 연구지원 등)<br>10,000,000원*2회=   |
|    | 13,000    | 8)기념품제작비<br>(20,000원*30인*20회)+(50,000원*20회)=   |
|    | 15,000    | 9)홍보물(인쇄물, 영상물)제작비<br>(10,000,000원*1식)+(5,000,000원*1식)=  |
|    | 48,200    | 10)온라인과정컨텐츠 및 장비유지보수 관리 용역비<br>4,016,667원*12개월=  |
|    | 36,000    | 11)아카데미무대예술분야 교육 운영비<br>3,000,000원*12개월=   |
|    | 1,691,500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276,750   | 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
|    | 160,000   | 1)연수단원 참여 성과관리   |
|    | 35,000    | 가) 연수단원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br>8,750,000원*4회=  |
|    | 125,000   | 다) 연수단원 평가 모니터링 추진<br>500,000원*250건=   |
|    | 116,750   | 2) 사업 운영 및 관리비   |
|    | 24,000    | 가) 지원심의 추진<br>4,000,000원*6개 장르=  |
|    | 6,750     | 나) 지원단체 노무 세무 컨설팅비<br>675,000원*10개월=   |
|    | 6,000     | 다) 단기인력 활용 수수료<br>3,000,000원*1인*2개월=   |
|    | 80,000    | 라) 온오프라인 잡마켓 추진<br>80,000,000원*1회=   |
|    | 130,720   | 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38,720    | 1)심사, 평가 운영비   |
|    | 23,000    | 가)심사위원 심사 사례비<br>2,300,000원*5인*2회=   |
|    | 15,720    | 나) 성과 워크숍운영비<br>15,720,000원*1회=  |
|    | 92,000    | 2)전문인력 참여 성과관리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32,000   | 가) 전문인력 참여도 평가 및 조사<br>200,000원*160건=                        |
|    | 60,000   | 나) 전문인력 맞춤형 교육운영비<br>10,000,000원*6회=                         |
|    | 400,000  | 다.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
|    | 300,000  | 1) 취창업 플랫폼 구축  |
|    | 300,000  | 가) 취창업 플랫폼 시스템 구축<br>300,000,000원*1식=                        |
|    | 100,000  | 2) 비대면 교육 및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                                     |
|    | 50,000   | 가) 프로그램 구성 설계비<br>50,000,000원*1식=                            |
|    | 34,000   | 나) 사업 홍보 및 마케팅<br>34,000,000원*1식=                            |
|    | 16,000   | 다) 사업설명회 및 결과발표회 개최<br>8,000,000원*2회=                        |
|    | 700,000  | 라. 예술기록물수집개방활용   |
|    | 604,000  | 1) 예술기록물 관리요원 인력지원   |
|    | 136,000  | 가) 전문요원 인건비 지원<br>3,400,000원*4명*10개월=                        |
|    | 468,000  | 나) 기술요원 인건비 지원<br>2,600,000원*18명*10개월=                       |
|    | 96,000   | 2) 온라인전시추진 및 사업운영  |
|    | 32,000   | 가) 온라인 전시 추진<br>32,000,000원*1식=                              |
|    | 30,000   | 나) 디지털 아카이브 저장소<br>30,000,000원*1식=                           |
|    | 34,000   | 다) 정보화기기 임차 및 복원보존용품 구입<br>100,000원*22명*10개월+12,000,000원*1식= |
|    | 45,180   | 마. 아르고예술인력개발원운영  |
|    | 11,520   | 1)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br>960,000원*12개월=                            |
|    | 15,370   | 2)소모품비(전기,기관,음향,녹음,교육공연장,청소 등)<br>768,500원*5종*4회=            |
|    | 3,600    | 3)임차기기 관리비<br>300,000원*12회=                                  |
|    | 14,690   | 4)창조관 숙소 및 강의실 관리비<br>1,469,000원*10개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38,850  | 바.예술가의집운영                           |
|          | 61,200   | 1)기획프로그램운영                          |
|          |          | 가)하우스콘서트                            |
|          | 36,000   | 3,000,000원*12회=                     |
|          |          | 나)예술나무라운지                           |
|          | 25,200   | 2,520,000원*10개월=                    |
|          | 21,500   | 2) 대관서비스운영                          |
|          |          | 가)보조인력지급수수료                         |
|          | 15,500   | 8,970원*8시간*18일*12개월-160원=           |
|          |          | 나)소모품비                              |
|          | 6,000    | 500,000원*12개월=                      |
|          |          | 3)자문위원회 및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               |
|          | 6,000    | 1,500,000원*4회=                      |
|          | 50,150   | 4)시설운영                              |
|          |          | 가)예술가의집 기기(정수기, 주차시스템, 대관기자재 등) 운영비 |
|          | 15,830   | 395,750원*4종*10개월=                   |
|          |          | 나)방법시스템 관리용역비                       |
|          | 11,520   | 320,000원*3개소*12개월=                  |
|          |          | 다)대관시설용 정보화기기 관리용역비                 |
|          | 12,000   | 3,000,000원*4회=                      |
|          |          | 라)소장품 보수비                           |
|          | 10,800   | 1,200,000원 *9개소=                    |
| [210-02] | 79,500   | 공공요금및제세                             |
|          | 3,6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 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전화료, 우편발송비 등        |
|          | 3,000    | 250,000원*12개월=                      |
|          |          | 나. 무대예술전문교육 - 홍보물 발송                |
|          | 600      | 150,000원*4개 과정=                     |
|          | 75,900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 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          | 75,000   | 1)컴퓨터 통신회선 사용료                      |
|          | 14,400   | 1,200,000원*12개월=                    |
|          |          | 2)기타 공과금(각종공과금, 보험료, 면허세 등)         |
|          | 18,000   | 1,500,000원*12개월=                    |
|          |          | 3)전기사용료                             |
|          | 42,600   | 3,550,000원*12개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900      | 나.예술가의집운영 - 자료집 우편발송비<br>1,000원*300개처*3회=                                  |
| [210-03] | 1,500    | 피복비  |
|          | 1,500    | 1.현장예술인력육성<br>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경비 및 미화원 근무복 구입<br>1,500,000원*1회=           |
| [210-04] | 29,200   | 급식비  |
|          | 29,2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br>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집체교육 급식비<br>6,000원*60명*11회+40,000원=          |
|          | 4,000    | 나.무대예술전문교육 - 집체교육 급식비<br>6,000원*42명*10회*10건=                               |
| [210-07] | 25,200   | 임차료  |
|          | 30,0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br>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사무용 PC, 기자재 대여 등<br>2,500,000원*12개월=        |
| [210-08] | 30,000   | 유류비  |
|          | 21,000   | 1.현장예술인력육성<br>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도시가스 사용료 및 연료구입<br>(650원*33,000㎡)-450,000원= |
| [210-09] | 21,000   | 시설장비유지비  |
|          | 130,000  | 1.현장예술인력육성<br>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          | 105,000  | 1)기자재 및 설비 유지관리비<br>가)전기실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br>3,500,000원*1회=                   |
|          | 33,700   | 나)기관실 기기유지 관리비<br>4,000,000원*1회=   |
|          | 3,500    | 다)노후배관 교체 공사비<br>3,000,000원*1회=  |
|          | 4,000    | 라)오,폐수처리장 등 유지관리비<br>140,000원*40대=   |
|          | 3,000    | 마)냉방기기 유지관리비<br>2,000,000원*1회=   |
|          | 5,600    |  |
|          | 2,000    |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0    | 바)공조설비 유지관리비<br>2,000,000원*2회=                 |
|    | 4,000    | 사)음향녹음실 설비유지비<br>1,000,000원*2종*2회=             |
|    | 2,600    | 아)소방시설 유지관리비<br>520,000원*5회=                   |
|    | 5,000    | 자)컴퓨터기기 유지비<br>500,000원*10개=                   |
|    | 4,000    | 2)건물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br>1,996,500원*2개 분야+7,000원=   |
|    | 3,000    | 3)교육용설비유지비(무대기계, 조명, 음향기기 등)<br>250,000원*12개월= |
|    | 2,500    | 4)전용회선 유지보수비<br>500,000원*5회=                   |
|    | 3,000    | 5)청사소독비<br>250,000원*12개월=                      |
|    | 3,000    | 6)폐기물처리비<br>1,500,000원*2회=                     |
|    | 6,000    | 7)물탱크청소비<br>3,000,000원*2회=                     |
|    | 7,200    | 8)개발원 조경비<br>600,000원*12개월=                    |
|    | 9,600    | 9)보안경비 시스템 유지비<br>800,000원*12개월=               |
|    | 5,000    | 10)홈페이지 유지비<br>5,000,000원*1회=                  |
|    | 4,000    | 11)보일러 세관 작업비<br>4,000,000원*1회=                |
|    | 5,000    | 12)실형무대 닥트 청소 및 보수<br>5,000,000원*1회=           |
|    | 18,000   | 13)차량유지비<br>18,000,000원*1식=                    |
|    | 1,000    | 14)실형무대 보일러 수선<br>1,000,000원*1회=               |
|    | 25,000   | 나.예술가의집운영                                      |
|    | 12,000   | 1)예술가의집 내외부 보수공사<br>3,000,000원*4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0    | 2)청사 내부소득<br>1,000,000원*4회=                    |
|          | 3,000    | 3)외곽 수목소득<br>750,000원*4회=                      |
|          | 3,000    | 4)화단식수조경관리<br>750,000원*4회=                     |
|          | 3,000    | 5)대관시설 유지보수<br>750,000원*4회=                    |
| [210-12] | 8,000    | 복리후생비  |
|          | 3,200    | 1.차세대예술가육성                                     |
|          | 2,000    | 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5명=    |
|          | 1,200    | 나.무대예술전문교육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3명=      |
|          | 4,800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1,200    | 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3명= |
|          | 1,600    | 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4명=   |
|          | 800      | 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2명= |
|          | 1,200    | 라. 예술가의집운영 - 사업운영인력 복리후생비<br>400,000원*3명=      |
| [220]    | 16,000   | 여비   |
| [220-01] | 7,000    | 국내여비   |
|          | 5,0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5,000    | 가.무대예술전문교육<br>100,000원*5명*10개월=                |
|          | 2,000    | 2. 현장예술인력육성                                    |
|          | 2,000    | 가.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br>100,000원*5명*4회=              |
| [220-02] | 9,000    | 국외업무여비   |
|          | 9,0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3,000    | 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국외여비<br>3,000,000원*1명=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6,000      | 나.무대예술전문교육 국외여비<br>6,000,000원*1명=          |
| [240]    | 11,500     | 업무추진비                                      |
| [240-01] | 11,500     | 사업추진비                                      |
|          | 9,5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2,500      | 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          | 1,500      | 1)아카데미 운영 활동비<br>150,000원*10개월=            |
|          | 1,000      | 2)심의회 의 진행비, 간담회비<br>100,000원*10회=         |
|          | 7,000      | 나.무대예술전문교육                                 |
|          | 3,000      | 1)현장전문가연수운영 활동비<br>200,000원*15개 과정=        |
|          | 4,000      | 2)아카데미 활동비<br>400,000원*10개월=               |
|          | 2,000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2,000      | 라.예술가의집운영 - 인문예술소통공간지원<br>200,000원*10개월=   |
| [310]    | 64,000     | 보전금  |
| [310-03] | 64,000     | 포상금  |
|          | 64,0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64,000     | 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문학분야 지원금<br>8,000,000원*8명=  |
| [320]    | 18,039,929 | 민간이전                                       |
| [320-01] | 17,165,000 | 민간경상보조                                     |
|          | 1,098,000  | 1.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958,000    | 가.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br>23,950,000원*40명=           |
|          | 50,000     | 나.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구생 주관 워크숍<br>10,000,000원*5회= |
|          | 90,000     | 다.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br>90,000,000원*1건=         |
|          | 16,067,000 | 2.현장예술인력육성                                 |
|          | 10,007,000 | 가.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9,791,000 | 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br>(1,820,000원*505명*10개월)+(1,500,000원*40명*10개월)=       |
|          | 216,000   | 2) 연수단원정규직고용전환장려금지급<br>900,000원*40명*6개월=                               |
|          | 2,700,000 | 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br>1,500,000원*180명*10개월=                                 |
|          | 1,760,000 | 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br>1,760,000,000원*1건=                                   |
|          | 1,000,000 | 라. 사람미술관전문인력지원<br>1,000,000,000원*1건=                                   |
|          | 600,000   | 마.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br>20,000,000원*25개+5,000,000원*20개=              |
| [320-02] | 742,000   | 민간위탁사업비  |
|          | 742,000   |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742,000   | 가. 창작뮤지컬아카데미   |
|          | 393,000   | 1)한예종 공동운영 아카데미<br>393,000,000원*1건=                                    |
|          | 349,000   | 2)DIMF 아카데미<br>349,000,000원*1건=  |
| [320-09] | 132,929   | 고용부담금  |
|          | 53,132    | 1.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          | 32,920    | 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175,980,000원*18.88%-305,000원=   |
|          | 20,212    | 나. 무대예술전문교육  |
|          | 13,567    | 1)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70,392,000원*18.88%+277,000원=                  |
|          | 6,645     | 2)사업운영인력(온라인과정)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35,196,000원*18.88%=                    |
|          | 79,797    | 2. 현장예술인력육성  |
|          | 19,462    | 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105,588,000원*18.88%-473,000원= |
|          | 26,896    | 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140,784,000원*18.88%+316,000원=   |
|          | 13,128    | 다.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70,392,000원*18.88%-162,000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0,311     | 라. 예술가의집운영   |
|          | 13,290     | 1)사업운영인력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70,392,000원*18.88%=                   |
|          | 7,021      | 2)사업운영인력 보수(비목전환) 퇴직총당금 및 제부담금<br>35,196,000원*18.88%+376,000원= |
| [420]    | 153,000    | 건설비  |
| [420-03] | 153,000    | 공사비  |
|          | 153,000    | 1.현장예술인력육성   |
|          | 153,000    | 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   |
|          | 59,000     | 1)시설유지보수 공사<br>59,000,000원*1식=                                 |
|          | 50,000     | 2)무대미술스튜디오 옥상 방수 등 공사<br>50,000,000원*1식=                       |
|          | 44,000     | 3)노후시설물 바톤 및 브릿지 철거공사<br>44,000,000원*1식=                       |
| [430]    | 21,000     | 유형자산   |
| [430-01] | 21,000     | 자산취득비  |
|          | 21,000     | 1.현장예술인력육성   |
|          | 15,000     | 가.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운영(교육환경 개선용 비품 구입 등)<br>5,000,000원*3식=             |
|          | 6,000      | 나.예술가의집운영 - 장비 및 비품 구입<br>2,000,000원*3식=                       |
| [305]    | 24,000,000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
| [320]    | 1,000,000  | 민간이전   |
| [320-01] | 1,000,000  | 민간경상보조   |
|          | 1,000,000  |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사업주관처 지원금<br>1,000,000,000원*1건=             |
| [450]    | 23,000,000 | 용자금  |
| [450-04] | 23,000,000 | 기타민간용자금  |
|          | 23,000,000 | 1.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용자지원금<br>23,000,000,000원*1식=                 |
| [1764]   | 18,819,000 | 지역문화예술진흥   |
| [300]    | 9,957,000  | 지역문화예술지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210]    | 246,000  | 운영비   |
| [210-01] | 146,000  | 일반수용비   |
|          | 48,000   | 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30,000   | 가.종합워크숍 개최<br>15,000,000원*2회=                           |
|          | 8,000    | 나.사업설명회 개최<br>1,600,000원*5개지역=                          |
|          | 10,000   | 다.전문가 공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br>2,000,000원*5회=                   |
|          | 98,000   | 2.아르코공공예술사업   |
|          | 10,000   | 가.심의위원 사례비<br>2,000,000원*5인=                            |
|          | 20,000   | 나.심의 및 부대행사 운영<br>5,000,000원*4회=                        |
|          | 6,000    | 다.사업 자문회의 운영<br>2,000,000원*3회=                          |
|          | 50,000   | 라.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운영<br>5,000,000원*10개월=                    |
|          | 12,000   | 마.공공미술 포털관리(IDC, 도메인, 인증서 등)<br>1,000,000원*12개월=        |
| [210-14] | 100,000  | 일반용역비   |
|          | 100,000  | 1.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지역문화지원사업 평가용역)<br>100,000,000원*1개 용역=      |
| [220]    | 9,000    | 여비  |
| [220-01] | 9,000    | 국내여비  |
|          | 8,000    | 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사업운영 점검 및 실태조사 출장비<br>100,000원*4명*20회=  |
|          | 1,000    | 2.아르코공공예술사업 - 평가심의 및 업무협의 출장비<br>100,000원*10회=          |
| [240]    | 5,000    | 업무추진비   |
| [240-01] | 5,000    | 사업추진비   |
|          | 4,000    | 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사업설명회 지역관계자 업무협의 진행비<br>20,000원*40명*5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000     | 2.아르코공공예술사업 - 업무협약 및 심의운영경비 등<br>20,000원*10명*5회= |
| [320]    | 3,570,000 | 민간이전   |
| [320-01] | 170,000   | 민간경상보조   |
|          | 170,000   | 1.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br>170,000,000원*1개 단체=              |
| [320-02] | 3,400,000 | 민간위탁사업비  |
|          | 3,400,000 | 1.아르코공공예술사업                                      |
|          | 2,000,000 | 가. 공공예술 사업지원(자율형)<br>200,000,000원*10개 사업=        |
|          | 200,000   | 나. 공공예술 사업지원(관리형)<br>50,000,000원*4개 사업=          |
|          | 100,000   | 다. 공공예술 연구지원<br>10,000,000원*10개 사업=              |
|          | 1,000,000 | 라. 공공예술 사업지원(주제형)<br>500,000,000원*2개 사업=         |
|          | 100,000   | 마. 공공예술 사업기반조성(공공미술포털 운영)<br>100,000,000원*1식=    |
| [330]    | 6,127,000 | 자치단체이전   |
| [330-01] | 6,127,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6,127,000 | 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br>6,127,000,000원*1식=              |
| [301]    | 8,862,000 | 예술의 관광자원화  |
| [320]    | 8,219,000 | 민간이전   |
| [320-01] | 8,219,000 | 민간경상보조   |
|          | 1,502,000 | 1.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          | 1,032,000 | 가. 경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br>1,032,000,000원*1개기관=           |
|          | 470,000   | 나. 전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br>470,000,000원*1개기관=             |
|          | 4,634,000 | 2.전통공연예술활성화(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주관)                       |
|          | 1,011,000 | 가. 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br>1,011,000,000원*1개기관=        |
|          | 1,104,000 | 나.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br>1,104,000,000원*1개기관=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151,000   | 다.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          | 493,000     | 1)한국민속예술축제<br>493,000,000원*1개기관=                          |
|          | 320,000     | 2)전국공물상설공연<br>320,000,000원*1개기관=                          |
|          | 321,000     | 3)전통예술복원및재현<br>321,000,000원*1개기관=                         |
|          | 741,000     | 4)전통연희활성화<br>741,000,000원*1개기관=                           |
|          | 276,000     | 5)신진국악실험무대<br>276,000,000원*1개기관=                          |
|          | 368,000     | 라.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구.<br>전통예술계기성행사지원)<br>368,000,000원*1개기관= |
|          | 2,083,000   | 3.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
|          | 370,000     | 가.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br>370,000,000원*1개기관=                     |
|          | 156,000     | 나.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br>156,000,000원*1개기관=                      |
|          | 644,000     | 다.서울아트마켓운영지원<br>644,000,000원*1개기관=                        |
|          | 393,000     | 라.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예술위 자체사업)<br>19,650,000원*20건=               |
|          | 520,000     | 마.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지원<br>520,000,000원*1개기관=             |
| [330]    | 643,000     | 자치단체이전  |
| [330-01] | 643,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471,000     | 1.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          | 471,000     | 가.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br>471,000,000원*1개지역=                      |
|          | 172,000     | 2.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          | 172,000     | 가.한국민속예술축제(자치)<br>(10,000,000원*16개지역)+(12,000,000원*1개지역)= |
| [1765]   | 188,817,000 | 예술향유기회 확대   |
| [300]    | 21,694,000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 [110]    | 700,778     | 인건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110-03] | 700,778   | 상용임금   |
|          | 36,96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36,960    | 가.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36,960    | 1)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인력<br>3,080,000원*1명*12개월=        |
|          | 221,760   |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221,760   | 가.예술나무운동   |
|          | 147,84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운영 인력<br>3,080,000원*4명*12개월=       |
|          | 73,920    | 2)예술요원제도운영 - 사업운영 인력<br>3,080,000원*2명*12개월=      |
|          | 442,058   | 3.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73,920    | 가.예술자료수집및보존 - 기획사업담당자 인건비<br>3,080,000원*2명*12개월= |
|          | 257,258   | 나.이용자서비스   |
|          | 174,506   | 1) 서초동 열람실 운영                                    |
|          | 147,840   | 가) 열람실 사서<br>3,080,000원*4명*12개월=                 |
|          | 8,832     | 나) 열람실 야간 운영 인건비<br>368,000원*2명*12개월=            |
|          | 17,834    | 다) 열람실 주말 운영 인건비<br>371,000원*4명*12개월+26,000원=    |
|          | 82,752    | 2) 대학로 분원 열람실 운영                                 |
|          | 73,920    | 가) 열람실 사서<br>3,080,000원*2명*12개월=                 |
|          | 8,832     | 나) 열람실 보조 인건비<br>368,000원*2명*12개월=               |
|          | 110,880   | 다.예술기록디지털서비스                                     |
|          | 110,880   | 1)미등록소장자료디지털화 운영 인건비<br>3,080,000원*3명*12개월=      |
| [210]    | 3,208,274 | 운영비  |
| [210-01] | 2,280,235 | 일반수용비  |
|          | 912,16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693,160   | 가.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280,000   | 1)문예연감및예술통계간행물발간                                 |

☎ : 061-1700-1765-300-210 : 문화예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향유기회 확대-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운영비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5,000   | 가)온라인채널 통합홍보 소식지 제작비(기획/디자인/편집)<br>7,500,000원*6회=       |
|    | 12,000   | 나)온라인채널 운영 광고마케팅 및 원고료<br>2,000,000원*6회=                |
|    | 12,000   | 다)독자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 경비<br>2,000,000원*6회=                   |
|    | 8,300    | 라)기관 홍보물 제작비<br>2,000,000원*4회+300,000원=                 |
|    | 137,700  | 마)문예연감 제작 및 발간(현황분석, 편람, 편집 등 용역비))<br>137,700,000원*1식= |
|    | 35,000   | 바)문예연감 발간 기획 및 운영(원고료, 성과발표, 원가계산 등)<br>35,000,000원*1식= |
|    | 30,000   | 사)연차보고서 발간<br>30,000,000원*1식=                           |
|    | 206,600  | 2)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
|    | 94,600   | 가) 언론홍보용역<br>94,600,000원*1식=                            |
|    | 14,000   | 나) 홍보기념품 구매<br>14,000,000원*1식=                          |
|    | 26,000   | 다) 기관 홍보 간행물<br>26,000,000원*1식=                         |
|    | 30,000   | 라) 기관 뉴스 구독 및 스크랩<br>30,000,000원*1식=                    |
|    | 22,000   | 마) 기자간담회 등 기관행사<br>22,000,000원*1식=                      |
|    | 20,000   | 바) 기관 홍보 시설 관리비<br>20,000,000원*1식=                      |
|    | 206,560  | 3)예술정보컨설팅 서비스   |
|    | 172,000  | 가)예술정보 콜센터 운영(용역비)<br>172,000,000원*1식=                  |
|    | 4,560    | 나)홍보 및 자료 제작비<br>4,560,000원*1식=                         |
|    | 30,000   | 다)해외예술지원정보 서비스<br>30,000,000원*1식=                       |
|    | 219,000  | 나.예술지원정책지원  |
|    | 89,000   | 1)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0,000   | 가)정책용역심의 자문사례비<br>200,000원*5인*10회=                              |
|    | 40,000   | 나)조사분석 사례비<br>500,000원*5인*16건=                                  |
|    | 14,000   | 다)자료구입 및 제작비<br>1,400,000원*10개월=                                |
|    | 25,000   | 라)정책 심포지엄 등 개최비<br>25,000,000원*1회=                              |
|    | 130,000  | 2)정책사업모니터링평가(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평가)                                    |
|    | 130,000  | 가)정책사업모니터링평가<br>2,600,000원*50개=                                 |
|    | 848,810  | 2.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848,810  | 가.예술나무운동  |
|    | 577,40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153,500  | 가)문화예술기부활성화 캠페인<br>153,500,000원*1식=                             |
|    | 216,000  | 나)후원자개발및사업운영<br>18,000,000원*12개월=                               |
|    | 207,900  | 다)후원자 관리 예우<br>13,860원*5,000인*3건=                               |
|    | 100,000  | 2)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운영<br>2,000,000원*5인*10회=                         |
|    | 40,000   | 3)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 홍보 및 인증식<br>500,000원*5인*16건=               |
|    | 131,410  | 4)예술요원제도 사업운영<br>10,950,833원*12개월=                              |
|    | 519,265  | 3.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326,880  | 가.예술자료수집및보존   |
|    | 67,900   | 1) 자료수집(구입 및 수증)(구독료, 사례비, 운송비, 보존용품 구입 등)<br>3,395,000원*20회=   |
|    | 84,000   | 2) 영상 제작 사업 운영(제작비, 사례비 등)<br>2,000,000원*42편=                   |
|    | 174,980  | 3)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운영(제작비, 사례비, 매체변환비, 소모품 구입 등)<br>17,498,000원*10회= |
|    | 164,263  | 나.이용자서비스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35,212   | 1) 열람실 운영(서초동/대학로 열람실 환경개선, 유지비, 소모품 구입 등)<br>3,521,200원*10개월=      |
|          | 113,051  | 2) 예술정보서비스운영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br>11,305,100원*10개월=                      |
|          | 16,000   | 3) 예술강좌 운영(사례비, 교재제작, 소모품 구입 등)<br>8,000,000원*2회=                   |
|          | 28,122   | 다.예술기록디지털서비스  |
|          | 28,122   | 1) 미정리 및 미등록 소장자료 디지털화(사례비, 구입비, 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운영<br>13,203*2,130건= |
| [210-02] | 18,639   | 공공요금및제세   |
|          | 8,44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7,440    | 가.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7,440    | 1)예술정보컨설팅 서비스 - 인터넷 전화 및 기업데이터 이용<br>620,000원*12월=                  |
|          | 1,000    | 나.예술지원정책지원  |
|          | 1,000    | 1)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택배 등 우편물 발송<br>10,000원*10회*10개월=                  |
|          | 10,199   | 2.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10,199   | 가.이용자서비스(인터넷전용회선, ADSL사용료 납부 등)<br>1,019,900원*10월=                  |
| [210-07] | 599,000  | 임차료   |
|          | 5,00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5,000    | 가.예술지원정책지원  |
|          | 5,000    | 1)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공청회,세미나 개최 장소 임차료<br>2,500,000원*2회=               |
|          | 594,000  | 2.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594,000  | 가.서초동열람실운영 - 예술의전당 임차료<br>49,500,000원*12월=                          |
| [210-09] | 300,000  | 시설장비유지비   |
|          | 300,000  | 1.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300,000  | 가.서초동열람실운영 - 관리비(전기세 및 환경부담금 포함)<br>25,000,000원*12월=                |
| [210-12] | 10,400   | 복리후생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00      |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400      | 가. 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400      | 1) 예술가치 확산 및 지원 정책 홍보 인력<br>400,000원*1명=                 |
|          | 2,400    |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2,400    | 가. 예술나무운동  |
|          | 1,600    | 1)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 운영 인력<br>400,000원*4명=                    |
|          | 800      | 2) 예술요원제도 운영<br>400,000원*2명=                             |
|          | 7,600    | 3.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예술기록원 운영)                               |
|          | 800      | 가. 예술자료수집 및 보존 - 기획사업 담당자 인건비<br>400,000원*2명=            |
|          | 5,600    | 나. 이용자 서비스(서초동 및 대학로 열람실 운영)<br>400,000원*14명=            |
|          | 1,200    | 다. 예술기록 디지털 서비스 - 미등록 소장 자료 디지털화<br>400,000원*3명=         |
| [220]    | 41,000   | 여비   |
| [220-01] | 16,000   | 국내여비   |
|          | 8,000    |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8,000    | 가. 예술지원정책지원  |
|          | 8,000    | 1) 예술지원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br>100,000원*5명*16회=                |
|          | 8,000    |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8,000    | 가. 예술나무운동  |
|          | 8,000    | 1)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 추진 여비<br>200,000원*10건*4명=                |
| [220-02] | 25,000   | 국외업무여비   |
|          | 25,000   | 1.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25,000   | 가. 예술지원정책지원  |
|          | 25,000   | 1) 예술지원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 현지조사 및 출장비용<br>2,500,000원*2명*5회= |
| [240]    | 23,000   | 업무추진비  |
| [240-01] | 23,000   | 사업추진비  |

☎ : 061-1700-1765-300-240 : 문화예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향유기회 확대-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업무추진비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4,00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12,000   | 가.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6,000    | 1)문화예술간행물발간               |
|          |          | 가)업무추진 활동비(웹진)            |
|          | 3,600    | 300,000원*12개월=            |
|          |          | 나)통계자료 자문회의비(통계)          |
|          | 1,100    | 220,000원*5회=              |
|          |          | 다)업무추진 활동비(문예연감)          |
|          | 1,300    | 20,000원*10명*6회+100,000원=  |
|          | 6,000    | 2)문화예술홍보                  |
|          |          | 가)기부금 모금기관 간담회            |
|          | 2,500    | 500,000원*5회=              |
|          |          | 나)민간지원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2,500    | 25,000원*50명*2회=           |
|          |          | 다)기자 간담회                  |
|          | 1,000    | 25,000원*40명=              |
|          | 2,000    | 나.예술지원정책지원                |
|          |          | 1)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          | 2,000    | 20,000원*10명*10회=          |
|          | 5,000    | 2.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5,000    | 가.예술나무운동                  |
|          | 5,00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 가)후원자 개발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
|          | 1,000    | 10,000원*10명*10회=          |
|          |          | 나)예술나무 포럼 운영 간담회          |
|          | 1,000    | 20,000원*10명*5회=           |
|          |          | 다)예술나무운동 간담회              |
|          | 1,500    | 15,000원*10명*10회=          |
|          |          | 라)협력사업 관계자 간담회            |
|          | 1,500    | 15,000원*10명*10회=          |
|          | 4,000    | 3.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 가.예술자료수집및보존(영상제작, 구술채록 등) |
|          | 4,000    | 20,000원*5명*40회=           |
| [260]    | 530,340  | 연구용역비                     |
| [260-01] | 530,340  | 일반연구비                     |
|          | 358,00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358,000    | 가.예술지원정책지원   |
|          | 258,000    | 1)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 예술정책조사연구용역<br>21,500,000원*12개 과제=        |
|          | 100,000    | 2)예술정책실행력제고 평가 용역<br>100,000,000원*1식=                      |
|          | 172,340    | 2.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172,340    | 가.미등록 소장자료 입력 및 디지털화 - 소장자료 DB구축<br>용역비<br>8,617원*20,000건= |
| [310]    | 11,948,000 | 보전금  |
| [310-04] | 11,948,000 | 기타보전금  |
|          | 11,847,00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11,847,000 | 가.기부금사업(조건부기부금)<br>23,694,000원*500건=                       |
|          | 101,000    | 2.원로문예인복지지원<br>7,200,000원*14명+200,000원=                    |
| [320]    | 5,165,307  | 민간이전   |
| [320-01] | 4,553,000  | 민간경상보조   |
|          | 203,00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203,000    | 가.예술지원정책지원   |
|          | 203,000    | 1)공연예술조사<br>203,000,000원*1식=                               |
|          | 4,350,000  | 2.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350,000    | 가.예술나무운동   |
|          | 200,000    | 1)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br>20,000,000원*10건=                           |
|          | 150,000    | 2)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관인증<br>30,000,000원*5건=                       |
|          | 4,000,000  | 나.민간후원활성화지원  |
|          | 3,900,00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기업과예술의만남활성화)<br>3,900,000,000원*1식=             |
|          | 100,000    | 2)문화예술기부활성화(문화로인사합시다)<br>100,000,000원*1식=                  |
| [320-02] | 480,000    | 민간위탁사업비  |
|          | 480,000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061-1700-1765-300-320 : 문화예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향유기회 확대-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민간이전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80,000  | 가.예술나무운동  |
|          | 400,000  | 1)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양성<br>400,000,000원*1개기관=                              |
|          | 80,000   | 2)후원매개단체및후원우수기관인증 용역<br>80,000,000원*1식=                           |
| [320-09] | 132,307  | 고용부담금   |
|          | 7,040    | 1.예술정책실행력제고   |
|          | 7,040    | 가.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 7,040    | 1)예술가치확산및지원정책홍보 인력 퇴직총담금 및<br>제부담금<br>36,960,000원*18.88%+62,000원= |
|          | 42,030   | 2.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          | 42,030   | 가.예술나무운동  |
|          | 28,074   | 1)문화예술기부활성화 사업운영 인력<br>147,840,000원*18.88%+162,000원=              |
|          | 13,956   | 2)예술요원제도운영<br>73,920,000원*18.88%=                                 |
|          | 83,237   | 3.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13,956   | 가.예술자료수집및보존   |
|          | 13,956   | 1)기획사업담당자 인건비<br>73,920,000원*18.88%=                              |
|          | 48,347   | 나.이용자서비스  |
|          | 32,947   | 1)서초동 열람실 운영<br>174,506,000원*18.88%=                              |
|          | 15,400   | 2)대학로 분원 열람실 운영<br>82,752,000원*18.88%-224,000원=                   |
|          | 20,934   | 다.예술기록디지털서비스  |
|          | 20,934   | 1)미등록소장자료디지털화<br>110,880,000원*18.88%=                             |
| [430]    | 77,301   | 유형자산  |
| [430-01] | 77,301   | 자산취득비   |
|          | 77,301   | 1.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기록원운영)  |
|          | 50,000   | 가.예술자료수집및보존(구입 및 수증)<br>50,000원*1,000건=                           |
|          | 22,301   | 나.이용자서비스(열람실 운영,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등)<br>1,115,050원*20대=                 |

☎ : 061-1700-1765-300-430 : 문화예술-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예술향유기회 확대-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유형자산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5,000       | 다.예술기록디지털서비스<br>1,000,000원*5대=                         |
| [301]    | 167,123,000 | 문화예술향유 지원  |
| [110]    | 618,703     | 인건비  |
| [110-03] | 606,523     | 상용임금   |
|          | 210,120     | 1.통합문화이용권  |
|          | 185,400     | 가.사업관리및운영인력 급여<br>3,090,000원*5명*12월=                   |
|          | 24,720      | 나.사업관리및운영인력 경영평가 성과급<br>185,400,000원/12월*160%=         |
|          | 396,403     | 2.신나는예술여행  |
|          | 174,000     | 가.사업관리인력<br>2,900,000원*5명*12개월=                        |
|          | 222,403     | 나.사업운영인력<br>2,648,000원*7명*12개월-29,000원=                |
| [110-04] | 12,180      | 일용임금   |
|          | 9,180       | 1.통합문화이용권 - 사무보조 인력<br>60,000원*6명*25.5일=               |
|          | 3,000       | 2.신나는예술여행 - 사무보조 인력<br>60,000원*5명*10일=                 |
| [210]    | 2,463,217   | 운영비  |
| [210-01] | 2,455,417   | 일반수용비  |
|          | 1,900,000   | 1.통합문화이용권  |
|          | 21,000      | 가.워크숍 개최(자료집 제작 등 행사운영 경비)<br>5,250,000원*4회=           |
|          | 20,000      | 나.사업성과평가비(이용자만족도 조사, 종합분석 및 보고서 제작)<br>20,000,000원*1식= |
|          | 845,000     | 다.홈페이지 운영  |
|          | 57,600      | 1)나눔티켓   |
|          | 36,000      | 가)시스템 유지보수·운영비<br>3,000,000원*12개월 =                    |
|          | 15,600      | 나)개인정보보호 보완구축비<br>1,300,000원*12개월 =                    |
|          | 6,000       | 다)위치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비<br>500,000원*12개월 =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787,400  | 2)통합문화이용권                |
|    |          | 가)개인정보보호보완 등 시스템 구축비     |
|    | 136,300  | 136,300,000원*1식=         |
|    |          | 나)웹사이트 기능개선              |
|    | 30,000   | 30,000,000원*1식=          |
|    |          | 다)핸드폰 인증서비스 및 발송료        |
|    | 15,600   | 1,300,000원*12개월=         |
|    |          | 라)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           |
|    | 308,000  | 25,666,333원*12개월+4,000원= |
|    |          | 마)IDC공간임차 및 기타 소프트웨어 이용료 |
|    | 51,500   | 4,292,000원*12개월-4,000원=  |
|    |          | 바)노후서버교체                 |
|    | 136,000  | 136,000,000원*1식=         |
|    |          | 사)자동충전 ARS 구축비용          |
|    | 110,000  | 110,000,000원*1식=         |
|    | 302,000  | 라.홍보 비용                  |
|    |          | 1)포스터,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
|    | 31,800   | 400원*39,750부*2회=         |
|    |          | 2)문자안내 서비스               |
|    | 114,200  | 30원*3,806,667건=          |
|    |          | 3)전국단위 홍보 제작 및 송출비       |
|    | 156,000  | 156,000,000원*1식=         |
|    | 712,000  | 마. 사업운영지원                |
|    |          | 1)가맹점관리                  |
|    | 24,000   | 1,200원*20,000부=          |
|    |          | 2)고객지원센터운영               |
|    | 688,000  | 688,000,000원*1식=         |
|    | 555,417  | 2.신나는예술여행                |
|    |          | 가.심의 운영비                 |
|    | 188,800  | 23,600,000원*8식=          |
|    |          | 나.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
|    | 252,377  | 252,377,000원*1식=         |
|    | 23,600   | 다.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
|    |          | 1)사업설명회 및 워크숍            |
|    | 20,000   | 5,000,000원*4회=           |
|    |          | 2)사업모니터링 워크숍             |
|    | 3,600    | 1,800,000원*2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82,000     | 라.홍보   |
|          | 34,000     | 1)홍보물 제작 및 홍보매체 활용비<br>34,000,000원*1식=       |
|          | 48,000     | 2)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보수<br>4,000,000원*12월=          |
|          | 8,640      | 마.사무용 컴퓨터 임차료<br>120,000원*6대*12개월=           |
| [210-02] | 1,000      | 공공요금및제세                                      |
|          | 1,000      | 1.통합문화이용권                                    |
|          | 1,000      | 가.우편발송비<br>500원*2,000개처=                     |
| [210-12] | 6,800      | 복리후생비  |
|          | 5,000      | 1.통합문화이용권 -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등)<br>1,000,000원*5명= |
|          | 1,800      | 2.신나는예술여행 -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등)<br>360,000원*5명=   |
| [220]    | 37,000     | 여비   |
| [220-01] | 37,000     | 국내여비   |
|          | 18,000     | 1.통합문화이용권<br>100,000원*3명*60회=                |
|          | 19,000     | 2.신나는예술여행<br>100,000원*10명*19회=               |
| [240]    | 22,000     | 업무추진비  |
| [240-01] | 22,000     | 사업추진비  |
|          | 8,000      | 1.통합문화이용권                                    |
|          | 3,200      | 가.회의 진행비<br>50,000원*16회*4분기=                 |
|          | 4,800      | 나.업무협의 간담회비<br>20,000원*10명*24회=              |
|          | 14,000     | 2.신나는예술여행                                    |
|          | 10,000     | 가.회의 진행비<br>50,000원*10명*20회=                 |
|          | 4,000      | 나.업무협의 간담회비<br>20,000원*10명*20회=              |
| [320]    | 40,082,080 | 민간이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320-01] | 40,004,000  | 민간경상보조                                    |
|          | 23,204,000  | 1.신나는예술여행<br>92,816,000원*250개 예술단체=       |
|          | 16,800,000  | 2.방방곡곡문화공감<br>16,800,000,000원*1식=         |
| [320-09] | 78,080      | 고용부담금                                     |
|          | 42,700      | 1.통합문화이용권                                 |
|          | 17,500      | 가.사업관리인력 퇴직금 총당금<br>210,000,000원*1/12=    |
|          | 25,200      | 나.사업관리인력 제부담금<br>210,000,000원*12%=        |
|          | 35,380      | 2.신나는예술여행                                 |
|          | 14,500      | 가.사업관리인력 퇴직금 총당금<br>174,000,000원*1/12=    |
|          | 20,880      | 나.사업관리인력 제부담금<br>174,000,000원*12%=        |
| [330]    | 123,900,000 | 자치단체이전                                    |
| [330-01] | 123,900,000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123,900,000 | 1.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br>100,000원*1,770,000명*70%= |
| [8900]   | 7,800,000   | 기금간거래                                     |
| [8999]   | 7,800,000   | 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
| [840]    | 7,800,000   |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
| [610]    | 7,800,000   | 전출금등                                      |
| [610-03] | 7,800,000   | 기금전출금                                     |
|          | 7,800,000   | 1.복권기금 전출(반환금)<br>7,800,000,000원*1식=      |
| [065]    | 214,608,000 | 문화및관광일반                                   |
| [7200]   | 21,565,000  | 기금운영비                                     |
| [7276]   | 21,565,000  |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
| [100]    | 12,124,000  | 인건비(문예)                                   |
| [110]    | 12,124,000  | 인건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110-01] | 11,970,445 | 보수   |
|          | 345,699    | 1.임원 연봉  |
|          | 125,241    | 가.위원장<br>125,241,371원=                             |
|          | 100,193    | 나.감사<br>100,193,097원=                              |
|          | 117,148    | 다.사무처장<br>117,147,649원=                            |
|          | 3,117      | 라.처우개선<br>342,582,116원*0.91%=                      |
|          | 8,060,024  | 2.직원 기본연봉  |
|          | 332,736    | 가.1급(4명)<br>6,931,997원*4명*12개월=                    |
|          | 713,999    | 나.2급(9명)<br>6,611,106원*9명*12개월=                    |
|          | 1,096,272  | 다.3급(15명)<br>6,090,397원*15명*12개월+1,000원=           |
|          | 1,455,614  | 라.4급(25명)<br>4,852,047원*25명*12개월=                  |
|          | 1,773,184  | 마.5급(39명)<br>3,518,222원*42명*12개월=                  |
|          | 1,647,599  | 바.6급(46명)<br>2,802,039원*49명*12개월=                  |
|          | 121,810    | 사.7급(5명)<br>2,030,163원*5명*12개월=                    |
|          | 808,468    | 아.무기계약직(22명)<br>2,807,180원*24명*12개월=               |
|          | 72,342     | 자.처우개선<br>7,949,681,304원*0.91%=                    |
|          | 38,000     | 차.신규 인력증원(2명)<br>3,166,700원*2명*6개월=                |
|          | 446,801    | 3. 내부평가급   |
|          | 446,801    | 가.직원내부평가급<br>(8,060,023,000원+876,000,000원)/12*60%= |
|          | 261,688    | 4.경영평가 성과급   |
|          | 82,968     | 가.임원<br>345,699,000원*24%=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78,720   | 나.직원<br>(8,060,023,000원+876,000,000원)/12*60%*40%=                           |
|          | 876,000   | 5.직무급   |
|          | 56,400    | 가.본부장(5명)<br>(1,200,000*2명*12월)+(1,150,000원*2명*12월)=                        |
|          | 206,400   | 나.부서장(16명)<br>(900,000원*6명*12월)+(850,000원*12명*12월)+(800,000원*<br>다.직원(144명) |
|          | 613,200   | (360,000원*26명*12월)+(340,000원*119명*12월)+(320,000                             |
|          | 112,104   | 6.가족수당  |
|          | 58,128    | 가.배우자<br>40,000원*173명*0.70*12월=   |
|          | 53,976    | 나.기타<br>20,000원*173명*1.30*12월=  |
|          | 128,361   | 7.초과근무수당  |
|          | 67,020    | 가.시간외근무수당<br>8,936,023,000원*1.5/209*1.45-25,974,000원=                       |
|          | 61,341    | 나.휴일근무수당<br>8,936,023,000원*1.5/209*1h-2,793,000원=                           |
|          | 843,545   | 8.임·직원 퇴직총당금<br>10,122,543,000원/12=   |
|          | 314,136   | 9.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br>10,384,231,000원*3.50%-49,500,000원+188,000원=               |
|          | 417,290   | 10.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br>10,384,231,000원*4.50%-50,000,000원=                       |
|          | 105,763   | 11.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br>10,384,231,000원*1.5%-50,000,000원=                        |
|          | 59,034    | 12.산재보험 사업자 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포함)<br>10,384,231,000원*1.05%-50,000,000원=            |
| [110-05] | 153,555   | 연가보상비   |
|          | 153,555   | 1.연차보상수당<br>8,023,248,750원*1/12*1/209*8h*6일=                                |
| [200]    | 7,223,000 | 기관운영비(문예)   |
| [110]    | 1,013,600 | 인건비   |
| [110-03] | 1,006,000 | 상용임금  |
|          | 703,094   | 1.무기계약직 기본연봉(7명)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699,600   | 가.기본연봉<br>2,650,000원*22명*12월=                                |
|          | 3,494     | 나.처우개선<br>699,600,000원*0.4995%-1,000원=                       |
|          | 89,760    | 2.무기계약직 직무급(22명)<br>340,000원*22명*12월=                        |
|          | 26,400    | 3.무기계약직 초과근무수당(22명)<br>100,000원*22명*12월=                     |
|          | 12,672    | 4.무기계약직 가족수당   |
|          | 7,392     | 가.배우자<br>40,000원*22명*0.7*12월=                                |
|          | 5,280     | 나.기타<br>20,000원*22명*1.0*12월=                                 |
|          | 60,300    | 5.계약직 연봉   |
|          | 60,000    | 가.임원 비서 및 운전기사<br>2,500,000원*2명*12월=                         |
|          | 300       | 나.처우개선<br>62,400,000원*0.4995%-12,000원=                       |
|          | 59,721    | 6.무기계약직, 계약직 성과급   |
|          | 42,658    | 가.내부평가급<br>(703,095,000원+89,760,000원+60,300,000원)/12*60%=    |
|          | 17,063    | 나.경평성과급<br>(703,095,000원+89,760,000원+60,300,000원)/12*60%*40% |
|          | 43,200    | 7.체형형 청년인턴<br>1,800,000원*3명*8월=                              |
|          | 10,853    | 8.연차수당<br>850,567,000원/12/209*8*4일=                          |
| [110-04] | 7,600     | 일용임금   |
|          | 7,600     | 1.회계 업무 보조<br>50,000원*1명*152일=                               |
| [210]    | 5,587,820 | 운영비  |
| [210-01] | 1,224,000 | 일반수용비  |
|          | 50,000    | 1. 감사실 운영  |
|          | 16,000    | 가. 법률 등 감사자문위원 회의 수당<br>400,000원*4명*10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000    | 나. 감사 대외활동 협회 가입비<br>1,000,000원*2개처*1회=   |
|    | 23,000   | 다. (법정)회계감사 수수료<br>23,000,000원*1개처*1회=  |
|    | 5,000    | 라. 외부감사인 감사업무 사례비<br>100,000원*5명*10일=   |
|    | 4,000    | 마. 감사인 역량 진단 등 연구조사비<br>4,000,000원*1식*1회=   |
|    | 17,800   | 2. 반부패 및 청렴 업무  |
|    | 1,000    | 가. 청렴교육 강사사례비<br>500,000원*2회=   |
|    | 5,000    | 나. 신고사이트 운영비<br>5,000,000원*1식*1회=   |
|    | 5,400    | 다.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비(청렴문화제 등)<br>1,200,000원*2종 +3,000,000원*1회=                                    |
|    | 6,400    | 라.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사례비<br>400,000원*4명*4회=  |
|    | 241,000  |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  |
|    | 71,000   | 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소요(사례비, 속기사례비, 교통보전비 등)<br>(200,000원*14인*16회)+(150,000원*14인*12회)+1,000,000원 |
|    | 170,000  | 나. 소위원회 운영 소요(사례비 및 교통보전수당 등)<br>170,000원*10인*10개소위*10회=                                      |
|    | 51,600   | 4. 기금운용 업무  |
|    | 5,600    | 가. 자산운용위원회 운영비 및 사례비 지급(사례비, 장소이용료 등)<br>1,200,000원*4회+800,000원*1식=                           |
|    | 25,000   | 나.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용역 계약<br>25,000,000원*1식=  |
|    | 21,000   | 다. 2021년 자금운용 관련 소송비용 지급<br>21,000,000원*1식=   |
|    | 31,500   | 5. 국회 및 홍보 업무   |
|    | 10,000   | 가. 국회업무(국정감사 등) 소요(자료제작, 소모품 구입 등)<br>10,000,000원*1회=   |
|    | 7,500    | 나. 기관 홍보 대외협력물품 소요(기념품 등)<br>7,500,000원*1식=   |
|    | 12,000   | 다. 위원회 기획기사 소요(언론홍보비 등)<br>12,000,000원*1식=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000    | 라. 국회 및 홍보 업무 관련 교통비 소요<br>2,000,000원*1식=               |
|    | 22,600   | 6. 기획 및 기관 법무업무   |
|    | 2,000    | 가. 문체부, 국회 등 업무보고<br>2,000,000원*1식=                     |
|    | 10,000   | 나. 법적분쟁 조정 및 소송비용<br>10,000,000원*1식=                    |
|    | 10,600   | 다. 법률 자문 비용(연간 계약)<br>10,600,000원*1식=                   |
|    | 9,000    | 7. 예산 업무  |
|    | 6,000    | 가.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설명자료 책자인쇄(편집)<br>3,000,000원*2회=           |
|    | 3,000    |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업무 기타 경비(워크숍 등)<br>3,000,000원*1식=      |
|    | 19,300   | 8. 결산 및 세무 업무   |
|    | 6,000    | 가. 결산보고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II-1 인쇄비<br>3,000,000원*2회=      |
|    | 11,600   | 나. 법인세 세무조정 및 자문수수료<br>5,000,000원*1회+660,000원*10회=      |
|    | 1,700    | 다. 결산 관련 금융조회서,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br>50,000원*32개+5,000원*20개= |
|    | 14,000   | 9. 기록물 조사   |
|    | 10,000   | 가. 보유기록물 조사 및 문서고 정비 수수료<br>10,000,000원*1회=             |
|    | 4,000    | 나. 기록물 폐기 수수료<br>2,000,000원*2회=                         |
|    | 28,000   | 10. 대내 행사 비용  |
|    | 16,000   | 가. 임직원 워크숍 및 종무식<br>8,000,000원*2회=                      |
|    | 12,000   | 나. 명절 선물 비용(역대 임원, 시설용역 종사자 등)<br>6,000,000원*2회=        |
|    | 200,600  | 11. 시설 관리 및 기관 운영 수수료                                   |
|    | 60,000   | 가. 본관 소모품 구입 비용(청소용품 등)<br>5,000,000*12개월=              |
|    | 48,000   | 나. 편의시설 유지보수 비용(사택관리, 정수기, 커피머신 등)<br>4,000,000*12개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000    | 다.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수수료<br>500,000원*2회=                             |
|    | 1,000    | 라. 비상계획협의회, 소방안전관리자, 비상대비 워크숍<br>400,000원*2회+200,000원*1회=     |
|    | 5,600    | 마.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비(사례비, 장소이용료 등)<br>1,200,000원*4회+200,000원*4회=   |
|    | 15,000   | 바.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 수수료<br>15,000,000원*1식=                         |
|    | 70,000   | 사. 청사 종합관리<br>70,000,000원*1식=                                 |
|    | 35,000   | 12. 인사제도 및 노무   |
|    | 12,200   | 가. 성과평가제도 운영(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br>5,000,000원*1식+600,000원*12개월= |
|    | 10,000   | 나. 인사위원회 운영 사례비 및 속기비<br>300,000원*20회+500,000원*8회=            |
|    | 6,200    | 다. 연말정산 및 퇴직연금 운용 관리 수수료<br>6,200,000원*1식=                    |
|    | 6,600    | 라. 인사관련 노무 자문료<br>550,000원*12개월=                              |
|    | 22,500   | 13. 직원 채용   |
|    | 5,000    | 가. 채용시스템 사용대금<br>5,000,000원*1식=                               |
|    | 10,000   | 나. 심사위원 사례비 및 면접비 등<br>400,000원*20명+50,000원*40명=              |
|    | 7,500    | 다. 채용관련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br>500,000원*15회=                        |
|    | 100,000  | 14. 직원 교육   |
|    | 62,400   | 가. 기본교육 운영(계층교육, 공통교육, 법정 의무교육)<br>20,000원*240명*13과정=         |
|    | 32,000   | 나. 직무심화교육 운영<br>40,000원*80명*10과정=                             |
|    | 5,600    | 다.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비용<br>280,000원*20건=                          |
|    | 40,800   | 15. 임원 업무관리   |
|    | 32,400   | 가. 임원 및 사무처장 국내이동 운송수수료<br>2,500,000원*12개월+200,000*12개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8,400    | 나. 기관 대내외 경조사 꽃대금<br>700,000원*12개월=   |
|    | 27,000   | 16. 임직원 행사 비용   |
|    | 5,000    | 가. 퇴직 임직원 기념품 제작<br>500,000원*10명=   |
|    | 2,000    | 나. 간담회 장소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br>2,000,000원*1식=   |
|    | 20,000   | 다. 전사 경영워크숍 개최<br>10,000,000*2회=  |
|    | 23,000   | 17.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10,000   | 가. EAP 프로그램 운영<br>10,000,000*1식=  |
|    | 10,000   | 나. 직원 거주지 이전 지원<br>1,000,000*10명=   |
|    | 3,000    | 다 사내도서관 등 운영<br>3,000,000원*1식=  |
|    | 6,300    | 18. 예술극장 업무 관련 회의비 및 사례비  |
|    | 2,000    | 가. 자문회의 사례비<br>200,000원*5명*2회=  |
|    | 3,000    | 나. 무대/조명/음향 디자인 작성료<br>120,000원*25회=  |
|    | 1,300    | 다. 공연연습참관 및 심야공연 교통비 지원<br>20,000원*5명*12회+100,000원=                                 |
|    | 223,000  | 19. 예술극장 운영   |
|    | 70,000   | 가. 무대, 조명, 음향 운영 소모품<br>7,000,000원*10개월=  |
|    | 1,000    | 나. 소프트웨어(오토카드) 사용료<br>100,000원*10개월=  |
|    | 14,400   | 다. 사무용품(무대, 극장)<br>1,200,000원*12개월=   |
|    | 16,800   | 라. 위생용품(미화소모품 및 종량제봉투 등)<br>4,200,000원*4회=  |
|    | 33,600   | 마. 시설용품(램프, 전선, 잡자재 등)<br>2,800,000원*12회=   |
|    | 6,200    | 바. 소방용품(소화기 충전, 화재방지용품 등) 및<br>안전용품(제설, 안전장비, 방수의류 등)<br>3,000,000원*1식+800,000원*4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4,500     | 사. 전산용품<br>450,000원*10개월=                                  |
|          | 4,000     | 아. 각종자료집 제작 및 발송, 월간지 구독료<br>400,000원*10개월=                |
|          | 60,000    | 자. 정수기, 복사기, 프린터, 제습기 등 이용료<br>5,000,000원*12개월=            |
|          | 3,000     | 차. 생수 구입비<br>300,000원*10개월=                                |
|          | 500       | 카. 용역 유니폼 세탁 및 수선비<br>250,000원*2회=                         |
|          | 4,000     | 타.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br>2,000,000원*2회=                          |
|          | 5,000     | 파. 한문연 연회비<br>5,000,000*1회=                                |
|          | 61,000    | 20. 예술기록원 운영   |
|          | 14,000    | 가. 유지보수료(정수기, 보안시스템, 폐기물 처리 등)<br>1,400,000원*10개월=         |
|          | 6,000     | 나. 전문가 자문료(법률, 전문가 등)<br>200,000원*5인*6회=                   |
|          | 1,200     | 다. 학술 세미나, 포럼 개최(자료제작, 사례비 등)<br>150,000원*8회=              |
|          | 10,800    | 라. 사무용품 및 시설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br>900,000원*12개월=                 |
|          | 26,300    | 마. 온,오프라인 사업홍보 및 대외협력(홍보물 제작, 웹하드 운영 등)<br>2,630,000원*10회= |
|          | 1,500     | 바. 업무용 주차권<br>5,000원*25장*12개월=                             |
|          | 1,200     | 사. 업무용 자료 배송 및 교통비(수집 용달 등)<br>120,000원*10회=               |
| [210-02] | 1,864,000 | 공공요금및제세  |
|          | 1,390,000 |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          | 650,000   | 가. 재산세(건물,토지)<br>650,000,000원*1회=                          |
|          | 740,000   | 나. 종합부동산세<br>740,000,000원*1회=                              |
|          | 64,600    | 2. 기타 지방세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5,500    | 가.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br>5,000,000원*1회+100,000*5개소=                      |
|    | 57,000   | 나. 주민세(종업원분)<br>4,750,000원*12개월=                                      |
|    | 1,800    | 다.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br>1,000,000원*1회+400,000원*2회=                       |
|    | 300      | 라. 등록면허세<br>300,000원*1회=  |
|    | 600      | 3. 법인 및 부동산 등기부, 인감증명서 발급비<br>1,200원*50매*10회=                         |
|    | 147,600  | 4. 전기요금   |
|    | 66,000   | 가. 나주청사 전기요금<br>5,500,000원*12개월=                                      |
|    | 81,600   | 나.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전기요금<br>6,800,000*12개월=                              |
|    | 126,000  | 5. 통신요금   |
|    | 33,600   | 가. 나주청사 인터넷망 이용 및 통신요금<br>2,800,000원*12개월=                            |
|    | 90,000   | 나.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통신요금<br>7,500,000*12개월=                              |
|    | 2,400    | 다. 나주청사 우편요금<br>200,000원*12개월=  |
|    | 26,400   | 6. 상하수도 요금  |
|    | 5,400    | 가. 나주청사 상하수도 요금<br>450,000*12개월=                                      |
|    | 21,000   | 나.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상하수도 요금<br>1,750,000*12개월=                           |
|    | 36,900   | 7. 장애인 고용부담금<br>36,900,000*1회=  |
|    | 7,500    | 8. 보험료  |
|    | 4,000    | 가. 나주청사,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예술인력개발원<br>재산종합/사고배상 책임보험료<br>1,000,000원*4개소= |
|    | 3,500    | 나. 나주청사, 예술가의집 업무용 차량 자동차보험료<br>500,000원*7대=                          |
|    | 400      | 9. 안전관리 협회비 및 교육비<br>100,000원*2개차*2회=                                 |
|    | 57,000   | 10. 예술극장 운영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2,000   | 가. 건물화재/영업배상책임 보험료<br>6,000,000원*2개 극장=                         |
|          | 700      | 나. 업무용 승합차 보험료<br>700,000원*1대=                                  |
|          | 24,000   | 다. 전화요금<br>2,000,000원*12개월=                                     |
|          | 18,000   | 라. 인터넷 사용료<br>1,500,000원*12개월=                                  |
|          | 700      | 마. 우편료<br>60,000원*10개월+50,000원*2개월=                             |
|          | 600      | 바. 복사서비스 및 택배 이용료<br>50,000원*12개월=                              |
|          | 1,000    | 사. 무선기기 전파사용료<br>5,000원*4회*50대=                                 |
|          | 7,000    | 11. 예술기록원 운영  |
|          | 700      | 가. 업무용 승합차 보험료<br>700,000원*1대=                                  |
|          | 3,000    | 나. 집기 및 기자재, 이용자 상해보험료<br>3,000,000원*1회=                        |
|          | 1,500    | 다. 우편발송비(홍보물, 목록집)<br>125,000원*12개월=                            |
|          | 1,100    | 라. 각종 제세(자동차세 등) 및 공과금<br>275,000원*4회=                          |
|          | 700      | 마. 각종 협회비(도서관협회, 시브마스 등)<br>700,000원*1회=                        |
| [210-03] | 7,000    | 피복비   |
|          | 4,100    | 1. 청사 관리직원 근무복  |
|          | 800      | 가. 수위복<br>200,000원*2명*2회=                                       |
|          | 3,300    | 나. 작업복<br>118,000원*28명-4,000원=                                  |
|          | 2,900    | 2. 예술극장 운영  |
|          | 2,900    | 가. 근무복<br>100,000원*29명=   |
| [210-05] | 4,820    | 특근매식비   |
|          | 4,820    | 1.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및 을지훈련 근무자 매식비<br>8,000원*6명*8회*12개월+212,000원=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210-07] | 161,000  | 임차료  |
|          | 68,000   | 1. 주말 왕복 셔틀버스 임차<br>17,000,000원*4분기=               |
|          | 32,400   | 2. 업무용 차량 리스 운용<br>2,700,000원*12월=                 |
|          | 14,400   | 3. 나주청사 공기청정기 임차<br>1,200,000원*12월=                |
|          | 30,000   | 4. 나주청사 사무기기(복합기, 팩스, 노트북 등) 임차<br>2,500,000원*12월= |
|          | 4,000    | 5. 신입직원(인턴) 채용 전형장소 등 임차<br>2,000,000원*2회=         |
|          | 12,200   | 6. 위원 및 사무처 워크숍 장소 등 임차<br>6,100,000원*2회=          |
| [210-08] | 87,000   | 유류비  |
|          | 73,560   | 1.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
|          | 13,560   | 가. 나주청사 지역난방 요금<br>1,130,000*12개월=                 |
|          | 60,000   | 나. 아르코미술관, 예술가의집 난방 도시가스 요금<br>5,000,000*12개월=     |
|          | 13,440   | 2. 업무용 차량 유류비                                      |
|          | 10,800   | 가. 나주청사 차량 5대<br>180,000원*5대*12개월=                 |
|          | 2,160    | 나. 예술가의집 차량 2대<br>90,000원*2대*12개월=                 |
|          | 480      | 다. 아르코예술기록원 차량 1대<br>40,000원*1대*12개월=              |
| [210-09] | 275,000  | 시설장비유지비  |
|          | 5,640    | 1. 승강기 유지 보수 비용<br>470,000원*12월=                   |
|          | 57,600   | 2. 시설 및 소방시설 보수 수리비<br>4,800,000원*12월=             |
|          | 20,000   | 3. 문화재정시설(예술가의집) 개보수 공사<br>20,000,000원*1식=         |
|          | 16,500   | 4. 방범시설 용역 유지비(나주청사)<br>1,375,000원*12월=            |
|          | 10,960   | 5. 시설 청소 및 소독 비용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6,760    | 가. 물탱크,저수조 청소 및 배관 보수(수질검사)<br>6,760,000원*1식=           |
|    | 4,200    | 나. 건물 본관 소독 비용<br>350,000*12월=                          |
|    | 5,500    | 6. 시설, 설비 개보수 및 소모품 구입<br>500,000원*11개월=                |
|    | 8,000    | 7. 소방시설 유지비<br>8,000,000원*1식=                           |
|    | 11,000   | 8. 등기구 교체비<br>10,000원*1,100개=                           |
|    | 9,600    | 9. 세척 및 소독  |
|    | 3,000    | 가. 정화조 세척소독<br>1,500,000원*2회=                           |
|    | 6,600    | 나. 에어컨 및 공조기 소독(약품)<br>6,600,000원*1회=                   |
|    | 81,000   | 10. 전기,기관실 관리운영   |
|    | 5,000    | 가. 전력비상확보자재구입<br>5,000,000원*1식=                         |
|    | 5,000    | 나. 대학로 시설 전기안전점검<br>5,000,000원*1회=                      |
|    | 1,500    | 다. 나주본사 전기안전점검<br>1,500,000원*1회=                        |
|    | 200      | 라. 보일러시설 안전점검<br>100,000원*2대=                           |
|    | 10,000   | 마. 발전기 수리 및 보수(특고압발전기노후수리)<br>5,000,000원+2,500,000원*2회= |
|    | 7,200    | 바. 전력안전관리비(나주청사)<br>600,000원*12월=                       |
|    | 20,100   | 사. 전화시스템유지 및 보수<br>1,675,000원*12월=                      |
|    | 400      | 아. 유압기기유기름<br>20,000원*20말=                              |
|    | 31,600   | 자. 냉난방시설유지비   |
|    | 3,000    | 1) 냉난방시설비<br>750,000원*2관*2회=                            |
|    | 3,200    | 2) 공조기보수비<br>1,600,000원*1관*2회=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800    | 3) 도시가스 전용정압기<br>2,800,000원*1식=               |
|          | 8,000    | 4) 검사대상기기(보일러등)세관비<br>8,000,000원*1식=          |
|          | 8,000    | 5) 냉동기정비및세관비<br>8,000,000원*1식=                |
|          | 6,600    | 6) 노후장비및배관시설교체비<br>6,600,000원*1식=             |
|          | 7,200    | 11.업무용차량 수리 및 점검<br>100,000원*6대*12개월=         |
|          | 42,000   | 12. 예술기록원 운영                                  |
|          | 7,320    | 가. 환온환습기<br>610,000원*12개월=                    |
|          | 3,960    | 나. 전화 및 전기시설유지보수<br>330,000원*12개월=            |
|          | 26,520   | 다. 기타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br>2,210,000원*12개월=       |
|          | 4,200    | 라. 바닥 등 노후시설보수<br>2,100,000원*2식=              |
| [210-12] | 415,000  | 복리후생비   |
|          | 28,000   | 1.고등학생자녀 학비 보조금<br>500,000원*14명*4회=           |
|          | 7,980    | 2.대학생자녀 학자금이자 보조금<br>100,000,000원*8%-20,000원= |
|          | 3,600    | 3.직원 문예동호회 활동 지원<br>(100,000원*6개 동호회*6개월)=    |
|          | 15,720   | 4.직원 건강검진비(비정규직 포함)<br>120,000원*131명*1회=      |
|          | 54,900   | 5.직원 선택적복지 지원<br>450,000원*122명=               |
|          | 281,800  | 6.예술극장 운영                                     |
|          | 52,000   | 가. 직원 선택적복지<br>1,000,000원*52명=                |
|          | 3,600    | 나. 직원 동호회지원<br>100,000원*3개팀*12월=              |
|          | 218,200  | 다.4대보험 제부담금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14,960   | 1)임직원<br>2,388,444,444원*9%=                      |
|          | 3,240     | 2)무대기술 인턴<br>36,000,000원*9%=                     |
|          | 8,000     | 라.자녀학자금 보조<br>500,000원*4명*4분기=                   |
|          | 23,000    | 7.예술기록원 운영                                       |
|          | 2,280     | 가.건강진단비<br>120,000원*19명=                         |
|          | 16,720    | 나.직원 선택적복지<br>880,000원*19명=                      |
|          | 4,000     | 다.자녀 학비 지원금<br>500,000원*2명*4분기=                  |
| [210-15] | 1,538,000 | 관리용역비  |
|          | 1,538,000 | 1. 시설관리용역 위탁사업비                                  |
|          | 806,952   | 가. 미화 등<br>2,402,000원*28명*12개월-120,000원=         |
|          | 488,880   | 나. 경비<br>2,910,000원*14명*12개월=                    |
|          | 152,628   | 다. 주차<br>3,179,750원*4명*12개월=                     |
|          | 89,540    | 라. 부가세 등<br>89,540,000원=                         |
| [210-16] | 12,000    | 기타운영비  |
|          | 12,000    | 1. 위원장 등 기관장실 운영비<br>1,000,000원*12개월=            |
| [220]    | 77,011    | 여비   |
| [220-01] | 37,661    | 국내여비   |
|          | 37,661    | 1.임직원 국내 여비<br>100,000원*5명*6개부서*12개월+1,661,000원= |
| [220-02] | 39,350    | 국외업무여비   |
|          | 39,350    | 1.임직원 해외 업무여비<br>3,000,000원*13명+350,000원=        |
| [240]    | 153,469   | 업무추진비  |
| [240-01] | 46,549    | 사업추진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300    | 1. 감사 자료수집활동비<br>230,000원*10개월=            |
|    | 12,500   | 2. 위원회 운영                                  |
|    | 6,000    | 가. 위원회 전체회의 진행 및 간담회비<br>500,000원*12개월=    |
|    | 5,000    | 나. 소위원회 회의진행 및 간담회비<br>100,000원*10회*5개=    |
|    | 1,500    | 다. 자산운용/리스크관리위원회 자문회의<br>150,000*5회*2개=    |
|    | 3,500    | 3. 국회 업무                                   |
|    | 2,000    | 가. 정기 및 임시 국회 업무<br>10,000원*10명*20회=       |
|    | 1,500    | 나. 국정감사 관련 국회 업무<br>10,000원*15명*5회*2개월=    |
|    | 2,400    | 4. 기금운용계획 작성 등 예산 업무추진비<br>240,000원*10개월=  |
|    | 3,000    | 5. 외부접대 등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br>1,000,000원*3회=  |
|    | 2,000    | 6. 노사 협의 및 간담회<br>20,000원*100명=            |
|    | 4,000    | 7. 임직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br>400,000원*10회=        |
|    | 3,000    | 8. 직원채용                                    |
|    | 1,200    | 가. 채용전형 진행비(필기,면접)<br>200,000원*6회=         |
|    | 1,800    | 나. 신규입사자 교육 간담회비<br>300,000원*6회=           |
|    | 1,500    | 9. 근로자 복리후생 및 정보화 소통<br>100,000원*15회=      |
|    | 1,500    | 10. 결산 및 세무 업무추진비<br>300,000원*5개월=         |
|    | 3,000    | 11. 시설운영, 재물조사, 기록물관리<br>10,000원*30명*10회=  |
|    | 2,570    | 12. 기관 경영전략 수립 추진 본부 워크숍<br>2,570,000원*1회= |
|    | 5,279    | 13. 예술기록원 운영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279    | 가. 이용자 서비스 제고 업무 추진비<br>20,000원*10명*6회+79,000원= |
|          | 2,000    | 나. 자료 수집 및 홍보 업무 추진비<br>20,000원*10명*10회=        |
|          | 2,000    | 다. 아카이브 증장기 운영방안 조사 업무추진비<br>20,000원*10명*10회=   |
| [240-02] | 106,920  | 관서업무추진비   |
|          | 69,120   | 1.임원 업무추진비                                      |
|          | 12,960   | 가.위원장<br>1,080,000원*12월=                        |
|          | 10,800   | 나.감사<br>900,000원*12월=                           |
|          | 8,640    | 다.사무처장<br>720,000원*12월=                         |
|          | 15,120   | 라.본부장<br>210,000원*6명*12월=                       |
|          | 21,600   | 마.부장<br>90,000원*20명*12월=                        |
|          | 37,800   | 2.부서(팀) 업무추진비<br>157,500원*20개부서*12개월=           |
| [250]    | 151,200  | 직무수행경비  |
| [250-02] | 151,200  | 직책수행경비  |
|          | 151,200  | 1.위원회비상근위원조사연구수당<br>900,000원*14명*12월=           |
| [320]    | 188,900  | 민간이전  |
| [320-09] | 188,900  | 고용부담금   |
|          | 83,363   | 1.퇴직총당금<br>1,000,353,000원*1/12=                 |
|          | 105,537  | 2.제부담금<br>1,000,353,000원*10.55%=                |
| [430]    | 51,000   | 유형자산  |
| [430-01] | 51,000   | 자산취득비   |
|          | 30,000   | 1.사무공간 및 회의실 비품구입<br>30,000,000원*1식=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1,000   | 2.예술기록원 운영 자산 취득<br>21,000,000원*1식=                   |
| [201]    | 556,000  | 지원심의평가제도 운영   |
| [110]    | 9,400    | 인건비   |
| [110-04] | 9,400    | 일용임금  |
|          | 9,400    | 1.지원사업평가업무 보조인력 보수<br>940,000원*1명*10월=                |
| [210]    | 480,779  | 운영비   |
| [210-01] | 475,829  | 일반수용비   |
|          | 44,829   | 1. 지원심의제도 운영  |
|          | 5,000    | 가. 공정심의회 측정(설문분석)<br>5,000,000원*1식=                   |
|          | 22,679   | 나. 지원심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 등 개최<br>250,000원*6명*15회+179,000원= |
|          | 4,000    | 다. 공정심의회평가관제도 운영<br>400,000원*10명=                     |
|          | 13,150   | 라. 지원심의 보고서 제작비<br>13,150,000원*1식=                    |
|          | 40,000   | 2. 보조사업 총괄운영  |
|          | 25,000   | 가. 공모사업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br>25,000,000원*1식=                |
|          | 15,000   | 나.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서 제작비<br>7,500원*2,000부=                |
|          | 45,000   | 3.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
|          | 7,000    | 가. 심의전문가 시스템 운영<br>30,000,000*1식-23,000,000원=         |
|          | 38,000   | 나.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운영<br>9,500,000원*4회=                |
|          | 160,000  | 4. 지원심의회 개최   |
|          | 120,000  | 가. 정시공모 심의회의<br>1,000,000원*15명*8개분야*1회=               |
|          | 40,000   | 나. 별도공모 심의회의<br>200,000원*5명*4개분야*10회=                 |
|          | 64,500   | 5. 평가제도 운영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13,000   | 가.내부평가제도 운영<br>13,000,000원*1식=                    |
|          | 51,500   | 나.경영실적평가 대응<br>51,500,000원*1식=                    |
|          | 74,500   | 6. 경영혁신추진 운영                                      |
|          | 9,000    | 가.경영혁신 대회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br>9,000,000원*1식=          |
|          | 15,000   | 나.인권영향평가 추진<br>15,000,000원*1식=                    |
|          | 18,000   | 다.고객만족경영 추진(자체만족도 분석)<br>18,000,000원*1식=          |
|          | 22,300   | 라.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추진<br>22,300,000원*1식=              |
|          | 10,200   | 마.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br>2,550,000원*4회=                   |
|          | 22,000   | 7. 자체감사활동 심사 및 평가                                 |
|          | 2,000    | 가. 심사 및 평가 자문 사례비<br>500,000원*4명 =                |
|          | 20,000   | 나. 자체감사 개선 연구조사<br>20,000,000원*1식*1회 =            |
|          | 25,000   | 8. 지원심의옴부즈만 운영                                    |
|          | 10,000   | 가. 옴부즈만 위원 회의 사례비<br>500,000원*5명*4회 =             |
|          | 15,000   | 나. 지원심의 개선 등 조사연구비<br>15,000,000원*1식*1회 =         |
| [210-02] | 1,200    | 공공요금및제세   |
|          | 800      | 1.지원신청서(안내서)우편발송비                                 |
|          | 800      | 가.신청서<br>2,000원*200개처*2회=                         |
|          | 400      | 2.평가제도 운영   |
|          | 400      | 가.심사평가보고서 우편발송비<br>2,000원*200부*1회=                |
| [210-05] | 3,750    | 특근매식비   |
|          | 3,750    | 1.기금운용계획작성 등 특근매식비<br>8,000원*6인*19일*4개월+102,000원= |
| [220]    | 53,539   | 여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220-01] | 53,539    | 국내여비  |
|          | 53,539    | 1.지원심의운영 및 평가 등 대응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br>100,000원*5회*12개월*9개부서-461,000원= |
| [240]    | 12,282    | 업무추진비   |
| [240-01] | 12,282    | 사업추진비   |
|          | 12,282    | 1.지원심의운영 및 평가 등 대응을 위한 사업추진비<br>20,000원*6명*15회*7개부서-318,000원=     |
| [500]    | 1,662,000 |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 [110]    | 218,708   | 인건비   |
| [110-03] | 218,708   | 상용임금  |
|          | 218,708   | 가. 기관 정보화 운영 인력<br>3,645,000원*5명*12월+8,000원=                      |
| [210]    | 507,965   | 운영비   |
| [210-01] | 84,650    | 일반수용비   |
|          | 84,650    | 1. 기반정보화 운영   |
|          | 4,000     | 가. 정보화사업 사업자 선정 등 자문회의 사례비<br>250,000원*8명*2회=                     |
|          | 3,000     | 나. 문화공공데이터 경진대회<br>3,000,000원*1회=                                 |
|          | 16,500    | 다. 보안, ISMS 인증심사 및 SSL 인증라이선스 갱신 비용<br>5,500,000원*3회=             |
|          | 4,200     | 라. 인터넷 도메인(한글.영문), 사용자 본인인증 사용료<br>2,100,000원*2회=                 |
|          | 14,760    | 마. NCAS 및 e나라도움 고객센터 아르바이트 지원<br>117,145원*21일*2명*3개월=             |
|          | 42,190    | 바. 웹사이트 기능 개선등<br>4,688,000원*3명*3월-2,000원=                        |
| [210-02] | 33,115    | 공공요금및제세   |
|          | 33,115    | 1. 기반정보화 운영   |
|          | 23,520    | 가. 인터넷전용회선(직원업무망, 나주)<br>1,960,000원*1회선*12월=                      |
|          | 3,720     | 나. 인터넷전용회선(전산실망, 나주)<br>310,000원*1회선*12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5,875    | 다.전문가 db 자료 현행화 등 dm 발송비<br>1,960원*1,500건*2회-5,000= |
| [210-07] | 73,200   | 임차료   |
|          | 73,200   | 1. 기반정보화 운영   |
|          | 73,200   | 가.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br>871,429원 * 7상면 * 12개월=        |
| [210-15] | 317,000  | 관리용역비   |
|          | 185,560  | 1. 정보시스템 운영   |
|          | 109,500  | 가.상용SW 유지관리   |
|          | 2,400    | 1)통합보안관제서비스(침입방지 등)<br>200,000원*12월=                |
|          | 2,640    | 2)웹방화벽<br>220,000원*12월=                             |
|          | 2,640    | 3)누리집 개인정보보호 SW<br>220,000원*12월=                    |
|          | 2,400    | 4)DB접근제어(샤크라) SW<br>200,000원*12월=                   |
|          | 2,400    | 5)개인정보암호화(디아모) SW<br>200,000원*12월=                  |
|          | 2,400    | 6)WAS,Jennifer<br>200,000원*12월=                     |
|          | 3,960    | 7)오라클<br>330,000원*12월=                              |
|          | 3,600    | 8)업무포털<br>300,000원*12월=                             |
|          | 1,380    | 9)기록물관리 SW<br>115,000원*12월=                         |
|          | 2,400    | 10)정보보안 활동 증적관리 SW<br>200,000원*12월=                 |
|          | 2,400    | 11)기관 주메일시스템(SENSmail/BizEMA)<br>200,000원*12월=      |
|          | 2,400    | 12)마이플랫폼.엑스플랫폼 SW<br>200,000원*12월=                  |
|          | 2,640    | 13)프레임웍 SW<br>220,000원*12월=                         |
|          | 2,640    | 14)UBI레포팅툴 SW<br>220,000원*12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520    | 15)검색엔진(업무포털/기관누리집) SW<br>210,000원*12월= |
|    | 4,200    | 16)기관누리집 콘텐츠관리 SW<br>350,000원*12월=      |
|    | 4,200    | 17)이미지(사진,동영상) 관리 SW<br>350,000원*12월=   |
|    | 4,200    | 18)백업시스템<br>350,000원*12월=               |
|    | 2,640    | 19)웹로그분석 SW<br>220,000원*12월=            |
|    | 4,200    | 20)OCR & OMR 인식장치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1)디브레인 연계 인디고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2)NAS시스템<br>350,000원*12월=              |
|    | 4,200    | 23)메신저 시스템<br>350,000원*12월=             |
|    | 4,200    | 24)로그관리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5)서버접근제어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6)가상화지원(VM)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7)PDF 변환 SW<br>350,000원*12월=           |
|    | 4,200    | 28)보이스아이 SW<br>350,000원*12월=            |
|    | 2,400    | 29)웹소스취약점관리(코드레이) SW<br>200,000원*12월=   |
|    | 2,640    | 30)메일 스팸관리 SW<br>220,000원*12월=          |
|    | 4,200    | 31)웹가속기<br>350,000원*12월=                |
|    | 4,200    | 32)Ddos공격탐지/방어 SW<br>350,000원*12월=      |
|    | 4,200    | 33)QOS(네트워크품질보장) SW<br>350,000원*12월=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76,060   | 나.HW 유지관리                                      |
|          | 76,060   | 1)홈페이지운영 등 서버(HW)시스템 20대<br>6,338,334원 * 12월=  |
|          | 131,440  | 2. 기반정보화 운영                                    |
|          | 61,440   | 가.HW 유지관리                                      |
|          | 43,200   | 1)pc 유지관리<br>3,600,000원 * 12개월=                |
|          | 14,400   | 2)네트워크 유지관리<br>1,200,000원 * 12개월=              |
|          | 2,640    | 3)무정전전원장치 유지관리<br>220,000원 * 12개월=             |
|          | 1,200    | 4)모바일 장애 문자 알림<br>100,000원 * 12개월=             |
|          | 70,000   | 나.기재부 e나라도움 정보연계<br>10,000,000원*7개월=           |
| [240]    | 900      | 업무추진비  |
| [240-01] | 900      | 사업추진비  |
|          | 900      | 1. 기관 정보화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비<br>20,000원*5명*9회=       |
| [260]    | 324,000  | 연구용역비  |
| [260-01] | 324,000  | 일반연구비  |
|          | 324,000  | 1. 정보시스템 운영                                    |
|          | 38,000   | 가. 기관누리집 및 내부시스템 기능개선<br>38,000,000원*1식=       |
|          | 200,000  | 나. 예술도움사이트 고도화 및 앱 구축<br>200,000,000원*1식=      |
|          | 86,000   | 다.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SW) 구축<br>86,000,000원*1식=       |
| [320]    | 41,292   | 민간이전   |
| [320-09] | 41,292   | 고용부담금  |
|          | 41,292   | 1. 기관 정보화 운영 인력<br>218,700,000원*18.88%+1,000원= |
| [430]    | 569,135  | 유형자산   |
| [430-01] | 569,135  | 자산취득비  |

| 코드       | 2021년 계획    |   |
|----------|-------------|---|
|          | 금액          | 내역  |
|          | 209,135     | 1. 기반정보화 운영                                       |
|          | 51,600      | 가. 컴퓨터(데스크탑) 구입<br>1,200,000원*43대=                |
|          | 4,000       | 나. 프린터 구입<br>800,000원*5대=                         |
|          | 4,000       | 다. 노트북 구입<br>1,333,333원*3대=                       |
|          | 12,000      | 라. 스캐너 구입<br>2,000,000원*6대=                       |
|          | 7,635       | 마. 업무용SW 보안SW V3 pc용 사용권 갱신<br>30,540원*250copy=   |
|          | 3,000       | 바. 업무용SW 보안SW V3 서버용 사용권 갱신<br>428,570원*7copy=    |
|          | 15,800      | 사. 보안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도입<br>15,800,000원*1ea=          |
|          | 1,500       | 아. 업무용SW 알집SW 연간 사용권 구입<br>6,000원*250ea=          |
|          | 13,600      | 자. 업무용SW MS-Office 2014 사용권 구입<br>340,000원*40ea=  |
|          | 10,000      | 차. 업무용SW 한글2014 사용권 구입<br>200,000원*50ea=          |
|          | 86,000      | 카. 노후 서버 등 IT인프라 도입<br>17,200,000원*5ea=           |
|          | 360,000     | 2. 정보시스템 운영                                       |
|          | 240,000     | 가. 기록물 관리 솔루션(기록물관리, 검색 등) 도입<br>240,000,000원*1식= |
|          | 120,000     | 나. 기록물 관리 서버 도입<br>30,000,000*4ea=                |
| [9700]   | 193,043,000 | 여유자금운용  |
| [9701]   | 193,043,000 | 통화금융기관예치(문예기금)                                    |
| [970]    | 193,043,000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 [470]    | 193,043,000 |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
| [470-02] | 193,043,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          | 193,043,000 |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br>193,043,000,000원=                 |

☎ : 065-9700-9701-970-470 : 문화및관광일반-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문예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